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

《研究陣》

연구	이 기 호(경 찰 대 교수)
	양 문 승(원 광 대 교수)
연구지도위원	이 형 국(연 세 대 교수)
연구실장	한 병 락(총 경)
연구관	김 호 윤(경 정)

발 간 사

치안연구소가 현재와 같은 연구체제를 갖추고 그동안 연구의 불모지였던 치안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세계화·지방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치안수요의 질적·양적 변화는 경찰조직의 운영과 치안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응방식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2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1년간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은 그중의 하나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본 과제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경찰대 이기호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경찰과 치안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및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보다 깊은 관심과 더 나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6. 7.

치안연구소장

김 본 성

目 次

I. 序 論	11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11
2. 研究方法	12
II. 治安環境分析	16
1. 一般環境	16
가. 環境變數와 治安狀況	16
나. 政治的 要因	17
다. 經濟的 要因	18
라. 社會的 要因	19
마. 文化的 要因	21
2. 犯罪動向	22
가. 特別法犯 및 交通關聯 事犯의 急增	22
나. 告訴, 告發事件의 暴走	23
다. 大都市 中心의 犯罪發生	24
라. 犯罪의 凶暴化·破廉恥化	24
마. 犯罪의 廣域化, 機動化	26
바. 24時間 犯罪에의 露出	26
사. 犯罪의 國際化	27
아. 情報化社會에 따른 新種犯罪 및 尖端犯罪의 急增	28
III. 搜查力量分析	29
1. 組織構造	29
가. 組織圖	29
나. 事務分掌	30

다. 搜查人力	33
2. 運營體制	37
가. 現場中心의 搜查	37
나. 搜查教育體制 및 配置	37
다. 安定된 搜查權 行使	38
라. 搜查費	38
마. 地方 Networking	39
3. 人材(人力)	40
가. 人事管理	40
나. 專門化	40
다. 搜查要員의 意識	41
4. 組織能力	43
가. 組織의 機能 및 能力	43
나. 專門化를 위한 力量 備蓄	44
5. 戰略	45
6. 組織風土	46
7. 共有價值(共感帶)	47
IV. 分析結果 要約 및 改善範圍	48
1. 分析의 흐름	48
2. 重點 檢討項目 및 改善範圍	50
V. 搜查專門化 背景 및 制約 要因	54
1. 搜查環境의 變化와 搜查專門化 背景	54
2. 搜查要員의 專門化 必要性	56
가. 環境變化와 警察의 對處能力 增大 要求	56
나. 科學技術發達에 따른 犯罪樣相變化	56
3. 搜查要員의 專門化 制約 要因	57

가. 優秀人力の 誘致裝置 未洽	57
나. 教育訓練體제의 欠節	57
다. 不合理한 配置轉換과 昇進에 있어서의 疏外	58
VI. 搜查要員 採用制度	60
1. 採用制度의 實態 및 問題點	60
가. 搜查要員 人的 管理의 效率性이 重要視 되는 理由	60
나. 搜查要員 人事管理의 效率性 高揚을 爲해 採擇할 基本原理	60
다. 採用制度 實態	62
라. 搜查警察 人事管理의 問題點	64
2. 外國事例 檢討	68
가. 日本(最近 大分縣 警察의 事例)	68
나. 美國(FBI)	71
다. 프랑스	72
라. 이태리	73
3. 改善方案	74
가. 採用管理上의 改善方向	74
나. 根本的 改善方向 - 根據法의 實質化와 搜查權 獨立化	77
다. 搜查權體制上의 改善方向 - 搜查 네트워크(Net-Work)化	77
라. 補職管理上의 改善方向	78
마. 昇進管理上의 改善方向	78
바. 停年制度의 改善方向	79
VII. 搜查教育訓練	80
1. 搜查教育訓練의 實態 및 問題點	80
가. 搜查教育의 發展 過程	80
나. 效果的인 搜查教育의 要件 및 節次	81
다. 搜查教育의 現況	83

라. 問題點	100
2. 外國의 事例 檢討	101
가. 美國	101
나. 日本	104
다. 영국	109
라. 프랑스	109
3. 專門化 方案	109
가. 教育訓練 搜查調査의 體系化 科學化	109
나. 搜查教育의 環境改善	110
다. 在職者 教育의 活性化	110
라. 優秀 教官 確保	111
마. 語學教育 擴大 實施	112
바. 마스크 對應教育	112
사. 他部處와 協力教育體系 樹立	112
아. 持續的인 意識教育 強化	113
자. 教育訓練 프로그램의 內實化	113
차. 委託教育의 範圍擴大	114
카. 搜查教育院(센터)設置 運營	114
타. Infra Structure 構築	115
VIII. 共通基盤 強化方案	116
1. 搜查人力開發院 設置 運營	116
2. 搜查警察 戰略 및 行動規範 樹立	116
3. 搜查關聯業務의 機能間 業務 調整	116
4. 地方廳 中心 搜查機能 集中 強化	117
5. 組織 Skill 競進大會	117
IX. 發展模型 및 結論	118

1. 捜査要員採用 改善 發展模型	118
2. 捜査教育訓練の 専門化 發展模型	119
3. 共通基盤 強化 發展模型	120
4. 結論	120
參考文獻	123
APPENDIX	128
1. 設問調査 分析表	129
2. 捜査幹部 自己記述書 分析 要約	130

表 目 次

〈丑 2-1〉 不法集團 抵抗實態 現況	18
〈丑 2-2〉 強力犯罪의 發生地域別 分布(1992年度)	20
〈丑 2-3〉 總犯罪發生現況	22
〈丑 2-4〉 強力犯罪의 罪名別 發生現況(1983年~1992年)	24
〈丑 2-5〉 強度의 罪名別 檢察接受人員 現況(1983年~1992年)	25
〈丑 2-6〉 強力犯罪의 發生時間帶別 分布(1992년)	27
〈丑 2-7〉 外國人 犯罪 現況	27
〈丑 3-1〉 搜查警察의 警察 經歷別(總計) 現況	34
〈丑 3-2〉 搜查警察의 經歷別(總計) 現況	34
〈丑 3-3〉 搜查警察의 學力別(總計) 現況	35
〈丑 3-4〉 搜查警察의 年齡別(總計) 現況	35
〈丑 6-1〉 搜查要員 特別採用 實績	63
〈丑 6-2〉 登錄者의 保有字格	70

圖 目 次

〈그림-1〉 7S Model	12
〈그림-2〉 研究總括體系圖	15
〈그림-3〉 本廳組織圖	29
〈그림-4〉 地方廳組織圖	30
〈그림-5〉 基本的 分析틀	49
〈그림-6〉 分析의 흐름	50

I. 序 章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搜查警察은 警察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도 「民生治安의 버팀목」, 「犯罪行爲의 완벽하고 迅速한 最終處理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다른 어느 기능보다도 그 중요성과 絶對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활동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또한 지대하다.

搜查要員專門化와 資質向上은 본질적으로 優秀한 搜查要員이 搜查部署와 警察職業을 선호하고 정착하여,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 그 논의의 첫째 조건이 된다.

그러나 최근 3D현상의 만연은 警察組織에도 그 여파를 미쳐 搜查部署勤務를 기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基本的인 搜查·刑事根性마저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搜查力量을 잠식하는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범죄가 날로 機動化, 廣域化, 科學化, 組織化, 國際化, 知能化되고 있는 추세에 반하여, 우리 警察의 搜查與件은 刑訴法改正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측면의 강화에 따라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 警察의 搜查制度도 이러한 社會環境變化에 부응하여 動機附與化, 專門化, 科學化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명제화되고 있다.

이처럼 警察의 내·외부여건이 유동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搜查業務에 대한 과감한 刷新政策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는 時代的, 狀況的 要請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搜查警察의 專門化를 향하여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任用制度 刷新, 搜查教育訓練의 內實化 등을 비롯한 혁신방안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고, 우리의 실정과 토양에 맞는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搜查能力의 培養, 搜查警察의 意識改革 및 士氣振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변화된 搜查警察의 모습을 보여주어 「國民에게 信賴받는 搜查警察像」을 구현함에 그 목적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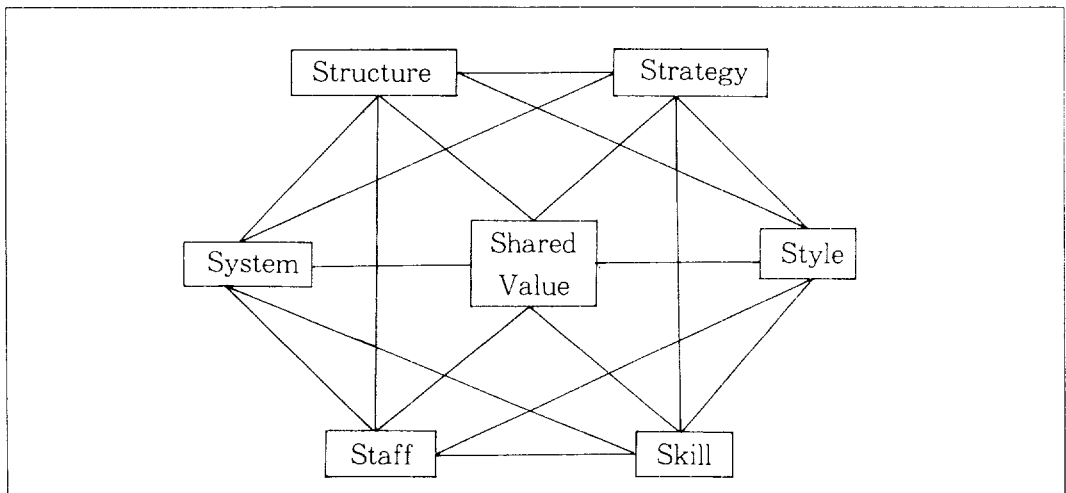
2. 研究方法

가. 本 研究의 方法은 理論的 接近과 實證的 接近으로 크게 나누어 병행 실시하였다.

(1) 理論的 接近으로는 國內外 文獻研究, 公式統計資料 및 研究主管處가 제공한 內部資料의 分析을 근간으로 하고,

(2) 實證的 接近으로는 現 狀態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하여 深層面接(Depth Inter-view), 그리고 搜查幹部들의 "搜查要員 專門化를 위한 自己記述書"의 分析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기본틀로서는 우리 警察의 治安環境分析(外部), 搜查力量分析(內部), 主要 外國의 搜查警察 事例分析을 교차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改善 또는 發展方案을 期間別(短期, 中期, 長期)로 수립하여 搜查警察 專門化를 위한 發展模型을 제시해 보았다. 특히 警察內部 搜查力量의 分析은 7S Model(Peters:1978)에 의하여 실시하였는데 7S Model에 의하면 組織이라는 것은 ㉠ Strategy ㉡ Structure ㉢ System ㉣ Staff ㉤ Skill ㉥ Style ㉦ Shared Value의 7가지 요소(7S)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環境適應行動을 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1〉 7S Model

7S의 개념

- Strategy(戰略) : 지속적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된 행동(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며, 평가가 가능한 Vision의 설정도 포함).
- Structure(組織構造) : 조직도와 이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며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통합되는가를 규정한 것(환경변화를 가장 이상적으로 수용하는 조직 Model).
- System(運營體制) : 일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를 중심으로 과학화, Network화 등을 통한 효율적 성과지향 체제의 극대화 도모.
- Staff(人材, 人力) : 조직구성원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특징으로 간주되는 조직 속의 사람.
- Skill(組織能力) : 개인능력의 단순함이 아닌 조직전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결집력있는 종합적 조직능력).
- Style(組織風土) : 조직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의 배분과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형태.
- Shared Value(共有價值, 共感帶) : 조직과 개인 행동에 있어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조직과 구성원에게 공유되어 있는 가치.

(4) 7S Model과 유사한 分析 Model로는 Luther Gulick의 POSDCoRB를 들 수 있다.¹⁾ POSDCoRB란 計劃(Planning), 組織(Organizing), 人事(Staffing), 指揮

1) 과학이 발달하고 조직이 방대해질수록 조직행정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간다. 관리라는 용어는 공공적 행정이나 사기업의 경영을 막론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고정적·확정적 개념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조직행정 관리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정의를 들어보면, "관리는 낭비를 배제하고, 人과 物의 보호와 효과적 사용 및 구성원의 복지와 이익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L. White), "관리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노력으로서 인적자원과 물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H. Seckler), "인간이 개인의 힘으로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타인과의 협력으로서 달성해 나가는것이 조직이고, 조직과 관리는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특히 공공의 행정관리는 행정의 실시과정에 있어 특정의 활동영역으로서, 공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노력의 공헌을 통하여, 행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조직내부의 통일적·촉진적 역할을 맡게 하는 것"(C. Barnard)이라고 한다. Gulick은 조직관리의 원리를 POSD-CoRB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POSDCoRB는 내부통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나, 이것이 너무 활성화되면 행정조직기구의 증식현상, 행정기능의 전문분화현상, 행정 각 부문의 분산력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本田弘編, 行政管理のシステム, 東京 : 勁草書房, 1993, 1~15面 ; V. A. Leonard, The New Police Technology, Charles C Thomas Publosher, Illinois : Springfield, 1980,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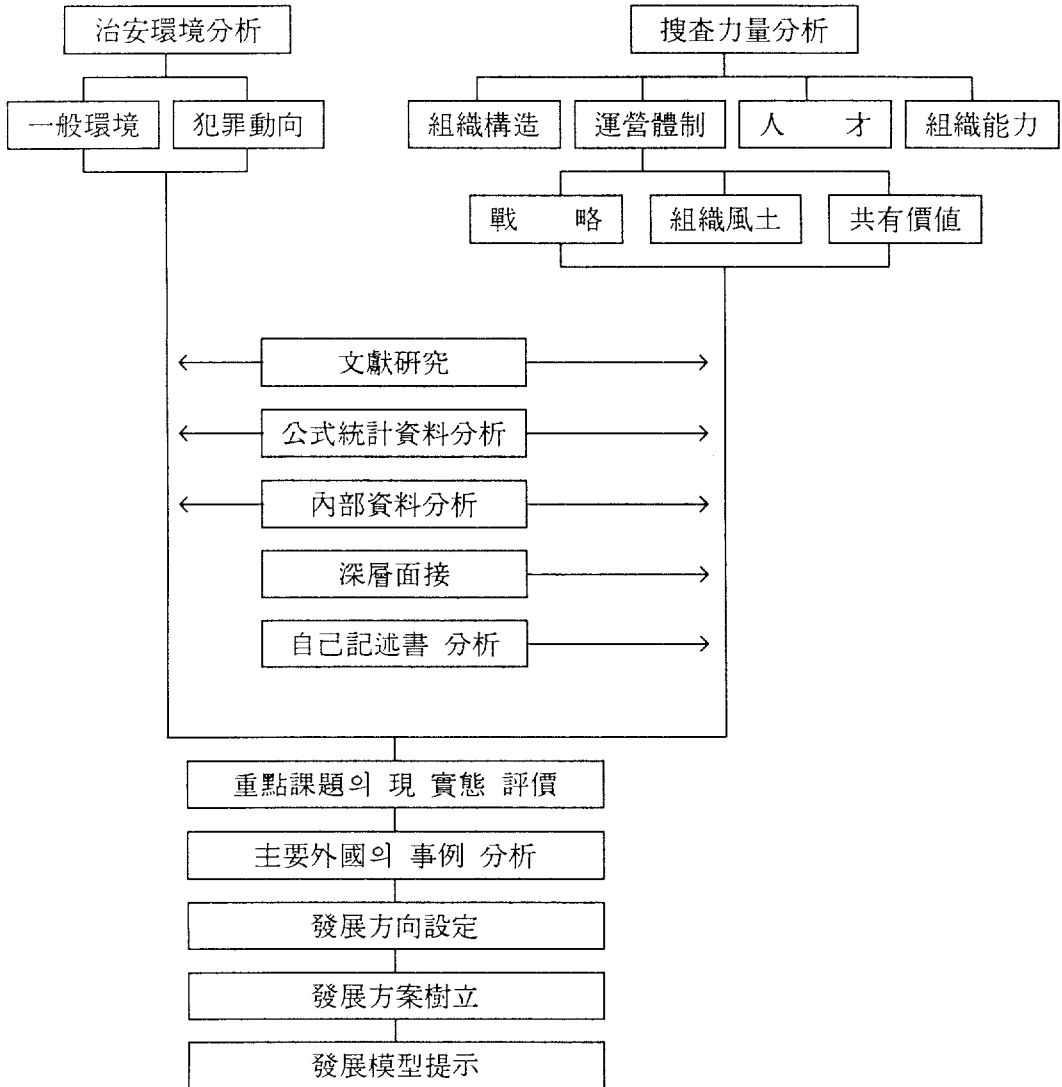
(Directing), 調整(Co-ordinating), 報告(Reporting), 豫算(Budgeting)의 첫 영문자를 따서 만든 개념으로서 7S Model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비교척도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行政組織에 있어서 管理機能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한 管理原則으로는 다음의 14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²⁾

- 分業(Division of Work)의 原理
- 權限과 責任(Authority and Responsibility)의 原理
- 規律(Discipline)의 原理
- 命令의 一元性(Unity of Command)의 原理
- 地位의 一元性(Unity of Direction)의 原理
- 一般的 利益 優先(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의 原理
- 報酬公正(Impartial Reward)의 原理
- 執權(Centralization)의 原理
- 階層組織(Scalar chain)의 原理
- 秩序(Order)의 原理
- 公平(Equity)의 原理
- 職員의 雇傭安定(Stability of Tenure of Personnel)의 原理
- 進取的 風土(Initiative)의 原理
- 團體精神(Esprit de Corps)의 原理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7S Model을 주요분석기법으로 하되, POSDCoRB로서 보완하며, 이 분석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이나 핵심현안과제가 전술한 14가지 관리원칙에도 부합되는지를 고려하여 관점을 분류·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2) 상계서, 4~6面 ; Ibid., pp. 11~12.

나. 上述한 研究의 方法 및 基本들을 連繫시킨 研究總括體系圖는 다음과 같다.



〈그림-2〉 研究 總括體系圖

II. 治安環境分析

1. 一般環境

가. 環境變數와 治安狀況

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오며 경제성장을 통한 조국 근대화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우리사회에 경제적인 여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사회혼란방지에 역점을 둔 장기간의 강력한 통제정치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소외계층을 양산하여 시국불만세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부는 좌경세력으로 변질되어 폭력세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는 이러한 정치체제로부터 민주화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 각 집단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尖銳化되어 기존의 사회질서에 위협을 주는 혼란한 양상을 보이게 되어, 이러한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警察力이 시국치안에 투입됨에 따라서 민생치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警察은 사회의 안정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민생치안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의 부산물로 형성된 상대적인 빈곤에 의한 경제적 불만계층의 증가가 범죄를 集團化, 組織化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産業化, 都市化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기능이 복잡다양해졌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규제법령을 제정하여 犯罪經歷者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犯罪의 知能化를 가져왔다. 특히 特別法 犯罪는 專門的인 지식이 없이는 범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專門化 傾向이 두드러졌다. 문화적으로는 경쟁사회적 성향이 심화되어, 미풍양속의 전통적인 윤리관, 인생관,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拜金主義,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 이기주의, 인명경시풍

조 등으로 변질되면서 범죄는 巧妙化, 凶暴化, 常習化되어 가고 있다.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된 서울의 범죄피해조사³⁾에 의하면 1990년에 1,000가구 당 159.66가구가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리고 인구 1,000명당 152.65명이 對 개인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민의 범죄 피해 신고율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가구 중 21.3%만이 警察에 신고하였으며 개인범죄피해 신고율은 8.9%이다. 이들이 범죄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警察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서, 警察이 두렵거나 싫어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등,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는 警察의 能力에 대한 깊은 불신감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⁴⁾ 즉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진압, 검거하지 못하는 搜查警察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심화되고 있어, 社會環境과 治安狀況이 불가분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治安狀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를 요인별로 상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 政治的 要因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우리나라의 사회병리원인과 양상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상부계층에서 暴力 및 不正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식이 사회전체에 확산되고 있으며, 폭력 및 부정에의 불감증이 야기되고 있다.

둘째, 정권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신뢰가 실추됨에 따라 공권력에 대한 일반적 저항과 불신풍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와 더불어 준법정신이 이에 비례하여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警察에 대한 信賴나 評價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警察에 대한 忌避現狀과 警察의 犯罪能力 및 搜查能力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조사란 무엇인가(연구보고서 90-23), 1991.

4) 유사한 연구로서 전계서 이외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18), 1991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1991 등이 있다.

셋째, 국민의 정치사회적 안정감이 저하되고 인생목표에의 방향감을 상실함에 따라 犯罪와 犯法의 일반적 분위기에 쉽게 젖어들고 있다.

넷째, 그동안 억압받아 온 권리의식이 일시에 표출됨에 따라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이 오도되고 있으며, 따라서 不法的, 集團的인 의사표출이 만연하고 있다. 일례로 1980년대, 10년 동안의 불법집단 저항실태 현황을 살펴보다도 해가 거듭할수록 건수나 동원인원이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로는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警察行政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개인 및 지역의 利己主義(Sectionalism)가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警察의 役割과 기능에도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表 2-1〉 不法集團 抵抗實態 現況 (單位:件, 名)

구분	학 원		노 동		기 타		합 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1981	43	15,666	197	24,057			240	39,725
1982	61	33,145	218	23,204			279	56,349
1983	143	74,200	185	15,193			328	89,393
1984	1,499	424,226	184	25,294			1,683	449,520
1985	2,138	429,974	332	39,588	19	530	2,489	510,092
1986	2,001	475,692	397	57,260	298	47,732	2,696	580,684
1987	5,581	1,756,325	4,676	714,311	1,113	107,554	11,370	2,578,190
1988	4,246	1,015,032	1,998	364,542	1,911	140,397	8,155	1,519,971
1989	4,526	4,267,126	1,703	398,729	2,378	413,895	8,607	2,079,750

※ 기타는 정치·종교·사회 및 문화부문이며 1985년부터 통계분리

(자료 : 치안환경실태 내부자료)

다. 經濟的 要因

경제적 측면에서의 社會病理的 原因은 소득재분배의 불공평에서 오는 빈곤계

층의 확대와 奢侈享樂風潮의 漫然 및 淫亂頹廢文化의 범람으로 대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위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에서 보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게 높지는 않은 편이나, 여전히 불평등분배가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犯人性 要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투기 등으로 갑자기 부를 축적한 계층의 무절제한 과시성 소비로 인하여 중류층 이하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폭됨과 더불어 모방성 소비성향, 사치성 욕구, 한탕주의 등 범인성환경을 유발하고 있고,

둘째,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적 목표감과 안정감을 상실하고 좌절함에 따라 退行性 消費風潮가 유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접객업소 여성종사자가 급증하고, 때마침 휘몰아쳐온 서구의 性開發風潮와 맞아 떨어지면서 사치향락풍조가 만연하고 음란퇴폐 문화가 범람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까지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연속 국면을 만들어내게 된다.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성인을 막론하고 藥物濫用 현상까지 심화시키게 된다.

셋째,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범인성 요인들이 많은데, 부동산투기, 건축법위반, 환경오염, 컴퓨터犯罪, 은행신용카드犯罪 등 新種犯罪가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레저문화의 증가, 제3의 생활공간⁵⁾이라고 하는 열차, 비행기, 지하철, 그리고 승용차 등을 이용한 犯罪發生可能性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라. 社會的 要因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범인성 환경 중에서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都市集中現狀에 따른 逆機能이다. 특히 대도시에서 인구가 과도하게 편중됨에 따라 대인관계의 몰인격화 및 과도한 경쟁의식이 유발되고,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5) 주택(제1공간), 직장(제2공간)에 이어 이동수단이 되는 생활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한다.

의식과 더불어 남을 못하(되)게 하자는 반사적인 의식 또한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단면은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犯罪行爲를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⁶⁾ 도시집중현상의 역기능으로서 범죄발생도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1992년도 強力犯罪의 발생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도의 경우 대도시가 전국발생건수의 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殺人, 強姦, 放火犯罪도 전국대비 60% 이상씩의 犯罪偏重現狀을 보이고 있다.

(表 2-2) 強力犯罪의 發生地域別 分布(1992年度) (단위 : 건, %)

구 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도시 이외
살 인	615(100)	392(63.8)	66(10.7)	157(25.5)
강 도	2,549(100)	2,145(84.2)	176(6.9%)	228(8.9)
강 간	5,447(100)	3,531(64.8)	643(11.8)	1,273(23.4)
방 화	1,064(100)	700(65.8)	121(11.4)	243(22.8)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3)

都市化의 膨脹과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사치향락산업, 음란퇴폐문화, 빈민하위문화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이러한 현상이 폭넓게 확산되고,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또 다시 도시를 팽창시키는 상호 역기능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핵가족의 경향도 심화되어 老人問題 및 靑少年問題가 동반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老人問題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독거노령자 보호 및 노인층의 사회활용과 관련하여 警察段階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⁷⁾

청소년문제 역시 핵가족화, 부모의 맞벌이, 가정의 불안정성 등으로 말미암아 부도덕가정 및 결손가정 등이 증가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위와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서의 소홀과 退行性 過剩保護가 양극화되면서 청소년

6) 槍山西郎, 成熟した社會の犯罪と豫防, 東京 : 酒井書店, 1994

7) 警察廳編, 警察白書(平成 6年版), 東京 : 大藏省印刷局, 1994. 59~61面

년의 범죄 또는 逸脫的 行爲를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人口의 移動性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시간적, 공간적 구조로 2원화되어 있다. 즉 경제의 풍요와 High Mobility사회로의 진입이 공간적인 이동을 대량 야기시키고, 도시의 팽창과 맞물려 24시간 활동체제가 정착되면서 시간적인 이동성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이동의 대량발생은 범죄의 廣域化, 機動化, 24시간화(상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情報化社會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의 유통과정 또는 신용의 거래과정에서 컴퓨터犯罪, 신용카드犯罪, 불법정보활동 산업체 증가, 불법복제 등 新種犯罪와 尖端犯罪가 날로 기승을 더해가고 있다.

마. 文化的 要因

문화적 측면에서 본 범인성 환경은

첫째, 서구문화의 개인주의와 개성이 오도되어 極端的 利己主義가 만연되어 있고, 둘째, 성개방풍조에 따라 전통적 성규범이 와해되면서 음란퇴폐문화의 범람과 연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풍조가 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음란물의 수입 및 국내 유통, 그리고 마약범죄 및 외국인 범죄의 급증에 많은 유발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緣故意識이 부정적 의미의 파벌의식으로 발전하여 지역 및 집단, 그리고 개인간의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있고,

넷째, 우리 국민 특유의 무절제한 음주문화 및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통한 접대문화, 건전한 교통문화의 미정착 등이 맞물려 악순환적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다섯째, 사행도박성, 음란향락성 놀이문화가 성행하여 健全勤勞意識이 퇴조하고 있다.

여섯째, 언론출판의 자유화 및 비디오 문화의 보급에 편승하여 상류층을 모델로 한 TV프로그램이나 무분별한 선전광고가 만연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을 유발하고, 기대수준을 증폭시키면서 寡消費를 조장하고 있다.

일곱째, 形式主義와 適當主義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공무원과 상류층의 비

리, 그리고 도시가스 참사, 교량붕괴, 여객선침몰 등 위험물사고 및 돌발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사회불안의 한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2. 犯罪動向

가. 特別法犯 및 交通關聯 事犯의 急增

우리나라에서 産業化가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는 1970년대부터 최근 1994년까지의 범죄발생현황을 우선 刑法犯罪와 特別法犯罪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3>과 같다.

<表 2-3> 總犯罪發生現況 (單位 : 件, %)

구 분	총 범 죄	형 법 범 죄	특별법범죄
1970	340,390(100)	239,756(100)	100,634(100)
1975	391,252(115)	308,760(129)	82,492(82)
1980	620,710(182)	410,461(171)	210,249(209)
1985	794,708(233)	539,166(225)	255,611(254)
1989	1,043,901(307)	611,694(255)	432,207(429)
1990	1,147,752(337)	639,837(262)	518,915(516)
1991	1,185,648(348)	623,439(260)	562,209(159)
1992	1,210,784(356)	643,086(268)	567,702(564)
1993	1,304,349(383)	683,071(285)	621,278(617)
1994	1,309,326(385)	467,901(195)	841,425(836)

(자료 : 警察廳, 警察統計年報, 제38호, 1994)

총범죄발생율은 1970년을 기준지수로 할 때, 10년만인 1980년에 약 2배, 1990년에 3배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10년마다 100%씩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刑法犯罪는 1993년까지 상당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다가 1994년에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特別法犯罪는 급격한 신장율을 보여 1993년의 경우 1970년

리, 그리고 도시가스 참사, 교량붕괴, 여객선침몰 등 위험물사고 및 돌발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사회불안의 한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

2. 犯罪動向

가. 特別法犯 및 交通關聯 事犯의 急增

우리나라에서 産業化가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는 1970년대부터 최근 1994년까지의 범죄발생현황을 우선 刑法犯罪와 特別法犯罪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3>과 같다.

<表 2-3> 總犯罪發生現況 (單位：件, %)

구 분	총 범 죄	형 법 범 죄	특별법범죄
1970	340,390(100)	239,756(100)	100,634(100)
1975	391,252(115)	308,760(129)	82,492(82)
1980	620,710(182)	410,461(171)	210,249(209)
1985	794,708(233)	539,166(225)	255,611(254)
1989	1,043,901(307)	611,694(255)	432,207(429)
1990	1,147,752(337)	639,837(262)	518,915(516)
1991	1,185,648(348)	623,439(260)	562,209(159)
1992	1,210,784(356)	643,086(268)	567,702(564)
1993	1,304,349(383)	683,071(285)	621,278(617)
1994	1,309,326(385)	467,901(195)	841,425(836)

(자료 : 警察廳, 警察統計年報, 제38호, 1994)

총범죄발생율은 1970년을 기준지수로 할 때, 10년만인 1980년에 약 2배, 1990년에 3배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10년마다 100%씩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刑法犯罪는 1993년까지 상당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다가 1994년에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特別法犯罪는 급격한 신장율을 보여 1993년의 경우 1970년

기준지수 대비 6배를 상회하였고, 1994년 다시 대폭 증가하여 1993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그리고 1970년 기준지수에 대비하여서는 8배를 초과하는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4년 特別法犯罪 발생건수 841,425건 중에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위반이 231,725건,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이 250,789건, 특가법(도주차량)위반이 10,500건으로서, 교통관련 범죄발생건수는 총 493,014건, 特別法犯罪 총발생 건수 증 무 려 58.6%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대량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刑法犯罪의 增加率은 둔화되고, 특별법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도 교통관련사범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 搜查警察 본연의 搜查力量을 잠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告訴, 告發事件의 暴走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 사건의 엄청난 폭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의 1992년 자료 분석에 따르면 1992년 한해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고소사건은 모두 10,137건,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279,734건으로서 일본의 27배, 고발건수는 일본이 1,925건,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343,244건으로서 일본보다 무려 178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警察이나 검찰에 고소당한 사람은 643명, 일본은 10만명당 8명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희박하고, 분쟁당사자간에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가 미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혀 성숙한 시민상의 확립이 절실하게 아쉬운 부분이 된다.

특히 고발사건에 있어서 한·일간 큰 격차는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등 행정 법규나 기초질서 위반사범이 우리나라에는 많으나, 일본은 아주 적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기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告訴·告發事件이 1992년 경우 전체사건 중 과반수를 넘는

5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그것은 전체사건의 3.4%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에서는 認知搜查보다 告訴·告發事件에 허덕여 搜查力量을 잠식하고 있는 큰 요소가 됨에 반하여, 일본은 追跡搜查에 치중할 수 있는 搜查力量이 충분함을 반증하고 있다.

다. 大都市 中心의 犯罪發生

타년도도 유사하지만 1994년 총 범죄발생건수 1,309,326건중 6대도시에서 발생한 범죄는 664,597건(50.8%), 기타 지역은 644,721건(49.2%)으로서 6대도시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범죄의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다.

6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이 52.5%, 부산이 16.4%, 대구 10.6%, 인천 9.8%, 광주 5.9%, 대전 4.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범죄발생건수는 전국대비 26.7%로써 심각한 범죄발생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⁸⁾ 強力犯罪의 발생지역별 분포는 앞의 <표 2-2>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라. 犯罪의 凶暴化·破廉恥化

強力犯罪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최근 10년간의 죄종별 발생현황은 특기할 만한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방화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9년 대비 1990년에 2배에 가까운 증가를 한 이후 특별한 변화없이 매년 20여건씩 증명하고 있다.

<表 2-4> 強力犯罪의 罪名別 發生現況 (1983년~1992년) (單位 : 件, %)

구 분	살 인		강 도		강 간		방 화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1983	518	100	2,498	100	5,244	100	464	100
1984	581	112	2,839	113	5,482	105	504	109

8) 警察廳, 警察統計年報(제38호), 1994, 118面

1985	600	116	3,135	126	5,453	104	476	103
1986	617	119	2,695	108	5,002	95	546	118
1987	653	126	3,102	124	5,034	96	553	119
1988	601	116	3,446	138	4,658	89	593	128
1989	578	112	4,085	164	5,102	97	647	139
1990	666	129	4,195	168	5,519	105	1,060	228
1991	630	122	2,966	111	5,175	99	1,048	226
1992	615	119	2,549	102	5,447	104	1,064	229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3)

양적인 증가가 현저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대신 최근의 強力犯罪은 질적으로 凶暴化하고 파렴치화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강도사범의 죄명별 현황을 검찰 접수 인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純強盜는 감소한 반면, 強盜傷害, 強盜強姦 및 強盜殺人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強盜強姦 사범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強盜強姦 사범 중에는 최근 많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정과괴사범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범의 증가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같은 기간동안 單純強盜는 24.1% 감소하고, 強盜傷害는 128.9%, 強盜強姦은 200.7%, 強盜殺人은 205.4% 각각 증가하였다.

<表 2-5> 強盜의 罪名別 檢察接受人員 現況(1983年~1992年) (단위: 명, %)

구 분	강 도	강도상해	강도강간	강도살인
1983	3,041(-)	1,055(-)	146(-)	37(-)
1984	2,983(-1.9)	1,233(16.9)	255(74.7)	99(167.6)
1985	2,976(-0.2)	1,533(24.3)	251(-1.6)	127(28.3)
1986	2,988(0.4)	1,843(20.2)	323(28.7)	92(-27.6)
1987	2,793(-6.5)	1,913(3.8)	303(-6.2)	118(41.9)
1988	2,948(5.5)	2,357(23.2)	428(41.3)	89(-24.6)
1989	3,703(25.6)	3,034(28.7)	410(-4.2)	107(20.2)
1990	3,876(4.6)	3,069(1.2)	643(56.8)	128(19.6)
1991	2,599(-32.9)	2,402(-21.7)	537(-16.5)	103(-24.3)
1992	2,308(-11.2)	2,415(-0.5)	439(-18.2)	113(0.9)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3)

다음으로 살인과 강도에 있어서 흉기를 소지한 비율은 살인이 32.6%, 강도가 32.9%이며, 사용흉기의 종류는 모두 도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살인은 50.5%, 강도는 41.9%가 도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흉기준비현황도 살인의 경우 사전준비가 28.7%, 피해자의 것 사용이 12.4%이며 강도의 경우 사전준비가 37.3%, 피해자의 것 사용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犯罪의 計劃化, 凶暴化를 반증해주고 있다.⁹⁾

마. 犯罪의 廣域化, 機動化

앞의 일반환경에서 논했던 바와 같이 전국의 1일 생활권화, 도로망 정비, High Mobility에 의한 인구의 대량이동 양상 속에서 범죄가 점차 廣域化, 機動化해가고 있다. 작년의 지존과사건 등은 이러한 세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제3의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대량운송수단, 즉 전철, 버스의 내부도 범죄공간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의 犯罪動向을 보면 車內 強盜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¹⁰⁾

바. 24時間 犯罪에의 露出

심야활동이 점차 생활화되어감에 따라 야간 유동인구가 증대하고 24시간 생활패턴이 정착되어 과거와는 달리 시간적으로 24시간 하루종일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아래 <표 2-6>과 같이 強力犯罪의 죄명별 발생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범죄의 특성상 夜間發生率이 높기는 하나 비교적 각 발생시간대의 편차가 크지 않아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3, 52面

10) 상계서, 53面

〈表 2-6〉 強力犯罪의 發生時間帶別 分布(1992年) (단위 : 건, %)

구분	계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미상
살인	615 (100)	55 (8.9)	47 (7.6)	61 (9.9)	74 (12.0)	89 (14.5)	68 (11.1)	221 (36.0)
강도	2,549 (100)	364 (14.3)	80 (3.1)	174 (6.8)	195 (7.7)	234 (9.2)	368 (14.4)	1,134 (44.5)
강간	5,447 (100)	553 (10.2)	189 (3.5)	258 (4.7)	543 (10.0)	705 (12.9)	823 (15.1)	2,376 (43.6)
방화	1,064 (100)	131 (13.0)	69 (6.5)	85 (8.0)	124 (11.7)	123 (11.9)	124 (11.9)	396 (37.2)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3)

사. 犯罪의 國際化

범죄의 國際化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계하는 현상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범죄의 國際化 측면에서는 그다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없었으나, 해외여행의 자유화, 국제상거래의 증가, 해외인력의 국내취업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범죄의 國際化가 새로운 모습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범죄현황은 아래 〈표 2-7〉과 같은데, 1992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고 1993년과 1994년은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表 2-7〉 外國人 犯罪 現況 (單位 : 件, 名)

구분	범죄발생건수	인원
1975	1,362	1,506
1980	877	987
1985	1,240	1,380
1990	1,076	1,283
1991	1,584	2,245
1992	4,015	6,046
1993	3,119	4,247
1994	3,849	4,795

(자료 : 警察廳, 警察統計年報, 제38호, 1994)

國際犯罪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출입국 위반사범, 마약류 사범, 불법무기매매사범 등을 들 수 있다.

아. 情報化社會에 따른 新種犯罪 및 尖端犯罪의 急增

科學化, 情報化에 의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컴퓨터犯罪, CD犯罪, 개인정보침해犯罪, 컬러복사기에 의한 통화위조, 文書僞造犯罪, 신용카드범죄, 환경범죄 등이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첨단기술 등을 사용함으로써 搜查端緒 포착 및 적발에 힘들고 법률체계 또한 완비되지 않아 刑事司法機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Ⅲ. 搜查力量分析

제 Ⅲ 장에서는 警察内部의 環境分析으로서 組織구조, 運營체제, 인재(인력), 組織능력, 전략, 組織풍토, 공유가치(공감대)의 순으로 현상을 점검해보고 問題點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組織構造

가. 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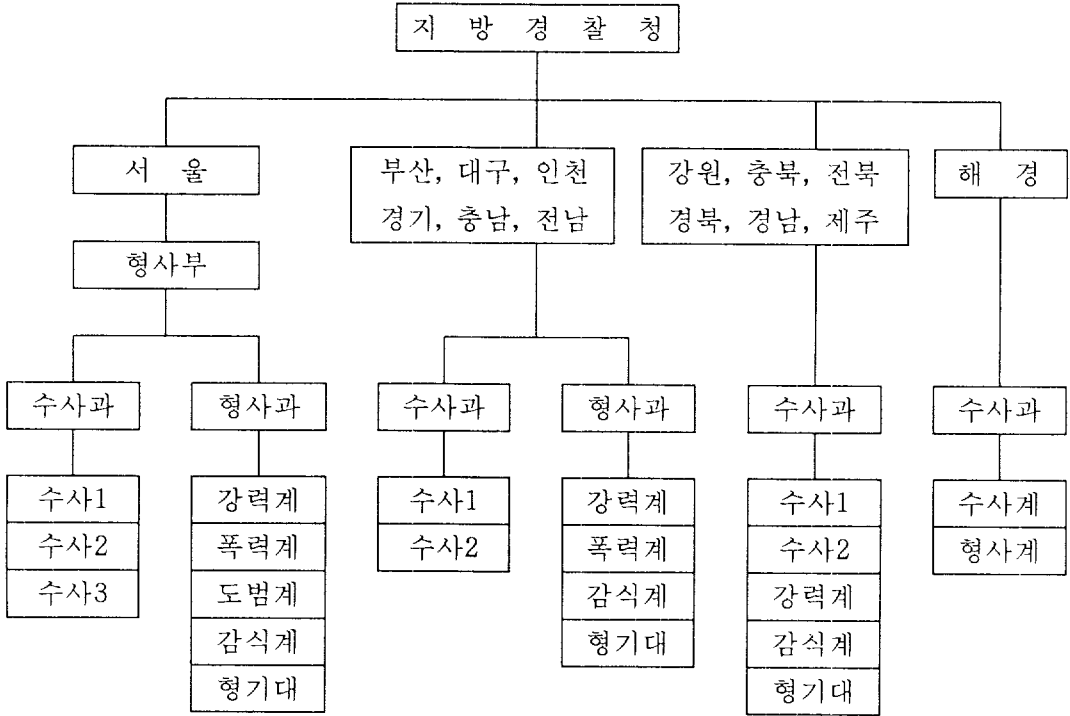
搜查警察의 組織圖를 本廳과 地方廳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本廳



〈그림-3〉 本廳 組織圖

(2) 지방청



〈그림-4〉 地方廳組織圖

※ '95. 3. 1 현재 전국 223개 警察署 중 搜查課長·刑事課長이 있는 警察署는 79개서이며, 여타서는 搜查課長만 있음.

나. 事務分掌

한편 警察廳 事務分掌規則(警察廳 訓令 제155호, '95. 4. 10)에 의거한 형사국 내 각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搜查課(동 규칙 제18조)

① 搜查 1 業務

범죄통계 및 搜查資料 分析, 搜查豫算 및 經費의 管理, 민원 및 이의사건 조사, 기타 국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搜查 2 業務

공무원 범죄의 搜查指導, 병무사범 및 범칙군수물자 관련 범죄의 搜查指導, 폭발물 과열범죄의 搜查指導, 통화관련 범죄의 搜查指導, 특정사건(고위층 搜查指導)의 搜查指導 및 보고, 문화재 관리법 위반사범의 搜查指導, 도주사건 搜查指導,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물 등 부동산관련범죄의 搜查指導, 공중위생 및 환경사범의 搜查指導, 금융 및 경제사범의 搜查指導, 무역 및 密輸事犯의 搜查指導, 지적소유권 사범의 搜查指導, 물가 및 공정거래 관련 사범의 搜查指導, 농·수·축산 관련 범죄의 搜查指導, 직업안정 및 관광에 관한 범죄의 搜查指導,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형법범 및 특별법관련 범죄의 搜查指導.

③ 搜查 3 業務

불법시위관련 사건 搜查指導, 수배자 搜查狀況 蒐集, 搜查狀況 維持, 선거관련 사범의 搜查指導.

④ 搜查研究官 業務

搜查警察 發展方向 研究, 搜查警察에 關한 企劃 및 指導.

2) 特殊搜查課(동 규칙 제19조)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의 諜報蒐集 및 搜查, 중요 하명사건의 내사 및 搜查, 정보기관 등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의 搜查.

국민경제·보건 및 공해관련 중요 사건의 내사 및 搜查.

3) 형사과(동 규칙 제20조)

① 강력업무

살인, 강도 및 강간,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과 搜查指導, 변사사건의 搜查指導, 초동수사 및 수사긴급배치 훈련지도, 지명수배·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기획 및 자료관리,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

② 폭력업무

조직폭력·일반폭력에 대한 대책 및 搜查指導, 약취·유인사건에 관한 대책 및 搜查指導, 공갈·협박 사건에 관한 搜查指導, 행불사건에 관한 대책과 搜查指導, 우범자 관찰보호 업무지도, 음료·음식물 등에 대한 이물질 투입사건 搜查指導.

③ 도범업무

도범·장물범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차량이용범죄에 대한 대책 및 수사지도.

④ 마약업무

마약류 사범대책 수립 및 搜查指導, 약물·의약품 등 보건범죄 搜查指導.

⑤ 민생대책업무

민생치안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분석, 민생치안 관련사항 총괄 및 관계기관 협조.

4) 조사과(동 규칙 제21조)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犯罪者·첩보의 수집 및 내사, 특명사건 처리

5) 감식과(동 규칙 제22조)

① 감식업무

범죄감식에 관한 기획 및 지도, 감식요원에 대한 교육지도, 감식기술 및 장비의 개발, 범죄현장 자료수집 및 교육자료 편집, 지문전송망의 운영관리.

② 지문업무

수사자료표의 수집 및 관리, 지문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형사입건 처분결과의 기록관리, 변사체 등 신원확인, 수사자료의 축사 운영, 형사사진 수집관리.

③ 채증업무

범죄증거물 수집 및 기술개발, 몽타주 작성 및 기술지도, 족흔적·타이어 흔적 등 감정, 지문감정 및 감정자료의 관리, 화재감식, 거짓말탐지기 운영 지도, 지문 자동분류검색시스템 운영.

6) 형사심의관(동 규칙 제23조)

搜查警察에 관한 중·장기계획(민생치안 종합계획 포함)의 수립, 2개 이상의 地方警察廳 管轄에 관련되는 중요 범죄의 搜查指導, 기타 국장 지정 사항.

다. 搜查人力

1) 搜查警察 人力

전국의 搜查警察 총수는 '95. 3. 31 현재 14,867명으로서 그 중 搜查要員은 2,788명(19%), 조사요원은 2,538명(17%), 형사요원(형기대 포함) 9,251명(62%), 감식요원 290명(2%)를 차지하고 있다. 계급별로는 경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순경, 경사, 경위, 경감, 경정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은 경사가 순경보다 많은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원은 이와 반대현상으로 충원되어 있어 搜查警察의 專門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3년에 총범죄, 중요범죄에 대한 통계와 설문조사 결과 얻어진 警察官 1인당 적정처리건수를 근거로 적용해 볼 때 搜查·刑事人力의 부족규모는 최대 3,600명, 최소 500명 규모로 산출된다. 한편 警察廳 자체판단에 의한 수사·형사인력의 증원소요는 4,670명으로 산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총범죄발생을 인지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으로 구분하여 1인당 연간 적정 처리건수를 인지사건의 경우 61건,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96건을 기준으로 하였다.¹¹⁾ 이와 같은 수사·형사인력 부족규모를 증원하게 된다면 전체 警察官 중 搜查警察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게 되는데, 민생치안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상시 2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경력, 학력, 연령별 인력구조

각 요인별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한국개발연구원, 경찰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경찰예산규모의 적정화와 운용의 효율화- (요약집), 1994, 27면

〈表 3-1〉 搜查警察의 警察 經歷別(總計) 現況 (單位 : 名, %)

기능 \ 년한	계	3년미만	3-4년	5-10년	11-20년	21년 이상
계	14,518 (100)	2,200 (15.2)	1,408 (9.7)	3,239 (22.3)	4,476 (30.8)	3,195 (22.0)
조 사	2,988 (100)	256 (8.6)	226 (7.6)	536 (17.9)	1,059 (35.4)	911 (30.5)
형 사	9,073 (100)	1,741 (19.2)	834 (9.2)	2,201 (24.3)	2,722 (30.0)	1,575 (17.3)
감 식	275 (100)	24 (8.7)	39 (14.2)	62 (22.5)	72 (26.2)	78 (28.4)
기 타	2,182 (100)	179 (8.2)	309 (14.2)	440 (20.2)	623 (28.5)	631 (28.9)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表 3-2〉 搜查警察의 經歷別(總計) 現況 (單位 : 名, %)

기능 \ 년한	계	3년미만	3-4년	5-10년	11-20년	21년 이상
계	14,518 (100)	6,433 (44.3)	2,139 (14.7)	3,202 (22.1)	2,199 (15.1)	545 (3.8)
조 사	2,988 (100)	1,095 (36.7)	467 (15.6)	718 (24.0)	566 (18.9)	142 (4.8)
형 사	9,073 (100)	4,086 (45.0)	1,357 (15.0)	2,064 (22.8)	1,320 (14.5)	246 (2.7)
감 식	275 (100)	76 (27.6)	47 (17.1)	69 (25.1)	53 (19.3)	30 (10.9)
기 타	2,182 (100)	1,176 (53.9)	268 (12.3)	351 (16.1)	260 (11.9)	127 (5.8)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表 3-3〉 搜查警察의 學歷別(總計) 現況 (單位 : 名, %)

기능 \ 년한	계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졸
계	14,518 (100)	115 (0.8)	11,369 (78.3)	1,233 (8.5)	1,733 (11.9)	68 (0.5)
조 사	2,988 (100)	24 (0.8)	2,251 (75.3)	176 (5.9)	522 (17.5)	15 (0.5)
형 사	9,073 (100)	66 (0.7)	7,226 (79.7)	889 (9.8)	855 (9.4)	37 (0.4)
감 식	275 (100)	4 (1.5)	218 (79.3)	16 (5.8)	35 (12.7)	2 (0.7)
기 타	2,182 (100)	21 (1.0)	1,674 (76.7)	152 (7.0)	321 (14.7)	14 (0.6)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表 3-4〉 搜查警察의 年齡(總計) 現況 (單位 : 名, %)

기능 \ 년한	계	20-30세	31-40세	41-50세	51세이상
계	14,518 (100)	2,952 (20.3)	5,393 (37.2)	3,834 (26.4)	2,339 (16.1)
조 사	2,988 (100)	323 (10.8)	1,082 (36.2)	892 (29.9)	691 (23.1)
형 사	9,073 (100)	2,212 (24.4)	3,485 (38.4)	2,294 (25.3)	1,082 (11.9)
감 식	275 (100)	36 (13.1)	100 (36.3)	67 (24.4)	72 (26.2)
기 타	2,182 (100)	381 (17.5)	726 (33.3)	581 (26.6)	494 (22.6)

(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위의 몇가지 표를 보면 전체경찰경력이 11~20년 된 警察官의 수가 전체警察官 중 30.8%를 차지하고, 조사, 형사, 감식 분야는 약 30% 내외로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수사경력은 3년미만의 경력자가 전체 搜查警察 중 40%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수사專門人力의 이탈과 기피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¹²⁾

학력별 분석에서도 고졸출신자가 전체 搜查警察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타 정부부처 또는 警察內 타 부문에 비하여 학력의 편차가 극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搜查警察專門化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가 된다. 연령별 분석으로는 31세~40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¹³⁾

〈 요약 〉

- 垂直的 不均衡 : 현장 인력에 비해 상급기관이 비대.
- 水平的 不均衡 : 전체경찰 중 수사경찰의 人力 不足 現狀 심각.
- 사무분장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중복된 사무가 적지 않아 사무분장이 명확치 못함.
- Line과 Staff의 役割分擔이 명확치 않음.
- 新種犯罪 및 尖端犯罪에 조직구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부서별 업무량이 다소 不均衡.
- 搜查警察 중 수사경력자층 빈약.
- 搜查警察 중 저학력자가 많아 선발 및 교육의 혁신을 도모할 필요성이 큼.

12) 13) 상세내용은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과학수사체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4

2. 運營體制

가. 現場中心의 搜查

1) 初動搜查

현행 발생사건을 관할파출소에서 초동조치한 警察官이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 보고서 또는 동행보고서 만으로 경찰서 형사계에 신병만 인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적·시간적으로 낭비요소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現場에서 證據收集이나 目擊者 確保 등에 충실치 못하게 되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당해사건을 인수받아 2차로 개입하게 되는 당직형사가 많은 부분을 조사함으로써 정확한 상황 파악 부족이나 편견이 개입된 굴곡된 搜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2) 現場鑑識

“사건현장은 증거의 보고”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사건현장에서 현장감식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인적, 물적 차원에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警察署 단위에서의 인적자원은 양적·질적으로 정상계도에 올라 있지 못하고 있어, 科學搜查가 搜查警察의 대명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가 된다. 이러다 보니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감식관이 상위청의 개입을 자꾸 요청하게 되어 現場中心의 個別事件處理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많은 가용증거가 일실되거나 그 가치를 잃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된다.

나. 搜查教育體制 및 配置

전 FBI 국장 E. Hoover는 “법을 집행하는 능력은 警察官의 교육훈련량에 비례

한다. 現代 警察은 교육을 통해서만 끊임없이 불법에 대항해야 하는 시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우리 警察은 수사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搜查教育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教育施設의 절대적 부족,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교육기획의 부재, 교육의 포괄성·추상성 상존, 교육과 실무의 접합 애로, 중복·반복교육의 발생, 교육생의 능력차 불고려, 이론편중 등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형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搜查教育 이수자도 搜查이외의 타부서로 배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수사역량의 지속강화에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형사, 搜查幹部를 거의 매년 교체함으로써 최소 1년에 한 번은 조직 장악을 위한 과도기를 겪어야 하며, 후임자도 일관되고 향상성 있는 지침을 부하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다. 安定된 搜查權 行使

사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搜查를 책임지고 전개해 나가야 할 반장등에게 搜查指揮權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건에 대한 반장의 역할은 사건배당 등에 국한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책임있는 곳에 권한을 부여하고, 일이 있는 곳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인식하여, 직속상사 중심의 결집력 있는 搜查를 전개하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강하게 질 수 있는 운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라. 搜查費

搜查費의 현실화문제는 어제 오늘 대두된 문제는 아니다. 현행 搜查要員 활동비는 6대도시 이상은 17~20만원, 시급은 17만원, 군급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건수사비는 건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물론 사건의 비중이나 광협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나 현대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現行 搜查費는 전반적으로 태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搜查費가 부족하면 사건해결에

대한 열의가 솟구치지 않고, 搜查上 당연히 조처하여야 할 일련의 과정에서 자꾸 움츠러들게 되므로 수사비의 금액조정 및 지급, 처리 시스템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搜查費의 일률적 책정에서 사건의 크기 및 성격에 따른 伸縮性 있는 운영체제로의 전환, 사전제한보다는 사후감사 철저, 搜查費支出의 카드 전산화, 전결권자의 하향조정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마. 地方 Networking

조직기능의 분석지표로서는 업무의 환류, 업무의 표준화, 업무의 특수성, 업무의 압력, 업무에 대한 권한 등을 들 수 있고, 조직인력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滿足度, 구성원관계 滿足度, 構成員의 專門性 등을 진단지표로서 설정할 수 있는데,¹⁴⁾ 이렇게 볼 때 우리 搜查警察도 搜查力量이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따라 서울과 지방, 6대 도시와 기타 지방 간의 이질감이나 능력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요약 >

- 現場中心의 수사역량 미흡(초동수사와 현장감식).
- 搜查教育體制가 현대사회 변동 및 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搜查教育 이수자가 수사부서로 전원 배치되지 못하고 있음.
→ 搜查力量의 持續強化 저해 우려.
- 刑事, 搜查幹部의 잦은 이동으로 조직장악이 쉽지 않으며, 일관성 있고 항상성 있는 수사전개가 되지 못하여 상하간 異質感 形成의 요인으로 작용.
- 직속상사 중심의 結集力 있는 搜查活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지표의 개발 및 검증-, 1994. 2. 57~64面

- 捜査費의 현실화, 捜査費支出의 처리 시스템 개선이 요망됨.
(수사비지출의 전산화, 전결권자의 하향조정, 수사비 사용의 사전제한 보다는 사후 감사 강화)
- 지방 Networking에 대한 방안이 미흡

3. 人材(人力)

가. 人事管理

인력의 문제는 인사관리로 직결되는데 人事管理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人的資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업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技術”을 의미한다. 즉, 人的資源을 效率的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질과 최대의 양을 갖춘 업적을 얻어내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에서 형성된 수많은 인력 중 적재를 그 조직으로 흡수해야 하며, 다음으로서는 이들의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함과 아울러 이와 같이 키워진 능력을 職務修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높은 勤務意慾을 維持하게 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따라서 人事管理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적과 어긋나는 인사행정은 아무리 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人事行政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과거 집단주의적 문화 및 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개 구성원의 자질문제는 일방적으로 경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成果向上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나. 專門化

專門化라는 것은 소위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Specialization과 이를 기반으로 하

- 捜査費의 현실화, 捜査費支出의 처리 시스템 개선이 요망됨.
(수사비지출의 전산화, 전결권자의 하향조정, 수사비 사용의 사전제한 보다는 사후 감사 강화)
- 지방 Networking에 대한 방안이 미흡

3. 人材(人力)

가. 人事管理

인력의 문제는 인사관리로 직결되는데 人事管理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人的資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업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技術”을 의미한다. 즉, 人的資源을 效率的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질과 최대의 양을 갖춘 업적을 얻어내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에서 형성된 수많은 인력 중 적재를 그 조직으로 흡수해야 하며, 다음으로 이들의 능력발전을 계속적으로 도모함과 아울러 이와 같이 키워진 능력을 職務修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높은 勤務意慾을 維持하게 하는 것이 그 요체이다.

따라서 人事管理는 어떠한 단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적과 어긋나는 인사행정은 아무리 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人事行政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과거 집단주의적 문화 및 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개 구성원의 자질문제는 일방적으로 경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成果向上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나. 專門化

專門化라는 것은 소위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Specialization과 이를 기반으로 하

여 통합적으로 조성된 전문직업개념의 Professionaliza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 搜查警察의 專門化는 “교육”과 “윤리”라는 두가지 요소를 잘 소화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인선하고, 현대 搜查警察活動에 적합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한 搜查警察의 資質向上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

최근 신입순경교육과정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한 의식조사¹⁵⁾에서는 설문에 응한 총 639명중 警察公務員에 대한 지망동기로서 발전가능성 39.8%, 적성고려 29.7%, 사회봉사 17.6%, 생계유지 11%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분포현상을 보이고 있다. 警察官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는 업무능력 40.2%, 인간관계 33.7%, 인력 17.7%, 지적수준 3.1%를 나타내 개인의 能力 및 專門性 重視의 態度와 그에 상응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警察組織에 있어서의 개선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이미지 쇄신 33%, 搜查權獨立 29%, 급여의 현실적 보장 18.3%, 근무시간 개선 14%, 업무의 專門化 5.7%로 나타나 일반시민의 警察에 대한 시각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다. 搜查要員의 意識

다음 응시 희망부서로는 搜查가 23.6%, 정보 19.3%, 경무 17.3%, 방법 12.4%를 보이고 있어 신입순경들의 搜查警察에 대한 선호도는 높다고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진이 '94년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¹⁶⁾에 의하면 搜查警察의 종사동기에서 본인지원 및 본인의 의사가 개입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搜查警察 업무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과 아주 만족을 포함하여 20%, 보통, 불만, 아주 불만을 포함하여 80%가 되는데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보통(56%)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높은 불만족도는 搜查警察의 현주소를 대변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搜查警察의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15) 中央警察學校, 中央學報(創刊號), 1995. 5. 5面

16) 警察大學 治安研究所, 과학수사체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4

17) 搜查警察刷新企劃團, 搜查警察 실태조사, 1994. 4

응답자의 1%, “보통”이 11%, “사기가 낮다”가 88%를 차지하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원초적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수치는 이제까지 있었던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나타난다.

搜查警察의 선호도와 종사동기는 긍정적인데 반하여, 業務滿足度와 士氣가 그렇게 낮다는 것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葛藤要因, 즉 낮은 사회적 평가, 업무능력의 정체, 격무, 불안정성 때문에 업무 만족의 한계를 체험한 결과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육성책, 공정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 능력중시의 풍토가 專門化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한편 1994년 우리 警察廳이 搜查警察을 대상으로 자체조사¹⁷⁾한 바에 의하면 업무수행시 인권보장 및 대민편의고려 의식이 90.7%로 매우 높게 나타나 人權意識이 매우 신장되어 있다고 하나 아직도 근무여건의 열악과 수사상 편의에 치중하여 구태의연한 搜查警察이라는 비난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使命感도 이에 비례하여 결여된 정도가 높다.

清廉意識에 대하여는 84.5%의 응답자가 아직도 사건처리관련 청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어떠한 경우든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정도 되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搜查警察의 昇進可能性에 대하여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一般警察 32.6%보다 많은 47.9%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般部署 근무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5%나 되어 상대적 피해의식이 팽배해있고, 징계경력도 상대적으로 많아 자포자기하는 搜查警察도 적지 않다.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개념을 두고(2~3년) 미리 미리 수급을 예측하여 실행되어야 하나 전임자가 은퇴하면 후임자가 오는 인사처리가 대부분이어서 前任者의 業務 引繼引受나 技術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인의 欲求充足이나 育成策이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搜查人力의 수준향상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수사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신입교육과정부터 搜查要員에 대한 별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수사연수소의 搜查教育 대상자도 차출된 경우가 많아 교육효과가 감소되고 있다. 搜查要員 결원시에는 일반경과 警察官 중에서 희망자

를 차출하여 충원을 하고 있으나, 충원자보다는 타기능전출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고, 충원자도 搜查警察 생활을 하다보면 意慾과 士氣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일반경과 警察官의 채용시기나 규모가 불규칙하고 搜查要員 特採도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持續化, 體系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요약 〉

- 勤務與件과 士氣昂揚對策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인권의식, 청렴성, 사명감은 이에 동반상승.
- 장기적 관점에서의 個人育成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 能力重視風土의 조성이 필요.
- 후계자 育成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이루어져야 함.
- 수사경찰 채용방법 및 人力充員의 體系化 미흡.

4. 組織能力

가. 組織의 機能 및 能力

우선 단위조직이 기동력있게 주관기능의 본질에 따라 效率的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搜查警察은 주관기능의 이원화로 機能別 業務의 專門性을 제약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交通關聯犯罪 및 少年犯罪를 들 수 있는데, 특히 交通關聯범죄는 총범죄발생건수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搜查警察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고야기 도주차량 搜查는 交通警察에서 초동수사 후 계속 搜查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과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는 증거멸실이나 현장 미보존 등으로 科學的·合理的 搜查를 저해하게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搜查技術이나 성격상 일반 형사사건과는 판이하여 응집력있는 一貫搜查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이다. 단

를 차출하여 충원을 하고 있으나, 충원자보다는 타기능전출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고, 충원자도 搜查警察 생활을 하다보면 意慾과 士氣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일반경과 警察官의 채용시기나 규모가 불규칙하고 搜查要員 特採도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持續化, 體系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요약 〉

- 勤務與件과 士氣昂揚對策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인권의식, 청렴성, 사명감은 이에 동반상승.
- 장기적 관점에서의 個人育成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 能力重視風土의 조성이 필요.
- 후계자 育成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이루어져야 함.
- 수사경찰 채용방법 및 人力充員의 體系化 미흡.

4. 組織能力

가. 組織의 機能 및 能力

우선 단위조직이 기동력있게 주관기능의 본질에 따라 效率的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搜查警察은 주관기능의 이원화로 機能別 業務의 專門性을 제약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交通關聯犯罪 및 少年犯罪를 들 수 있는데, 특히 교통관련범죄는 총범죄발생건수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搜查警察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고야기 도주차량 搜查는 交通警察에서 초동수사 후 계속 搜查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과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는 증거멸실이나 현장 미보존 등으로 科學的·合理的 搜查를 저해하게 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搜查技術이나 성격상 일반 형사사건과는 판이하여 응집력있는 一貫搜查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이다. 단

순 주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행위 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교통관련범죄 만이라도 업무비중이 큰 부서 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교통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指揮體系의 一貫性을 도모하고,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발전적 관점이 된다.

나. 專門化를 위한 力量 備蓄

다음 전체 警察公務員의 해외 장기교육 현황(6개월 이상은 장기, 6개월 미만은 단기로 구분)을 보면 최근 10년간 매년 10명도 채 되지 않았고, 1994년에 겨우 1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해외단기교육 현황도 매년 10명 전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搜查警察 분야는 2~3 명에 불과하다.¹⁸⁾

이는 우리 警察 전체인력이 9만명을 넘어서고 搜查警察만 하더라도 1만 5천명 수준인 현실점에서 警察의 세계화나 전문교육방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진기술의 습득이나 조직능력에의 반영은 매우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Skill의 향상은 물론 조직 Skill로의 점진적 향상마저도 도모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얼마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건물 폭탄테러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방비상관리국(FEMA)과 聯邦搜查局(FBI)은 다시 한 번 그 진가를 발휘하였는데 FEMA는 10여개가 넘는 구호조직과 1천여명의 구조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였고, 이러한 안정된 현장장악에 기인하여 FBI는 전광석화와 같은 搜查力으로 범인검거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사고현장에서의 應急解決能力, 初動搜查能力은 그 사건의 대소에 불문하고 잘 조직화되고 선행적인 모의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조직능력의 표본이다. 우리 搜查警察도 급증하고 있는 안전사고, 돌발사고에 대비한 상시기능과 역량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18) 警察廳, 警察統計年報(제38호), 38~41面

< 요약 >

- 組織運營이 조직능력의 전문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기술의 습득과 전과교육등 組織能力에의 반영이 절대적으로 부족.
- 사고현장에서의 應急解決能力 및 初動搜查能力이 미흡.
- 정보의 체계화, 활용화가 미흡함.
- 개인 skill의 조직 skill로의 단계적 Level up 과정 미수립.

5. 戰略

전략은 지속적인 優位와 效率極大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취하는 일관된 행동패턴을 의미한다.

따라서 戰略은 組織構造, 運營體系, 人材(人力), 組織能力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히 수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 警察은 과거 치안본부 시절 1966년 7월 12일에 조직내적인 재무장을 위하여 警察倫理憲章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 헌장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과 실천하여야 할 警察의 윤리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헌장의 5개 항목을 요약하면 規範性, 聯隊性, 誠實性, 勤勉性, 公正性, 清廉性, 合理性과 使命感에 대한 警察官의 德目を 정한 것이었다. 이 警察倫理憲章은 1991년 치안본부가 警察廳으로 승격하면서 警察憲章으로 대체되었는데, 警察憲章은 前文이 警察의 전통, 警察의 본분, 警察의 다짐으로 구성되었고, 本文에서는 친절한 警察, 의로운 警察, 공정한 警察, 근면한 警察, 깨끗한 警察을 표방하고 있다. 이 警察憲章은 우리 경찰계에서 가장 상위개념의 이념이요, 근본정신이 되는데, 상위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평가지표가 가능한 하위전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전략에는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Vision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전략이 얼마나 명확하고 적절하게 수립되느냐

< 요약 >

- 組織運營이 조직능력의 전문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음.
- 선진기술의 습득과 전과교육등 組織能力에의 반영이 절대적으로 부족.
- 사고현장에서의 應急解決能力 및 初動搜查能力이 미흡.
- 정보의 체계화, 활용화가 미흡함.
- 개인 skill의 조직 skill로의 단계적 Level up 과정 미수립.

5. 戰略

전략은 지속적인 優位와 效率極大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취하는 일관된 행동패턴을 의미한다.

따라서 戰略은 組織構造, 運營體系, 人材(人力), 組織能力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히 수립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 警察은 과거 치안본부 시절 1966년 7월 12일에 조직내적인 재무장을 위하여 警察倫理憲章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 헌장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정신과 실천하여야 할 警察의 윤리적인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헌장의 5개 항목을 요약하면 規範性, 聯隊性, 誠實性, 勤勉性, 公正性, 清廉性, 合理性과 使命感에 대한 警察官의 德目を 정한 것이었다. 이 警察倫理憲章은 1991년 치안본부가 警察廳으로 승격하면서 警察憲章으로 대체되었는데, 警察憲章은 前文이 警察의 전통, 警察의 본분, 警察의 다짐으로 구성되었고, 本文에서는 친절한 警察, 의로운 警察, 공정한 警察, 근면한 警察, 깨끗한 警察을 표방하고 있다. 이 警察憲章은 우리 경찰계에서 가장 상위개념의 이념이요, 근본정신이 되는데, 상위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평가지표가 가능한 하위전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전략에는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Vision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전략이 얼마나 명확하고 적절하게 수립되느냐

의 여부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풍토 및 공감대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더 하위의 실천개념으로는 행동규범을 들 수 있는데, 우리 搜查警察은 이것마저 부재하여, 조직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중추적인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 요약 〉

- 最上位概念인 警察憲章(理念)을 뒷받침하고 바람직한 수사경찰상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부재(vision도 없음) 및 행동규범 또는 행동강령도 없음.
- 戰略은 實現可能해야 한다. 明確해야 한다. 具體的이어야 한다. 差別化되어야 한다.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정할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욕구를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고 지방화에의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6. 組織風土

먼저 報告置重文化를 들 수 있다. 이는 빠른 보고를 상부에서 자꾸 원하므로 搜查보다는 보고를 위한 자료수집에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報告置重風土는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책임은 많으나 권한은 없다”, “搜查·刑事部署는 징계부서다” 등 피해의식이나 무력증에 많이 젖어 있다. 廣域犯罪에 있어서도 부서 및 관할 이기주의 때문에 공조 搜查體制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승진에 대해 비관적 의식이 많다.

그리고 상하간 인식의 차이가 커서 상부의 방침이 하부까지 실감나게 전파되지 않고, 반대로 현장의 소리 역시 상부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건전한 組織風土造成에 있어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만연하면 상호간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게 되며 利己主義로 흐르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警察組織의 특수성상 상의하달이 많겠으나, 하의상

의 여부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풍토 및 공감대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더 하위의 실천개념으로는 행동규범을 들 수 있는데, 우리 搜查警察은 이것마저 부재하여, 조직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중추적인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 요약 〉

- 最上位概念인 警察憲章(理念)을 뒷받침하고 바람직한 수사경찰상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부재(vision도 없음) 및 행동규범 또는 행동강령도 없음.
- 戰略은 實現可能해야 한다. 明確해야 한다. 具體的이어야 한다. 差別化되어야 한다.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정할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욕구를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고 지방화에의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6. 組織風土

먼저 報告置重文化를 들 수 있다. 이는 빠른 보고를 상부에서 자꾸 원하므로 搜查보다는 보고를 위한 자료수집에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報告置重風土는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책임은 많으나 권한은 없다”, “搜查·刑事部署는 징계부서다” 등 피해의식이나 무력증에 많이 젖어 있다. 廣域犯罪에 있어서도 부서 및 관할 이기주의 때문에 공조 搜查體制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승진에 대해 비관적 의식이 많다.

그리고 상하간 인식의 차이가 커서 상부의 방침이 하부까지 실감나게 전파되지 않고, 반대로 현장의 소리 역시 상부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건전한 組織風土造成에 있어 치명적인 맹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만연하면 상호간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게 되며 利己主義로 흐르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警察組織의 특수성상 상의하달이 많겠으나, 하의상

달을 배려하는 조직풍토가 아쉽다.

〈 요약 〉

- 報告置重文化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被害意識, 無力症, 不感症이 만연해 있음.
- 부서 및 관할 利己主義가 지배.
- 상하간 인식의 차이가 큼.
- 하의상달이 배려될 수 있는 풍토조성이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

7. 共有價値(共感帶)

전술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결부되어 搜查警察은 조직에서의 위기감을 느끼며, 총체적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 共有價値 또는 共感帶는 組織構造, 運營體制, 人材(人力), 組織能力 등이 정비되고, 戰略이 수립되어 이 공동목표를 향해 총매진할 때,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조직풍토가 자발적으로 개선될 때, 비로소 조직구성원들에 총체적으로 공유되는 가치인데, 우리 搜查警察의 현시점에서의 共有價値는 심히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부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의 危機感, 不滿足, 士氣低下를 탈피하기 위하여 수사경과제 도입을 상당수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적인 방책의 구사만이 搜查警察의 긍정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공유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 요약 〉

- 조직에의 危機感과 총체적인 士氣가 극도로 저하되어 보람있는 일터가 되지 못하고 있음.
- 時代的, 狀況의 背景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수사경과제 도입이 필요.
- 警察福祉後生에 보다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함.
- 搜查警察의 매력 포인트 창출에 노력해야 함.

달을 배려하는 조직풍토가 아쉽다.

〈 요약 〉

- 報告置重文化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被害意識, 無力症, 不感症이 만연해 있음.
- 부서 및 관할 利己主義가 지배.
- 상하간 인식의 차이가 큼.
- 하의상달이 배려될 수 있는 풍토조성이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

7. 共有價値(共感帶)

전술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결부되어 搜查警察은 조직에서의 위기감을 느끼며, 총체적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 共有價値 또는 共感帶는 組織構造, 運營體制, 人材(人力), 組織能力 등이 정비되고, 戰略이 수립되어 이 공동목표를 향해 총매진할 때,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조직풍토가 자발적으로 개선될 때, 비로소 조직구성원들에 총체적으로 공유되는 가치인데, 우리 搜查警察의 현시점에서의 共有價値는 심히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부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의 危機感, 不滿足, 士氣低下를 탈피하기 위하여 수사경과제 도입을 상당수 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적인 방책의 구사만이 搜查警察의 긍정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공유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 요약 〉

- 조직에의 危機感과 총체적인 士氣가 극도로 저하되어 보람있는 일터가 되지 못하고 있음.
- 時代的, 狀況의 背景 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수사경과제 도입이 필요.
- 警察福祉後生에 보다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함.
- 搜查警察의 매력 포인트 창출에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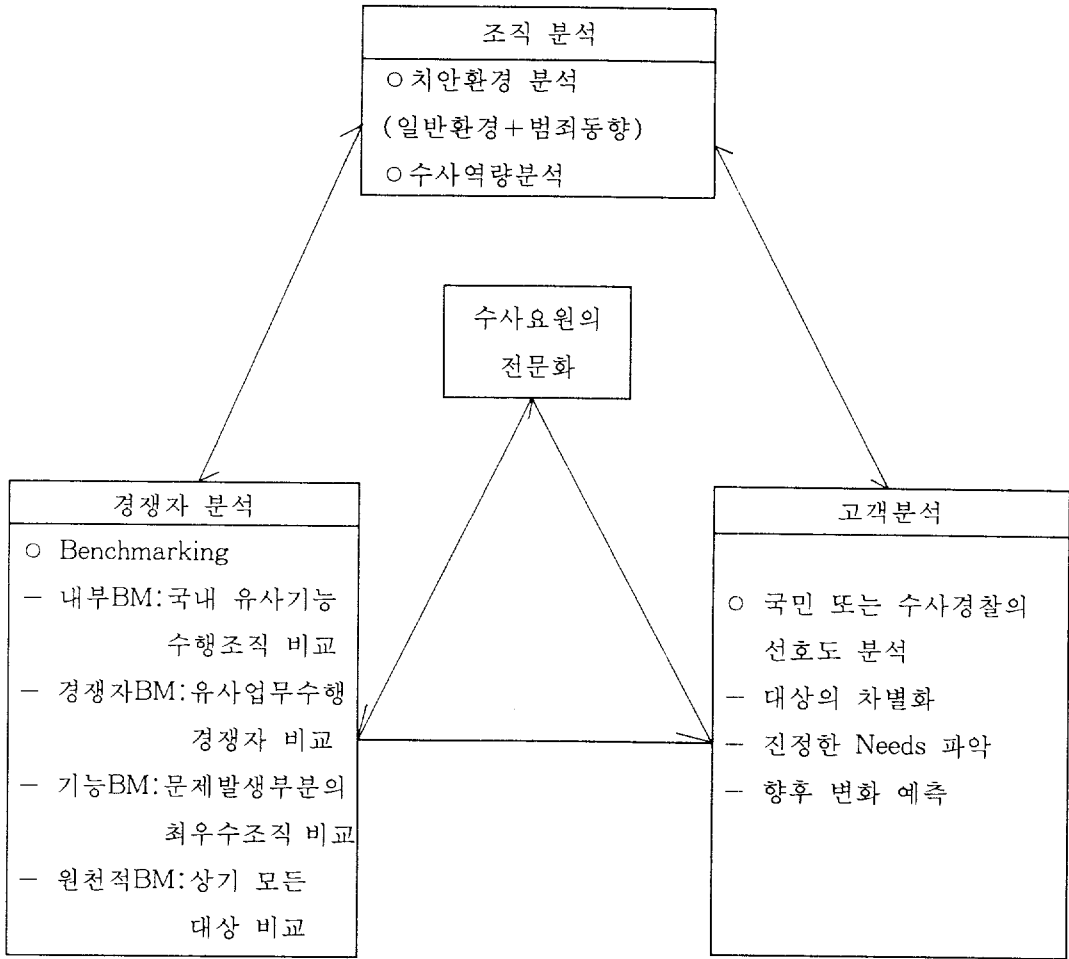
IV. 分析結果 要約 및 改善範圍

1. 分析의 흐름

搜查要員 專門化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과 개선범위를 추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사고는 소위 조직 분석, 경쟁자 분석, 고객 분석의 3각 구도를 출발점으로 한다. 여기에서 고객이라 함은 주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치안서비스의 고객은 국민, 搜查教育訓練의 고객은 교육대상이 되는 搜查要員, 搜查要員 채용에 대해서는 搜查警察에 매력을 느끼고 응시하게 되는 잠재적 警察人力으로서의 국민 등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치안환경분석과 搜查力量分析을 통한 組織分析은 앞 장에서 상술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분석 결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현시점에서 1차적으로 개선가능하고 시급한 현안과제의 범위를 지정해 보고자 한다.

경쟁자 분석 및 고객 분석은 다음의 각 장의 해당되는 부분에서 각각 언급해 보기로 한다. 특히 경쟁자 분석은 선진외국의 사례를 기능 Benchmarking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그림-5〉 기본적 분석틀

이러한 분석 흐름에 따라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搜查力量分析을 위한 기법으로 사용하였던 7S는 해당조직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어느 요소가 가장 취약한가? 에 따라 개선 내지는 적용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지만, 우리 警察組織의 경우 人材(人力), 運營體制, 組織構造, 組織能力의 向上을 1차적으로 도모하고, 전략수립을 2차적으로 추구한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의 총체적 결합하에 조직 풍토 및 범조직적 공감대의 자발적 형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구분	問題點 要約	重點 檢討 項目	優先順位		
			1	2	3
犯罪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別法犯 및 交通 관련 사범의 증가 • 고소·고발 사건의 폭주 • 大都市 中心 범죄 발생 • 犯罪의 흉폭화, 파렴치화 • 犯罪의 광역화, 기동화 • 24시간 犯罪에의 노출 • 犯罪의 국제화 • 情報化社會에 따른 범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搜查力量 감식요소 정비대책 • 法律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 犯罪搜查에 있어서 국민협력의 확보 • 搜查活動의 과학화 추진 • 대도시 중심의 Team Police 체제 도입 • 廣域 搜查力의 강화 • 國際 搜查力의 강화 • 수사요원의 전문적 육성 필요 	√	√	√
組織構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搜查警察의 인력 부족 • Line과 Staff의 역할분담이 불명확 • 부서별 業務量의 불균형 소지 • 搜查經歷者층의 빈약 • 低學歷者의 비율이 큼 • 新種犯罪 및 첨단범죄에의 대응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搜查警察충원체제 확립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人力 需給 計劃 수립 • 사무분장 개선 • 高學歷者 및 社會內 전문인력의 흡수활성화 • 科學化추진 부서의 강화 	√	√	
運營體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場中心의 수사역량 미흡 • 搜查教育體制 정비 필요 • 수사역량의 지속 강화 저해 • 一貫性·恒常性 있는 수사 전개 미흡 • 搜查費의 비현실성 및 전근대적 처리 시스템 • 直屬上士 중심의 수사활동 미흡 • 地方 Network에 대한 방안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場鑑識 및 초동수사 강화 • 搜查教育體制 정비 • 수사비 현실화 및 처리 시스템의 개선 • 搜查教育履修者의 수사 부서 배치 철저 • 명확한 권한 이양 • 목표관리 • 資源의 조달과 적정배분 	√	√	√

구분	問題點要約	重點檢討項目	優先順位		
			1	2	3
人才 (人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個人別 육성 및 관리 미흡 • 能力重視 풍토에의 거부 반응 • 後繼者 育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搜查警察 채용 방법 및 教育訓練 내실화 미흡 • 搜查部署 기피현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육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필요(후계자 육성 포함) • 能力重視 風土의 조성 • 搜查警察 採用制度 개선 • 搜查教育訓練 내실화 방안 • 획기적인 勤務與件 및 사기양양 대책 절실 • 평정제도 개선 • 搜查業務 장기근속 보장방안 	✓	✓	
組織 能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位組織運營이 조직능력 발휘에 역기능 우려 • 先進技術 습득에 소극적 • 組織能力의 비활성화 • 事故現場에서의 응급해결 능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능에 따른 效率的 運營 (업무조정):교통사범 및 소년범 • 先進技術의 접촉강화 및 조직능력에의 반영 • 組織 Skill 경진대회 정기 개최 • 현장관리의 科學化, 體系化 	✓	✓	
戰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期的 觀點에서의 전략 및 Vision 부재 • 搜查警察 행동규범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Vision, 수사경찰 行動規範 조속 수립 • 국민에 밀착된 수사전개 • 搜查警察의 인텔리전트화 (하이테크화) 	✓	✓	✓
組織 風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報告置重文化 • 피해의식, 무력증, 불감증 만연 • 個人主義, 부서 및 관할 利己主義 팽배 • 상하간 인식의 차이가 큼 • 상의하달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바람이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진실한 報告體制 구축 • 하의 상달의 제도적 장치 필요 	✓	✓	✓
共有價値 (共感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에의 위기감 • 士氣 低下 극심 • 福祉後生에 관심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경과제 도입 실시 • 범조직적 共感帶 형성 • 고객의 명확한 설정 및 奉仕精神의 재정립 • 서기 2000년의 수사경찰상 수립 	✓	✓	✓

위의 중점검토 항목에 의한 총체적인 해결과제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Impact, 긴급도, 개선가능성(난이도) 등의 3요소를 기초로 종합평가한 결과 “採用制度 개선” 및 “搜查教育 훈련체제의 정비”의 두 가지 현안과제와 몇가지 부수과제를 1 순위로서 범위 한정하여 고찰하고, 2 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해결과제는 후속연구로서 차후에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진이 1994년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¹⁹⁾에서도 “科學搜查를 위해 우선 보장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수인력(전문인)확보”가 33%, “전문교육강화”가 29%, “인력충원”이 22%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採用制度和 搜查教育訓練 개선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절실한 과제로서 도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수사간부들의 자기기술서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²⁰⁾

19) 별첨 I 참조

20) 별첨 II 참조

V. 搜查專門化 背景 및 制約 要因

1. 搜查環境의 變化와 搜查專門化 背景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화, 都市化, 情報化, 國際化 등 사회환경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어 사회안정을 이룩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지능화, 凶惡化, 機動化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警察力이 이에 맞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것은 警察의 중요한 기능인 犯罪豫防次元과 搜查機能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警察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검거, 진압하는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搜查를 전개해 나가면서 검거율을 향상시켜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搜查要員의 專門化 방안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警察搜查要員을 專門化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부단한 반복교육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992년 11월 16일 搜查警察으로서의 기본소양의 함양과 과학搜查技法에 대한 주기적인 반복교육으로 搜查警察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민주경찰상을 확립하고자 警察搜查研修所가 개소되어 警察의 搜查力提高와 搜查要員의 專門化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이 警察搜查研修所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搜查警察의 專門化 수준과 搜查要員의 專門化 제약요소 등을 외국(미국, 일본 등)의 실례와 비교, 고찰해 봄으로써 搜查要員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쇄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警察搜查要員을 專門化하는데 앞서 먼저 警察의 搜查力이 왜 강화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당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그 사회의 공공안녕이 법질서 테두리 속에서 잘 유지되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통제가능한 수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은 그 나라는 강한 법집행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 강한 法執行의 土臺는 效率性判斷 準據에 기초한다는 것이다.²¹⁾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강한 법집행은 강한 搜查力이 기초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효율성 요인의 크기에 따라 좌우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리히의 분석(FBI가 규정한 7대범죄에 대한 유형별 회귀계수 측정 결과 강도, 절도, 자동차 절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에서 범죄로 인한 유죄의 수형기간 등 처벌의 가혹성 보다는 검거, 체포로 인한 투옥의 가능성 여부가 더 큰 영향요인임을 밝혀 냄)에서 알 수 있듯이, 警察의 檢舉率의 上昇이 刑량의 상대적 크기 조정보다 더 효율적 형사정책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이때 警察의 檢舉率을 높이기 위한 즉, 警察의 搜查力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실증적 논거야말로 警察 搜查力 強化의 이론적 논거, 정당화 논거가 된다.²²⁾

또한 이러한 警察의 搜查力向上에 의한 검거율 상승을 결정짓는 요인은 첫째, 搜查官의 자질, 사기가 높아야 하고 둘째, 잡는 기술과 기법이 고도화되어야 하며, 셋째, 이에 대한 지원으로서 예산, 장비의 개선이 있어야 함은 물론 끝으로 범인의 발견, 확보, 증거수집, 보전에 관한 수사기관으로서의 權限과 責任을 制度的으로 保障하는 일이다.²³⁾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안전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公權力의 權威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내부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특히 搜查의 專門化에 의한 犯人の 索出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21) 이기호,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1990 ; 同著,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제19편, 1990.

22) 이상안, “경찰수사력 강화의 정당성 논리,” 수사연구, 1993년 1월호.

23) 이황우, “민생치안과 수사경찰력의 향상,” 치안논총 제8편, 1991.

2. 搜查要員의 專門化 必要性

가. 環境變化와 警察의 對處能力 增大 要求

위에서 언급한 諸環境의 급격한 변화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안정을 이룩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適法節次에 의한 公權力의 權威回復과 국민의 安全欲求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어 이에 대응할 행정체제의 構造的·機能的 適應力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것은 곧 警察行政이 단순한 집행·관리기능을 주로 하는 現象維持, 秩序維持, 統制 등의 안정유지자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르는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을 해결하며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변화·발전을 도모하려는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警察行政體制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警察의 人力資源은 물론 물적 시설이나 제도 등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조직내의 인적 자원이 구조, 기술, 업무의 내용과 수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대한 능력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Sthal과 Staufenberger는 “警察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도는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警察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O.W.Wilson은 “警察官이 모든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만족을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警察教育의 目的이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警察學者들이 警察의 教育訓練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나. 科學技術發達에 따른 犯罪樣相變化

과학기술의 발달은 범죄의 양상도 변화시켰다. 최근 컴퓨터 칼라복사기의 보급에 편승한 “해커” 및 偽造犯罪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또한 회계장부조작에 의

한 탈세, 신용카드 범죄, 입시부정, 증권 시장조작, 불법자금세탁 등 전문지식을 이용한 知能犯罪가 날로 증가하면서 통상적인 搜查技法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犯罪의 종류가 늘어나 犯罪搜查業務의 專門化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첨단인 사무장비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과 搜查經驗을 가진 搜查要員들이 적당히 분담해서 搜查하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搜查環境은 전문지식을 갖춘 要員들을 거의 무제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3. 搜查要員의 專門化 制約 要因

가. 優秀人力の 誘致裝置 未洽

우리나라 搜查要員에 대한 모집은 長期的인 인력수급에 따른 계획이 진지하게 구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능한 人的 資源을 搜查組織에 끌어들이기 위한 선발에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선발절차에 관하여 지원자의 신체적, 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검사, 상황적 검사 등의 시험방법을 통한 선발과정은 搜查要員 선발시에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나. 教育訓練體制의 欠節

搜查要員에 대한 교육훈련은 1975년부터 종합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초기에는 경위, 경감급 수사관리반교육, 수법장물교육, 화재감식교육 등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고, 1983년에 와서 경위급에 대한 搜查專門化 과정, 1984년에는 경정, 경감급에 대한 搜查幹部연수교육이 이루어졌다. 비간부급은 搜查實務, 交通事故調查, 鑑識 등의 직무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搜查要員은 職務修行에 필요한 수사직무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搜查經歷이 없는 搜查要員은 원칙적으로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대상 인원 약 30% 정도만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搜查要員의 專門化教育은 미

한 탈세, 신용카드 범죄, 입시부정, 증권 시장조작, 불법자금세탁 등 전문지식을 이용한 知能犯罪가 날로 증가하면서 통상적인 搜查技法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犯罪의 종류가 늘어나 犯罪搜查業務의 專門化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을 이용한 첨단인 사무장비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법률지식과 搜查經驗을 가진 搜查要員들이 적당히 분담해서 搜查하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搜查環境은 전문지식을 갖춘 要員들을 거의 무제한으로 요구하고 있다.

3. 搜查要員의 專門化 制約 要因

가. 優秀人力の 誘致裝置 未洽

우리나라 搜查要員에 대한 모집은 長期的인 인력수급에 따른 계획이 진지하게 구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능한 人的 資源을 搜查組織에 끌어들이기 위한 선발에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선발절차에 관하여 지원자의 신체적, 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검사, 상황적 검사 등의 시험방법을 통한 선발과정은 搜查要員 선발시에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나. 教育訓練體制의 欠節

搜查要員에 대한 교육훈련은 1975년부터 종합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초기에는 경위, 경감급 수사관리반교육, 수법장물교육, 화재감식교육 등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고, 1983년에 와서 경위급에 대한 搜查專門化 과정, 1984년에는 경정, 경감급에 대한 搜查幹部연수교육이 이루어졌다. 비간부급은 搜查實務, 交通事故調查, 鑑識 등의 직무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搜查要員은 職務修行에 필요한 수사직무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搜查經歷이 없는 搜查要員은 원칙적으로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대상 인원 약 30% 정도만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搜查要員의 專門化教育은 미

흡한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나라 搜查要員의 教育訓練體制가 안고 있는 흠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訓練需要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教育訓練을 供給하고 있기 때문에 劃一主義 및 形式主義 弊端과 消極的인 訓練抵抗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 훈련에 참여하는 搜查要員의 피동화를 조장하고 있다. 훈련이 필요해서 훈련기관과 훈련계획이 마련되기 보다는 訓練機關과 訓練計劃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되고 있다.

(3) 教育訓練機關의 物的 資源은 물론 유능한 교관요원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를 경험하고 있어 일부과정이 중단되거나 教育期間이 단축되기도 한다. 외래강사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 그들에 대한 調查研究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빈약한 훈련경비 때문에 적절한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다.

(4) 직장훈련은 業務量의 過多와 認識不足, 訓練技術不足 등으로 인하여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5) 국내외 委託教育은 보잘 것 없으며 包括的인 計劃性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不合理한 配置轉換과 昇進에 있어서의 疏外

警察機關에 搜查要員을 얼마나 배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수사부서에 배치된 搜查要員 가운데 職務教育을 履修하지 않은 요원이 거의 70%에 가까우며, 또한 搜查幹部연수과정이나 搜查專門化教育을 이수한 간부도 搜查와는 관계없는 타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교육이수 후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警察官의 보직관리는 警察기관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일과 사람의 적합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

24) 김보환, "수사교육의 실태와 쇄신대책," 수사연구, 1993 8월호.

는 인사권자의 편견이나 지연, 혈연, 학연과 같은 정실적 요소에 의해 결정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보직관리에 적용되는 기준이 과연 合理的이고 現實適合性이 있는가도 문제이며 專門化를 위해 채택된 특기제도는 거의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에 있어서는 試驗昇進, 審査昇進, 特別昇進이 있으나, 시험승진인 경우 근무여건상 업무량의 폭주로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심사승진인 경우에도 직무태만, 직권남용,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기가 쉬워 그 기회는 적다고 할 수 있다.

VI. 搜查要員 採用制度

1. 採用制度의 實態 및 問題點

가. 搜查要員 人的 管理의 效率性이 重要視 되는 理由

앞에서 제시한 체제외적·내적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警察體制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민생치안수요증대에 效果的·卽興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도 중요하나, 발생된 범죄를 신속히 效果的으로 진압하여 特別豫防的 效果를 고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어떻게 搜查活動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시해주는 바는 크다. 이에 成功的 搜查活動을 결정짓는 요인이 다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요인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가에 논의가 분분하다. 모든 搜查의 法理, 節次, 裝備, 技術 등 조직내적인 요소에 대처하는 것이나, 조직체제외적 변수에 대응하는 결정변수는 人的資源임이 틀림없는데, 警察行政體制내에서 현 警察의 搜查要員의 人的管理의 問題點은 무엇이며, 향후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나. 搜查要員 人事管理의 效率性 高揚을 爲해 採擇할 基本原理

1) 成長的 人間模型의 受容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생애의 보람을 찾으며 성장·성숙할 수 있다. 搜查의 效率性 高揚은 다름아닌 搜查官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장차 警察行政體系가 주된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은 搜查官의 自己實現的·성장지향적·자율규제적 속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人間觀이어야 한다.²⁵⁾

25) 오석홍, 인사행정론(신정판), 박영사, 1993, 77면

2) 統合的 管理體制의 追求

(1) 성장적 인간모형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관리체제를 지향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통합형 관리체제의 핵심은 個人的의 目的과 組織의 目的을 接近시키고 융화시키는데 있다. 統合的 管理는 組織의 效率性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직업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조직구성원의 인간적 성장을 촉진하는 관리이다.

(2) 統合的 管理의 實踐 戰略

① 實績主義의 發展

실적주의를 정착시키고 모든 인사조치의 입안과 실시에서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搜查要員의 직무성취의욕에 관련된 補強的 요인의 배분에서 공평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搜查官들의 自己實現的 노력이 교란을 받게 되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법체계의 비효율적 운영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適材適所의 原則²⁶⁾

適材適所의 원칙추구를 실지로 하고, 搜查官들이 職務修行을 통해 자기실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信賴處理의 促進

搜查官들의 성숙행태를 양성하고 신뢰의 원리에 따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사관리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불신관리는 搜查官들의 미성숙행태를 조장하고, 소외감을 크게 하며 創意的 業務修行을 挫折시키고, 形式主義를 초래한다.

④ 搜查官의 信賴性 提高

신뢰관리를 추구하려면 搜查官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장·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인적 專門化를 촉진하여야 한다²⁷⁾ 人事管理는 搜查官들이 인간적 감수성과 책임있는 능동성을 가지고 搜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²⁸⁾

⑤ 協同的 努力의 促進

26) 이대원, 경찰수사관의 수사인식, 경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1989, 34면

27) 인적 전문화는 일의 전문화 내지 분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적 생존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적 능력의 풍요화를 의미한다.

28) 오석홍, 전계서, 79면

관리의 실제에 있어 협동모형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화·자율화 시대에 미분화되고 권위주의적인 감시와 하향적 통제를 조장하는 인사관리는 억제되어야 한다. 참여에 의한 意思決定, 協同的 勞力, 業務執行의 自律性 등을 촉진하여야 한다.²⁹⁾

다. 採用制度 實態

1) 採用方法

현재 우리나라 搜查警察官 채용방법은 一般警察과 동일하며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뉜다.

공개경쟁채용은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 및 경찰대출신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것과 순경으로 공개채용하는 두가지 방법을 주로 하고, 경정에 대한 공개경쟁채용도 제도적으로 마련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

특별채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1. 퇴직警察官 2년내 퇴직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임용예정직 상응 연구실적, 근무실적, 전문지식 있는 자, 4. 국가고시 합격자,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 6. 특수지 근무자, 7. 외국어 능통자를 전계급 채용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특별채용은 다수인을 제한경쟁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2) 搜查要員 缺員時 充員方法

搜查要員 결원시 충원은 搜查要員 관리규칙(1991. 7. 31 警察廳 예규 제60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충원될 수 있는 搜查要員의 자격으로는 ① 대학졸업자로서 警察 기본교육 이수자, ②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警察經歷 3년 이상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搜查경력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적성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이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警察廳, 地方

29) 박동서, 인사행정론(제2전정판), 법문사, 1992년, 54면

廳, 警察署別 搜查要員 選拔심사위원회에서 選拔하여 充원하도록 되어 있다.

3) 特別採用 實績

그동안의 搜查·刑事要員 年度別 特채 實績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表 6-1) 搜查要員 特別採用 實績 (단위: 명)

구 분	特 殊 部 分	階 級	採用人員
85	수사, 정보 요원	경위	1
87	형사기동대(군출신)	경장, 순경	각 14, 46
90	조사요원	경사	60
91	사복기동대 요원 (제한 및 일반공채)	순경	261
92	형사기동대 요원	순경	694
	사복기동대 요원	순경	244
93	형사기동대 요원	순경	658
	수사요원	경장	60

: 경찰청 내부

<분야별 응시자격>

○ 搜查警察(93)

가. 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

나. 학력 :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學士學位 所持者

※ 전공분야 :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통계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전자계산학, 물리학, 화학, 사회학, 심리학, 국문학, 영문학.

다. 병역 : 병역 필한 자

라. 신체 : 警察公務員 임용관계법령에 결격사유 없는 자.

○ 조사경사(90년)

가. 연령 : 21세 이상 30세 이하

- 나. 학력 : 4년제 법과대학 卒業者
- 다. 기타 : 전과 동일
- 형사기동대, 사복기동대(92년)
 - 가. 연령 : 21세 이상 30세 이하
 - 나. 학력 : 고졸 이상 또는 그와 同等 學歷者
 - 다. 무도 : 공인 초단
 - 라. 기타 : 전과 동일
- 형사기동대(93년)
 - 가. 무도 : 공인 1단 이상 소유자
 - 나. 기타 : 92년과 동일

라. 搜查警察 人事管理의 問題點

1) 組織의 根據法上의 問題點

國立警察이 창설된 후 1991년 5월까지 警察組織의 근거법은 단일화되지 못한 채 중앙기구는 정부조직법, 지방기구 및 일선기구는 지방자치법 등에 각각 분산 규정되어 있어서 警察行政이 일관된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부적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결과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 4369호로 警察法이 통과되었으니, 전문 24조와 부칙 6조의 규정으로는 방대한 警察組織의 근거법으로서 역부족이며, 수많은 관계 법령을 규정하여 업무 한계의 불명확성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의 人權保護와 수사상 實體的 眞實의 發見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양대 목적을 추구하는 警察搜查 분야에서 이러한 불협화음의 발생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근본적으로는 專門 搜查人力 양성의 조직적 대응책의 강구에 있어서도 그 근거법이 부실한 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이는 전술한 搜查의 양대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搜查權 體制上的 問題點

警察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든 그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자면 먼저 지휘체통의 일원화로 기능발휘의 구심력이 확립되어야 하나, 警察은 많은 상부조직을 두고 있어 지휘체통이 다원화되어 효과적인 기능발휘가 기대되기 어렵다. 조직외부의 간섭으로부터 기능의 자율과 독립성이 보장됨으로써 의욕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나, 구조적으로 조직의 근거법에 매달려 외부압력을 배제할 수 없어 기능의 능력발휘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책임과 권한의 균형원리에 의해 기능수행에 따른 적정한 권한의 보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이와 같이 警察組織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한, 기능자체의 정체현상은 물론 조직요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그 기능의 정상적인 운용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警察의 治安機能에는 유독히 저해요인이 도처에서 제동을 가하고 있는 바, 警察의 기동성 제고를 위해 하루 빨리 제반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의 경우 검사의 보조기관으로서 司法警察官吏를 인정하여 警察의 搜查權 獨立化를 절대적으로 부인하였다.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被疑者 人權保護 側面의 강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搜查警察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증가일로에 있는 다양한 범죄추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3) 任用管理上的 問題點

우리나라 搜查要員의 신규채용은 과학적이고 실용성있는 인력계획에 따른 제도화된 모집이 아니었다. 1987년에는 「搜查要員 管理規定」을 제정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로 搜查要員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충성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서

둘째로 搜查要員의 자격기준은

- ㉠ 대학졸업자로서 警察基本教育을 이수한 자
-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警察경력 3년 이상인 자
-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搜查경력 1년 이상인 자

셋째로 搜查要員은 지적 능력과 윤리적 사고력, 추리력, 인내력, 정서적 안정성 등을 측정진단하여 작성된 종합적성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搜查要員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권자의 추천으로 搜查要員 결원시에 이를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搜查要員의 선발은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은 아주 희소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 내부로부터 수시로 충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警察公務員의 채용에 있어 응시자격기준과 채용시험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警察公務員의 자격기준은 나라마다 그 나라의 형편과 공무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年齡, 身體條件, 學歷에 관하여 일반적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시험은 警察의 역할과 요구조건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능력, 그리고 직무형태를 소유한 지원자를 가려 뽑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만능약은 아니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체검사, 필기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서류전형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警察官 採用시험에 있어 특별채용시험과 공개경쟁시험 어디에도 搜查警察 專門人力 확보를 위한 獨立된 분야는 없다. 단지 一般警察分野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외사경찰분야가 독립영역으로 존재할 뿐이다. 獨立的인 搜查警察 분야가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경험적인 관점에서 다소 불합리하다면, 特別採用시험에 있어서 과년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4) 補職管理上의 問題點

警察官은 계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동일한 직

급에 부여되는 모든 직위는 그 자체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은 직위에 따라서 요직과 한직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警察官의 個性이나 기호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가치관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어 補職競爭의 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警察官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원래 보직관리는 다양한 사람과 수많은 직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법규는 개괄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운영의 묘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령에는 警察官의 補職管理에 관하여 몇 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배하여 변칙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이를 통제하고 效率的인 管理를 보장하는 제도상의 뒷받침이 없다. 특히, 搜查警察분야의 경우 그 突發性과 不確實性, 비정형성 및 사건발생시 각종 서류작성 등의 行政業務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業務過重과 精神的 스트레스 및 結果的으로 발생하는 책임문제까지 접촉되어 있어 消極的 搜查 등의 불합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搜查警察 補職 자체가 소위 3D 분야라며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補職管理上의 限界가 있는 실정이다.

5) 昇進管理上의 問題點

警察官의 승진은 警察創立 이후 關係法과 규정의 개정으로 제도상 시행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승진의 방법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나눌 수 있고 일반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警察公務員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警察公務員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경무관 이하 계급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며, 경정 이하에 있어서는 승진 시험(단, 경위승진은 시험만 실시)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昇進制度는 搜查인력 확보차원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요소가 내재하게 되며, 이는 搜查警察分野의 경우 실무상의 과중한 업무로 승진시험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고, 징계 등 책임사유가 빈발하며, 이를 감안한 탄력규정이 不備하다는 문제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搜查警察의 士氣低下 및 質的인 向上에 있어 거대한 장애라고 볼 수 있다.

6) 停年制度上的 問題點

사실상 사람의 능력을 年齡水準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한국인의 평균연령의 장수경향과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후보장이 불충분한 현 시점에서 警察組織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의 정년을 58세로(경정 이상은 61세) 규정하고 있는 것(警察公務員法 제24조 1항 1호)은 非活動期間의 長期化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人力經營面과 社會政策的인 面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특히 同法 同條 1항 2호에는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다만 동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자인 비간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순연장책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명확화와 함께 퇴직 후 諮問機關 등의 설립을 통해 兪休 專門人力의 적극적인 兪치에 나서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직내적인 新陳代謝의 促進과 活力注入 側面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특히 Know-how의 축적과 경험이 중시되는 警察搜查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년제도의 재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外國事例 檢討

가. 日本(最近 大分縣 警察의 事例)³⁰⁾

1) 새로운 警察官採用制度 導入의 背景

일본에서도 역시 최근 내외의 政治·經濟·社會 政勢의 急變에 부응하여 國際化,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현저히 이루어지고, 交通體系의 整備에 의한 犯罪의 Borderless(비경계)화, 스피드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外國人 犯罪의 增加로 말미암아 종전의 警察經驗이 通用되던 시대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30) 下平富士雄, "新たな 警察官採用制度の 導入についし, -[社會人對象の 警察官 特別採用 試驗]制度の 導入など-", "警察學論輯 제47권 제8호, 東京: 立花書房, 1994년 8월호, 154-171面.

6) 停年制度上的 問題點

사실상 사람의 능력을 年齡水準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한국인의 평균연령의 장수경향과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후보장이 불충분한 현 시점에서 警察組織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의 정년을 58세로(경정 이상은 61세) 규정하고 있는 것(警察公務員法 제24조 1항 1호)은 非活動期間의 長期化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人力經營面과 社會政策的인 面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특히 同法 同條 1항 2호에는 계급정년을 규정하고, 다만 동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무자인 비간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순연장책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명확화와 함께 퇴직 후 諮問機關 등의 설립을 통해 兪休 專門人力의 적극적인 兪치에 나서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직내적인 新陳代謝의 促進과 活力注入 側面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특히 Know-how의 축적과 경험이 중시되는 警察搜查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년제도의 재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外國事例 檢討

가. 日本(最近 大分縣 警察의 事例)³⁰⁾

1) 새로운 警察官採用制度 導入의 背景

일본에서도 역시 최근 내외의 政治·經濟·社會 政勢의 急變에 부응하여 國際化,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현저히 이루어지고, 交通體系의 整備에 의한 犯罪의 Borderless(비경계)화, 스피드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外國人 犯罪의 增加로 말미암아 종전의 警察經驗이 通用되던 시대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30) 下平富士雄, "新たな 警察官採用制度の 導入についし, -[社會人對象の 警察官 特別採用 試驗]制度の 導入など-", "警察學論輯 제47권 제8호, 東京: 立花書房, 1994년 8월호, 154-171面.

자기쇄신으로, 사무의 合理化 및 효율극대화, 하이테크 기기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警察人力의 능력향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3년에는 컴퓨터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중견전문인 3명을 警察官으로 중도채용하였고, 이러한 중도채용을 定例化, 상기화하기 위하여 1994년에 새로운 개념의 採用試驗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警察官 채용에 있어서 대졸자의 중점 확보」로의 변경이라는 두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인대상의 警察官特別採用試驗 制度는 그해 8월 응시 이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예상외의 호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2) 社會人對象의 警察官特別採用試驗

이 제도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專門能力을 보유한 자를 警察官 또는 警察職員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과거 법학부, 경제학부 출신자를 주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이공계에서 博士學位 所持者, 外國語에 능통한 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開發이 가능한 자, 의학의 지식을 가진 자, 금융·증권의 지식을 가진 자, 조직공학 전공자, 운동부에서 주장의 경험과 지도능력을 갖춘 자 등을 채용하여 財務搜查官, 國際搜查官 등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연령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뽑고 있다.

3) U턴 센터(U turn Center)의 運營³¹⁾

위와 같이 우수한 인재를 사전확보하기 위하여 大分縣에서는 직업안정과내에 U턴 센터를 설치하고, 特技가 있는 희망자를 등록해 놓고 있다. 이러한 U턴 센터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아주 크다고 한다.

大分縣의 경우 각종 자격을 취득한 자가 449명(전체 등록자의 60.6%)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타 특이한 자격으로는 약학박사, 항공관제기사, 헬리콥터 조종사 등도 있다.

31) U turn의 의미는 대도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 인재인 지방출신자를 자기 지방으로 유치하여 전업(轉業)케 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여, 요즈음은 이를 근간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상당히 일반화 되어있는 제도이다.

〈表 6-2〉

登錄者의 保有資格

(單位: 名)

자 격 명	人數	자 격 명	人數	자 격 명	人數
정보처리 2종 이상	49	전기공학사 2종 이상	13	노동위생관리자	7
영어검정 2급 이상	26	보일러기사 2급 이상	11	측량사 면허	7
부기 2급 이상	23	택지건물취급기사	11	건축사 2급 이상	6
교원자격	20	토목시공관리자 2급이상	10	약제사	6
위험물취급 2종 이상	18	크레인면허	9	기타	233

(합계 : 449명)

보통 등록자들은 연령이 많기 때문에 警察官採用試驗을 정식으로 응시한다면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面接重視形의 새로운 채용시스템도 구상되고 있다.

4) 試驗內容과 方法

(1) 내용

- 1차 시험 : 교양, 경험소논문, 신체·체력검사
- 2차 시험 : 면접, 적성검사, 신체정밀검사

(2) 방법

社會人으로서의 經驗(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평가하는 것 외에 警察官으로서 적합한 人物性을 중시한다.

- 敎養試驗은 수험자층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실시
- 論文은 종래의 소논문을 경험소논문으로 하여 職務經驗(專門인 지식·기능)을 평가하고
- 2차시험의 面接은 종래보다 더 人物重視의 관점에서 시행.

5) 大卒採用者에 力點

警察官 채용시험은 대졸警察官 채용시험과 고졸警察官 채용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최근에는 응모자수는 비슷하나 합격자수는 大卒採用人員이 고졸채용 인원의 2배 정도로서 大卒重視採用을 強化시키고 있다.

6) 戰略的·積極的 弘報活動 展開

警察官採用制度가 이처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공보관의 기자회견, 공보관의 유선TV 및 라디오 출연, 각종 신문에의 홍보, 각종단체에의 참가 홍보, 홍보명찰 패용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受驗希望者들에게 매력포인트를 부여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美國

1) FBI

일반적 요건으로 ① 美國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어떠한 지역에서의 근무에도 지장 없을 것, ③ 시력, 청력에 문제가 없을 것, ④ 年齡은 23세 이상 35세 미만일 것, ⑤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것, ⑥ 身體健康하고 무기의 사용, 급습, 자기방위에 문제가 없을 것. 또한, 採用의 必須條件으로 ① 法務部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을 것, ② 大學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을 것, ③ 大學에서 외국어를 전공하여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 ④ 화학, 물리학, 생화학, 약학, 전자공학, 금속공학 등을 전공하고 原則적으로 博士學位 또는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을 것 등의 학력요건 중 어느 하나로 하고 있다.

2) 주(州) 경찰

State Police란 명칭을 가진 조직을 가지고 있는 州는 펜실베니아주를 비롯 모두 23개주에 달하고 있다.³²⁾ State Police의 임무와 조직형태는 주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州民의 生命, 身體, 財産의 보호와 치안의 유지, 범죄수사, 교통경찰 등 폭넓은 일반적 경찰권을 가지고 주 전역에 배치하고 있는 제복경찰이다. 犯罪 捜査는 주 전역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치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범죄는 자치제 경찰에 맡겨져 있고, 特殊犯罪, 重要범죄에 대하여 State

32)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법무자료 제 98집), 1988, 466--468면

Police가 출동하고 있다.

State Police도 주에 따라 약간씩은 상이하지만 경찰관의 채용자격은 대개 다음과 같다.³³⁾ ① 年齡 20세 이상 ② 高卒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③ 聯邦 및 州의 권총소지 자격을 가질 것 ④ 미합중국의 시민 또는 국적 소지자, 영주의 국민으로서 그 주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⑤ 체중, 시력, 청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이다. 채용시험은 다지 선택식(多肢選擇式)으로서,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警察官 채용적격자 명단에 성적순으로 등재되고, 이 명부는 등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適格者에 대하여는 심리 테스트,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실제 採用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등재명부의 상위자로부터 순차적으로 면접이 실시된다. 面接合格者는 가채용이 되고 1년간의 수습후 정식채용된다.

다. 프랑스

프랑스 국가 경찰은 총무, 섭외부, 과학기술경찰부, 경제, 금융범죄수사부, 기타 수사부로 조직되어 있어 警察의 科學化와 新種犯罪對處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찰관 채용에 있어 그 자격요건이 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 ② 兵役義務를 필한 자, ③ 성격과 건강이 좋으며 철저한 신원조사결과를 통하여 충성심이 입증된 자, ④ 公務員試驗에 3회 이상 낙방하지 아니한 자로서 私服巡警은 19세부터 28세이하의 연령조건에 해당되는 高卒者 이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합격되어야 하며, 私服警衛는 公開競爭試驗과 在職者內部昇進의 두 방법에 의하여 결원의 50%씩을 각각 충원(공개 경쟁시험의 경우에는 30세 이하의 학사학위 소지자)하는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年齡과 學歷에 따라 5개의 職團別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社會變化에 부응하고 있다.³⁴⁾

33) 立花書房, "主要諸外國の警察制度II", 경찰학논집(제 48권 제 5호), 1995년 5월호, 103~140면

34) 상계서, 1995년 5월호, 11~12면

라. 이태리³⁵⁾

1) 警察組織概要

이태리 警察組織은 國家機關으로서는 내무부에 속해있는 國家警察(POLIZIA DI STATO),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特殊警察(ARMA DEI CARABINIERI), 재무성에 소속되어 있는 財務警察(GUARDIA DI FINANZA)이 있고, 지방자치기관으로는 地方警察(POLIZIA MUNIZIPALE)이 있는데, 이 지방경찰은 기본적으로 내무부 조정하에서 경찰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1994년 5월 현재 이태리에는 95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그 중 15명이 경찰직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家警察 中央組織 중 형사국은 범죄대책부, 국제형사부, 과학경찰부, 경제부, 중대범죄대책부, 국가경찰 OPERATION 부, 중앙방법부, 지역조정 및 기동수사부의 8개부서로 業務가 분단되고 있다. 地方警察 본부에는 일반적으로 公共의 安全과 秩序維持 및 인사, 사적활동의 許可와 統制(행정경찰), 사법경찰, 범죄수사 및 테러대응특별업무라는 4가지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부수하는 기동수사대, 외국인과(課), 과학경찰연구소, 통신지령실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경찰본부의 하부기관으로는 警察署가 있는데, 1994년 5월 현재 전국에 335개의 경찰서가 있다.

2) 採用 및 昇進

채용은 순경, 간부후보, 경정급에 대하여 公開試驗에 의하여 시행한다. 순경부터 간부까지의 승진은 각각의 계급에서 일정한 勤續年數를 경과한 후 勤務成績 및 昇進試驗의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간부후보채용의 공개시험은 순경부터 경사까지의 직에 있는 비간부도 受験資格이 주어진다. 또 경사로서 일정한 勤續年數를 경과한 사람은 학력(고졸이상), 연령(30세 이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40세 미만이라면 수험자격이 주어진다. 경정급 채용의 공개시험은 28세 미만의

35) 立花書房, "主要諸外國の警察制度", 경찰학는집(제47권 제7호), 1994년 7월호, 46~52面

法學士 또는 政治學士가 응시할 수있으며, 30세 미만의 간부직에 있는자도 응시 가능하다. 경정급에서 지휘관으로의 승진은 일정근속년수 경과후 勤務成績과 試驗成績에 의해 결정된다.

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는 초임순경은 警察巡警學校, 내부 시험을 통하여 간부로 합격한 자는 警察幹部大學, 간부후보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警察幹部傳授大學, 경정급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警察上級大學에서 실시한다.

3. 改善方案

가. 採用管理上의 改善方向

警察公務員법 제8조(신규채용)에 의거하여 채용시 搜查關聯分野, 예컨대 감식 전문요원이나 사설경비업체 등의 출신자들에게 응시의 특혜를 줌으로써 搜查人力의 確保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警察搜查分野에 관심이 있는 인력의 자발적 유도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이 병행되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知的力量, 技術能力,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야말로 搜查要員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철저함과 강인성이 있는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람을 잘 융화시키고 조직활동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採用制度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搜查專門人力의 수급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人力計劃은 人力供給과 治安需要에 대한 分析과 豫測에 따라 合理的 定員算出基準을 표준화하여 搜查業務의 요청에 부합되는 인력을 적시성있게 효율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둘째로 선발방법을 현재의 警察經歷者 중에서 선발하는 폐쇄체제에서 적정한 비율에 의한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접근시켜 가야 한다. 특히, 搜查와 같은 전문분야는 系列別 募集으로 연간계획인원을 연 2회에 걸쳐 分割募集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할 것이 바람직하며 연초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공

法學士 또는 政治學士가 응시할 수있으며, 30세 미만의 간부직에 있는자도 응시 가능하다. 경정급에서 지휘관으로의 승진은 일정근속년수 경과후 勤務成績과 試驗成績에 의해 결정된다.

경찰관 교육에 대해서는 초임순경은 警察巡警學校, 내부 시험을 통하여 간부로 합격한 자는 警察幹部大學, 간부후보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警察幹部傳授大學, 경정급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警察上級大學에서 실시한다.

3. 改善方案

가. 採用管理上의 改善方向

警察公務員법 제8조(신규채용)에 의거하여 채용시 搜查關聯分野, 예컨대 감식 전문요원이나 사설경비업체 등의 출신자들에게 응시의 특혜를 줌으로써 搜查人力의 確保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警察搜查分野에 관심이 있는 인력의 자발적 유도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조성이 병행되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

知的力量, 技術能力,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야말로 搜查要員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철저함과 강인성이 있는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람을 잘 융화시키고 조직활동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採用制度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搜查專門人力의 수급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인력계획이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人力計劃은 人力供給과 治安需要에 대한 分析과 豫測에 따라 合理的 定員算出基準을 표준화하여 搜查業務의 요청에 부합되는 인력을 적시성있게 효율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둘째로 선발방법을 현재의 警察經歷者 중에서 선발하는 폐쇄체제에서 적정한 비율에 의한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접근시켜 가야 한다. 특히, 搜查와 같은 전문분야는 系列別 募集으로 연간계획인원을 연 2회에 걸쳐 分割募集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할 것이 바람직하며 연초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공

보, 포스터, 영화 등을 통하여 대학교는 물론 사설학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적극적으로 모집하며 모집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 다양화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搜查業務,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이수자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學歷要件을 強化하여야 하며 장학금을 지급하여 特別採用하는 방법 등도 적극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간부후보생의 모집도 일정비율 搜查職으로 모집할 것이 기대되며 司試출신자는 인권보호관 또는 법무관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법률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司試출신자들을 이 직무에 종사시킴으로써 告訴·告發事件의 남발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選拔方法도 그 效用性を 높이기 위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1차시험으로서의 신체검사는 신장과 체중 등 의학적 健康基準設定도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강인성과 기동성 등의 특성이 보다 정당화되어야 한다.

2차시험으로서의 筆記試驗도 그 효용성을 높여야 하고 試驗科目의 調整이 모색되어야 하며 학교의 추천, 성적 등이 선발과정에서 더 많은 비중을 갖게 되어야 한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태도, 흥미 등의 측정, 성격검사 등의 인성시험도 늘려 나가야 하며 모의연습식 시험과 같은 현대적 기법들을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3차시험으로서의 面接試驗은 職務修行에 필요한 능력, 發展性 및 適格性を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面接試驗의 內容이 필기시험에서 평가했던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 되풀이하여 물어보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標準的 質問과 사전준비, 면접기법의 개발, 시험관의 훈련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效用度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新規採用者에 대한 시보임용제도가 유효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채용예정직의 업무를 상당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고 이를 관찰해서 그 적격성을 판정하는 것이지만 이 제도는 실천적 내실이 거의 없어 명목상의 제도에 전략한 감이 있다. 따라서 시보제도의 선택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초임보직에서의 선택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惡質化, 巧妙化, 知能化되는 범죄에 대비한 搜查力量強化方案으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警察官으로 중도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즉, 공인회계사를 財務搜查官으로, 특수정보처리기술자를 컴퓨터犯罪搜查官, 그리고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을 國際搜查官, 감식전문 搜查官 등으로 임용함으로써 재무, 외국어, 과학기술 搜查力量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사전확보하기 위하여 후술하는 「수사인력 개발원」에 일본의 U turn center처럼 인력 은행을 설치운영하여 가용자원을 상시 등록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따른 搜查要員의 募集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62년에 순경급 搜查要員을 360명 모집하였고, 1981년 2회에 걸쳐 83명의 경위급 조사요원을 특별채용하였을 뿐이다. 1982년에 搜查要員 임용규정이 제정되고 부터는 搜查要員의 자격을 警察經歷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搜查要員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다가, 1987년에 搜查要員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대졸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가능케 되었으나 이 규정도 인사권자의 인식부족, 인사질서의 혼란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搜查組織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원자에 대한 정밀한 신체검사나 적성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搜查는 그 성격상 人文科學的 知識과 自然科學的 知識이 모두 요구된다. 자연과학전공 일반대졸자를 警察組織에 특별채용하는 것은 搜查의 능률성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며, 또한 警察 지지기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인력계획에 따른 외부채용이 필요하다.

또 모집의 적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搜查要員의 선발에는 수습 및 적응훈련, 공식적 교육과 전문적인 기술, 지식, 체험, 예비훈련과 현장훈련을 포함한 각종 직무훈련, 搜查職務教育 등의 요구조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모집의 積極化의 중요한 이유는 정부업무의 專門化 수준이 높아지고 産業化, 組織社會化의 촉진으로 인하여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공·사부문의 조직들이 전략적으로 인력획득을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搜查要員 결원시 충원방법은 반드시 소정의 搜查專門履修者로 충원하

여야 한다.

일곱째, 警察의 專門化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교육부서, 행정부서는 非警察官을 채용하여 Uniform Police체제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여경의 직무범위를 재검토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新規採用에 일정수 선발을 義務化하며, 승진, 보직상의 인사제도도 獨自性과 特殊性 감안이 가능하도록 體系化해야 한다.

여덟째, 궁극적으로 搜查警科制를 실시해야 하나, 이것은 장기과제이므로 수사경과제 실시이전까지는 警察搜查研修所를 중심으로 기반조성기간 및 경과조치기간을 두어 제반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 根本的 改善方向 — 根據法の 實質化와 搜查權 獨立化

우선 조직근거법인 警察法の 실질화를 통해, 警察行政에 대한 권력행정의 명령과 강제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결을 통해 警察 本然의 목적달성을 강구하는데 전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警察의 직무를 실질적인 법체계에 알맞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일관성 유지를 통해 搜查警察 뿐만 아니라 警察 전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警察組織은 그 본질적 성격이 권력기관의 말단에서 국민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不偏不黨, 公正中立을 堅持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며, 이를 위해 警察의 정치적 중립화와 搜查權의 獨立化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搜查警察의 사기양양과 專門化는 시대적 요청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 搜查權體制上的 改善方向 — 搜查 네트워크(Net-Work)化

전술한 바와 같이 근거법의 실질화와 警察의 정치적 중립화, 그리고 搜查權의 독립화를 통해 搜查權체제의 警察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더불어 搜查警察의 경우 國立科學搜查研究所, 警察搜查研修所, 廣域搜查團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搜查警察의 양성과 搜查權 자체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搜查 간부와 실무 비간부와의 전략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新種犯罪로 등장하고 있는 세무범죄, 환경범죄, 경제범죄 등의 特別犯罪의 해결을 위한 專門人力양성 방안과,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諮問機關을 구성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補職管理上의 改善方向

순환보직의 전제로서 一般警察行政家和 專門家を 생각해 볼때 警察業務의 기능화 및 專門化에 따르는 전문가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음에 비추어 警察行政에 있어서 一般行政家和 專門家を 어떻게 개념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경위급까지는 專門家로서, 경감과 경정은 일반행정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리고 총경 이상은 一般行政家로 개념짓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補職의 循環은 경위 이하의 계급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경감과 경정은 一般警察行政家로서 능력발휘가 가능한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다만 警察大學 출신자와 간부후보생 출신의 경위의 보직은 實務經驗이 부족하므로 일정기간 일반경과만을 부여하여 모든 警察分野를 교류 시험할 수 있도록 순환시킨 다음 그 적성에 따라 행정경과 또는 搜查 및 형사경과를 부여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이 전문성 제고에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 昇進管理上의 改善方向

유능한 搜查人力의 유치와 신진의 진출을 가능케 하고 사기의 진작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昇進制度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昇進制度는 搜查人力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배려없이 타분야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승진시험을 행하고 있어 專門人力 양성에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한 탄력적 昇進制度의 새로운 모델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여야 한다.

일곱째, 警察의 專門化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교육부서, 행정부서는 非警察官을 채용하여 Uniform Police체제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여경의 직무범위를 재검토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新規採用에 일정수 선발을 義務化하며, 승진, 보직상의 인사제도도 獨自性和 特殊性 감안이 가능하도록 體系化해야 한다.

여덟째, 궁극적으로 搜查警科制를 실시해야 하나, 이것은 장기과제이므로 수사 경과제 실시이전까지는 警察搜查研修所를 중심으로 기반조성기간 및 경과조치기간을 두어 제반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 根本的 改善方向 — 根據法の 實質化와 搜查權 獨立化

우선 조직근거법인 警察法の 실질화를 통해, 警察行政에 대한 권력행정의 명령과 강제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결을 통해 警察 本然의 목적달성을 강구하는데 전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警察의 직무를 실질적인 법체계에 알맞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일관성 유지를 통해 搜查警察 뿐만 아니라 警察 전문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警察組織은 그 본질적 성격이 권력기관의 말단에서 국민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不偏不黨, 公正中立을 堅持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며, 이를 위해 警察의 정치적 중립화와 搜查權의 獨立化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搜查警察의 사기양양과 專門化는 시대적 요청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 搜查權體制上的 改善方向 — 搜查 네트워크(Net-Work)化

전술한 바와 같이 근거법의 실질화와 警察의 정치적 중립화, 그리고 搜查權의 독립화를 통해 搜查權체제의 警察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더불어 搜查警察의 경우 國立科學搜查研究所, 警察搜查研修所, 廣域搜查團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搜查警察의 양성과 搜查權 자체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搜查 간부와 실무 비간부와의 전략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新種犯罪로 등장하고 있는 세무범죄, 환경범죄, 경제범죄 등의 特別犯罪의 해결을 위한 專門人力양성 방안과,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諮問機關을 구성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補職管理上의 改善方向

순환보직의 전제로서 一般警察行政家和 專門家를 생각해 볼때 警察業務의 기 능화 및 專門化에 따르는 전문가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음에 비추어 警察行政에 있어서 一般行政家和 專門家를 어떻게 개념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경위급까지는 專門家로서, 경감과 경정은 일반행정가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리고 총경 이상은 一般行政家로 개념짓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補職의 循環은 경위 이하의 계급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경감과 경정은 一般警察行政家로서 능력발휘가 가능한 방향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다만 警察大學 출신자와 간부후보생 출신의 경위의 보직은 實務經驗이 부족하므로 일정기간 일반경과만을 부여하여 모든 警察分野를 교류 시험할 수 있도록 순환시킨 다음 그 적성에 따라 행정경과 또는 搜查 및 형사경과를 부여하도록 하는 특제를 두는 것이 전문성 제고에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 昇進管理上의 改善方向

유능한 搜查人力의 유지와 신진의 진출을 가능케 하고 사기의 진작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昇進制度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昇進制度는 搜查人力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배려없이 타분야와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승진시험을 행하고 있어 專門人力 양성에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한 탄력적 昇進制度의 새로운 모델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바. 停年制度의 改善方向

신진대사의 촉진책으로 상위계급의 長期沈滯現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이 직위를 유지하고 아울러 승진을 향상시켜 階級別 年齡構造를 재편성함으로써 조직의 노령화를 방지하자는 것이 停年制度 본연의 목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연령정년이나 階級停年으로 한계지운다는 것은 단일기준에 의한 편의적 시책일 뿐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과 인력의 수급 및 그 필요성 등의 다각적인 기준을 통해서 재설정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계선조직과 막료조직을 엄격히 구분하여 계급정년과 승진기준을 制度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VII. 搜查教育訓練

1. 搜查教育訓練의 實態 및 問題點

가. 搜查教育의 發展 過程

우리나라의 警察大學 부설 搜查幹部研修所는 1984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5차 개정으로 搜查業務에 종사하는 경위 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警察大學 설치법 제12조, 警察大學의 組織과 學事運營에 관한 규정 제9조, 警察大學 사무분장규칙 제5조를 근거로 설치되었다. 1984년 4월 6일 搜查幹部研修所 운영규정의 제정, 1984년 5월 1일 搜查幹部研修所 소치 제정의 과정을 거쳐, 1984년 6월 4일 제1기생 29명을 교육하기 시작함으로써 搜查警察의 專門教育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84년 10월 29일 搜查幹部研修所 자료실 운영규칙이 제정되고 1986년 1월 28일 내무부 직제개정에 따라 연수소장은 치안본부 3부 搜查課長이던 것을 3차장이 맡게 되었고 현재는 警察廳 刑事局長이 겸임하고 있다. 搜查幹部研修所는 발족 이후 搜查분야에 종사할 정예간부를 양성하여 왔는데 입소 연령기준이 45세 이하인 자로 제한되어 있어서 현직 搜查課長 및 搜查係長의 教育機會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여론으로 인하여 1986년 4월부터 연령기준을 50세 이하인 자로 상향 조정하였다. 설립 당시의 직제를 보면 직원 정원은 7명으로 연수소장 1명, 연수학과장 1명, 총무계장 하에 서무주임, 경리주임이 있고, 연수계장 하에 연수주임과 교재주임으로 편성되었다. 運營의 면에서 보면, 搜查部署의 경감, 경정을 우선적으로 교육시켜 搜查警察을 정예화하고 대학원 또는 司法研修院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론 및 실무교육의 실시, 수사상 개선사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搜查業務의 參考資料로 활용토록 하였다. 연구활동의 면에서 보면, 搜查事例輯을 발간하고 課題研究報告書를 발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1992년 11월 16일 경감

· 경정급을 위한 수사지휘과정(24주)으로 확대개편하였고 명칭도 警察搜查研修所로 개칭하였다.

나. 效果的인 搜查教育의 要件 및 節次

1) 要件

실제로 搜查教育의 목적은 警察搜查業務의 能力向上이다. 교육에서 얻은 결과는 警察組織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다. 교육의 효과성은 문제나 필요성이 있는 초기의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필요성이 충족된 상태로 나타난 결과를 의미한다.

(1) 효과적인 搜查教育은 적합한 교육과정의 선택과 피교육자의 적절한 선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搜查警察에 알맞는 교과목, 즉 범집행원리, 형사사법절차, 범인체포요령 등의 교과목을 선택하고, 搜查部署에서 근무한 警察을 선발해야 한다.

(2) 효과적인 搜查教育을 위해서는 搜查警察이 교육과정을 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관심과 이해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3) 효과적인 搜查教育은 피교육자 뿐만 아니라 警察管理者에 의한 적극적인 搜查教育의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節次

(1) 適切한 搜查教育目標의 設定

搜查教育의 目標는 搜查警察의 活動을 지원하고 상황에 적합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2) 교관은 자신의 教育技法을 개발하여 가장 적절한 기법을 선택해 교육할 때에 비로소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각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搜查教育기법은 강의식 교육, 현장교육, 모의교육 등이 있는데, 교육기법의 선정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수준, 교육장비, 교육시설 등을 감안하

여 상황에 적합한 教育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3) 搜查教育의 專門化에 대한 결정요인의 고려

搜查要員의 전문성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있다. 첫째 搜查警察의 專門化에 대한 필요성의 문제이다. 이것은 搜查警察의 활동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搜查部署의 활동량이 搜查官의 割當 또는 搜查部署로서의 설립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충분한가의 문제이다. 둘째, 專門的 技術의 요구이다. 전문적 기술은 특별한 교육을 통하여 얻게 되나, 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搜查의 質과 能率性은 체포, 신문, 감식등 전문적·과학적 기술과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專門化에 대한 費用效果에 대한 문제이다. 搜查活動의 비용효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警察의 임무 중에서 搜查機能은 警察의 전체적인 역할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넷째, 人力에 대한 조정의 문제이다. 教育人力의 조정, 계획, 통제의 필요성은 警察組織의 각 부서의 업무와 연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搜查部署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전문가의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新種犯罪인 컴퓨터犯罪, 신용카드犯罪, 마약犯罪, 외국인犯罪의 專門 搜查警察을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4) 搜查教育 戰略의 수립

전략의 선택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첫째, 教育의 目的이다. 즉 搜查教育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搜查教育에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이다. 즉 자원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원하는 戰略을 선택할 수 있다.

(5) 搜查教育 프로그램의 評價

教育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피교육자가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教育方法이나 평가 및 교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반응면에서 볼때 피교육자가 교육에 흥미가 없고 수사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실제 상황에 적응할 수 없다면 교육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학습면에서 볼 때 시험이 교육성공여부의 측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여 교육에 성공률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이 피교육자에 있는 것인지 또는 교육

자체에 있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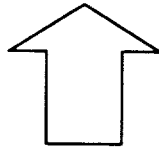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면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할 능력이 구비된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결과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여러 가지 교육요인의 결과이므로 搜查教育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搜查教育의 효과성과 교육 후의 실제 搜查활동의 결과를 비교하는 評價作業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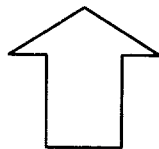
다. 搜查教育의 現況

1) 警察 教育訓練 目標

德性和 專門知識을 겸비한 신진 민주경찰상 구현



-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한 警察官 養成
 - 건전한 공직 윤리관 확립 및 책임·봉사 행정 실천
-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精銳 專門警察官 育成
 - 창의적, 능동적 업무처리 및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 變化와 改革의 주체로서 사명감 고취를 위한 의식개혁 교육의 지속적 추진
- 경찰행정의 科學化, 專門化, 先進化를 위한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의 활성화
- 일선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국가 당면과제 이해, 실천을 위한 職場教育의 體系的 實施

2) '95 警察搜查研修所 教育總括

課 程	教育 日程		教育人員	비 고
계	5個 課程 11回		1,660명	
搜查 指揮 科程 (24주)	1차	'95. 2. 27 - 8. 12	50명	警監·警正
	2차	'95. 9. 11 - '96. 2. 24	50명	
調査 專門化 科程 (16주)	1차	'95. 4. 24 - 8. 12	120명	경위·경감
	2차	'95. 8. 28 - 12. 16	120명	
搜查 專門化 科程 (4주)	1차	'95. 2. 13 - 3. 11	240명	경사·경위
	2차	'95. 9. 11 - 10. 7	180명	
搜查 實務 科程 (4주)	1차	'95. 3. 20 - 4. 15	240명	순경·경장
	2차	'95. 5. 8 - 6. 3	180명	
	3차	'95. 10. 16 - 11. 11	180명	
	4차	'95. 11. 20 - 12. 16	180명	
경대 委託 科程	1차	'95. 6. 19 - 7. 29	120명	경대생 4학년

3) 警察搜查研修所 教育目標

1. 搜查 專門 知識 습득
2. 科學的 수사기법 함양
3. 先進 民主 搜查警察象 정립
4. 국제범죄 대처능력 涵養

4) 강사진 구성

명실상부한 한국 搜查要員 警예간부 專門養成機關으로 자리잡고 있는 警察搜查研修所는 1984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5차 개정으로 搜查業務에 종사하는 경위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한 專門研修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搜查幹部研修所로 설립되었다가 1992년 11월 16일 순경·경장급을 위한 搜查實務過程(4주), 경사·경위급을 위한 搜查專門化過程(4주), 경감·경정급을 위한 搜查指揮過程(24주)으로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였고 명칭도 警察搜查研修所로 개칭하였다. 현재 警察搜查研修所에 초빙되고 있는 강사진 구성을 보면(1993년 8월을 기

준) 現職警察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法醫·科學者로 39명, 前職警察이 14명, 대학교수가 13명, 법조인과 타부처 공무원이 각각 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사의 초빙에 있어서 現職警察, 法醫·科學者에 치우친 감이 있다.

5) 課程別 教育重點方向 및 선발기준

과 정	教育目標	教育重點方向	選拔基準	對 象	비 고
搜查指揮 科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의 수사전문능력 및 과학수사기법 배양 범죄현상에 대한 수사실체법 및 절차법적 지식 습득 투철한 인권보호자로서 윤리의식 고취 유능한 수사지휘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및 현장교육 강화로 현장수사 지휘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교육 진행 현장사건, 사례, 판례 중심교육 실시 수사관련 전문가, 교수, 유능한 외래강사 적극초빙 합숙교육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부서 근무자 중 동과정 미이수자 수사부서 이외 근무자 중 수사간부로서 적성, 발전성이 있는 자 타부처 수사관련부서 5급(영관급) 소속 기관별 선발위원회 구성 운영 	경정, 경감	24주 년 100명 (1회 50명)
調査專門化 科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합법적 수사기법 배양 조사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법 별 조사기법 터득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조사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실무기법 중점 배양 형사사범 일선에서 업무량이 많은 죄중 위주 교육 실무자로서 필요한 컴퓨터 교육 강화 의율착오사례, 판례연구 중심 교육 진행 인권 및 윤리의식 제고 합숙 교육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대졸업생, 간부후보생 과정 졸업생중 이상자 	경감, 경위	16주 년 240명 (1회 120명)

과 정	教育目標	教育重點方向	選拔基準	對 象	비 고
搜查專門化 科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수사전문요원 양성 새로운 범죄양상에 대응한 과학적 수사기법 배양 수사실무자로서 인권보호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분석, 판례 연구 등을 통한 현 장해결능력 제고 형사법령(특별법 포함)의 정확한 이해 촉구 신종범죄수법에 대한 현대적 과학 수사기법 습득 시찰, 견학 등 현장 교육 확대 수사전문가, 유경험자 등 적극 초빙 경찰청 형사국과 협조 교육지원 체제 강화 합숙 교육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부서 근무자 중 동과정 미 이수자 (이수후 5년 이상자 포함) 소속 기관장이 적격자로 추천한 자 타부서 수사관련부서 6급(위관급) 공무원 	경위, 경사 및 관계기관 수탁자	4주 년 420명 (1차 240명) (2차 180명)
搜查實務 科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기초 이론 및 관계법령의 정확한 이해.숙지 새로운 지식, 정보, 기술 습득으로 실무 적용 능력 배양 수사실무자로서 사명감확립 및 의식개혁 신종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선 실무에 활용가능한 사례위주 교육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경찰상정립을 위한 의식 개혁 교육 시찰, 견학 등 현장교육확대(법정등) 경찰청 형사국과 협조 교육지원 체제 합숙 교육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부서 근무자 중 동과정 미 이수자(이수후 5년 이상자 포함) 타 부서 수사관련부서 7급(하사관 공무원) 	경장, 순경 및 관계기관 수탁자	4주 (1차 240명) (2-4차 180명)

과 정	教育目標	教育重點方向	選拔基準	對 象	비 고
경대생 搜查委託 科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합리적 조사기법 습득 • 사범별 구체적 사안 연구 •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조사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명별 조사서류 작성 실습 • 일선 조사실무 책임자 위주의 강사 선정으로 체험적인 실무 교육 • 조사실무사례 위주 교재 및 참고자료 활용 교육 • 합숙교육 	경찰대학 4학년 재학생	좌동	6주 (1회 119명)

6) 교과목 및 시간 편성

과정	합계		素養科目			教養科目			實務科程			기타 시간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비고	과 목	시간	비고	과 목	시간	비고	
搜查指揮 科程	66	884 (100%)	4	10 (1%)	윤리교육 강화지침 반영	6	120 (14%)	경찰홍보 론 신설	56	591 (67%)	선거법 위반사범, 탐문수사 신설	163 (18%)
調查專門化 科程	33	608 (100%)	3	8 (1%)		7	120 (20%)	형법과목 축소	23	409 (67%)	선거사범, 시위사범 등 신설 (실습 316시간)	71 (12%)
搜查專門化 科程	26	152 (100%)	3	7 (5%)		3	30 (20%)	형사증거 법, 판례및 형사관련 사건 신설	20	99 (66%)	환경사범, 선거사범, 총기감정 신설	16 (10%)
搜查實務 科程	26	152 (100%)	3	7 (5%)		3	31 (20%)	형법, 형소 법, 민형사 관련 사건 신설	20	99 (66%)	변사건 처 리, 선거사 범, 총기감 정 신설	15 (10%)
경대생搜查 委託科程	17	228 (100%)							17	204 (89%)		24 (11%)

7) 각 과정별 교육 프로그램

우선 搜查지휘과정을 예를 들어보면 교과목이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

(1) 소양과목

특강, 공직자의 자세, 搜查와 倫理, 搜查와 人權, 신한국창조, 체력단력 등 6개 과목

(2) 교양과목

憲法, 民法, 刑法,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사판례연습 등 10개 과목

(3) 搜查一般

형사관리, 搜查行政, 搜查指揮, 初動搜查, 手法搜查, 公租搜查, 搜查技法, 搜查와 進山, 국제형사警察 등 10개 과목

(4) 科學搜查

搜查와 감식, 법의학, 혈청학 및 유전자지문, 법이화학, 물리학적 검사법, 마약 감정, 문서감정, 총기감정, 성문감정, 거짓말탐지기, 현장감식, 지문감식 등 20개 과목

(5) 搜查實務

강력사건搜查, 組織暴力搜查, 知能犯搜查, 과실범搜查, 금융범죄搜查, 어음·수표사범搜查, 장부搜查, 보험범죄搜查, 컴퓨터犯罪搜查, 조세범搜查, 관세범搜查 등 13개 과목

(6) 特別犯搜查

교통사범搜查, 소년범搜查, 의사범搜查, 마약사범搜查, 노동법위반사범搜查, 공해사범搜查 등 12개 과목

(7) 事例分析 및 實習

사례발표 및 토의, 搜查本部 현장실습, 형사법원 견학, 방송국 견학, 교도소 견학 등 70시간

(8) 기타

분임과제 연구는 63시간, 입소 및 수료식, 유적지 순례, 사격 등 기타 93시간
과정별 상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搜查指揮課程

구분	교과목	시간						비고
		계	강의	실습	시범	분임연구	기타	
총 계		884	465	193		63	163	100%
소양 과목	소 계	10	10					1%
	수사요원의식개혁	3	3					
	수사간부로서의 신념과 자세	2	2					
	수사와인권	3	3					
	경찰윤리	2	2					
교양 과목	소 계	120	111	9				14%
	민법	20	20					
	형법	30	30					
	형사소송법	30	30					
	범죄학	15	15					
	범죄심리학	20	11	9				
	경찰홍보론	5	5					
실무 과목	소 계	591	344	117		35	35	67%
	법률적용요령	20	15	5				
	민·형사관련사건	20	20					
	형사판례연습	20	15	5				
	초동수사	10	6	4				
	수법공조수사	6	3	3				
	탐문수사	7	4	3				
	수사서류작성 및 검토요령	25	15	10				
	수사자료수집관리	5	3	2				
	수사예산확보 및 집행	3	3					
	수사와전산	10	7	3				
	국제형사경찰	5	5					
	출입국규제요령	5	5	4				
	강력사건수사	8	4					
	조직폭력범죄수사	7	7					

구 분	교 과 목	시 간					비 고	
		계	강의	실습	시범	분임 연구		기타
실 무 과 정	절 도 범 수 사	7	7					
	특가범위반사범수사	12	7	5				
	소년범수사	8	8					
	마약사범수사	10	7	3				
	어음수표범위반사범수사	14	11	3				
	금융범죄수사 (자금추적, 신용카드)	13	13					
	보험범죄수사	12	10	2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수사	8	8					
	건축범위반사범수사	8	8					
	임대차보호법	10	10					
	등기범위반사범수사	10	10					
	교통사고조사요령	15	10	5				
	환경범죄수사	10	10					
	공안사범수사	6	6					
	외사사범수사	7	7					
	의료사고사범수사	7	7					
	컴퓨터범죄수사	15	10	5				
	장부수사	20	15	5				
	선집범위반사범수사	7	7					
	법 의 학	20	10	10				
혈청학 및 유전자지문	6	4	2					
법 이 화 학	5	3	2					
법 화 학 적 감 정	8	5	3					
물 리 학 적 검 사 법	5	3	2					
마 약 감 정	5	3	2					
문 서 감 정	5	3	2					
총 기 감 정	5	3	2					
유 류 감 정	5	3	2					

구분	교과목	시간						비고	
		계	강의	실습	시범	분임연구	기타		
실	수퍼임포즈감정	4	3	1					
	성문감정	5	3	2					
	거짓말탐지기검사	5	3	2					
	현장감식	25	1	24					
	화재원인수사	12	7	5					
	지문감식	15	9	6					
	죽흔적감식	7	5	2					
	폭발물수사	4	3	1					
	무	감식장비	3		3				
		수사사례 1	3		3				
수사사례 2		3		3					
과	수사사례 3	5		5					
	사례발표및토의	5		5					
	과수소감정실습	14		14					
정	수사본부현장실습	7		7					
	형사법정견학	7					7		
	판문점견학	7					7		
	방송국견학	7					7		
	교도소견학	7					7		
	감식, 전산소견학	7					7		
	분임연구및발표	35				35			
	소계	163		7		28	128	18%	
기타	입소및수료	5					5		
	과정소개	1					1		
	평가(3회)	6					6		
	설문조사	2					2		
	분임자료수집	28				28			
	유적지순례	21					21		
	휴가(5일)	35					35		
	사격	7		7					
	체력단련	58					58		

② 調査専門化 課程

구분	교 과 목	시 간					비고	
		계	강의	실습	시범	분임 연구		기타
총 계		608	208	329			71	100%
소 양 과 목	소 계	8	8					1%
	수 사 와 인 권	3	3					
	수 사 요 원 의 식 개 혁	3	3					
	경 찰 윤 리	2	5					
교 양 과 목	소 계	120	107	13				20%
	형 법	25	25					
	형 사 소 송 법	15	15					
	민 법	20	20					
	형 사 판 례	20	15	5				
	민 형 사 관 련 사 건	20	15	5				
	범 죄 학	10	10	3				
범 죄 심 리 학	10	7						
실 무 과 목	소 계	409	93	316				67%
	범 죄 수 사 규 칙	5	4	1				
	법 률 적 용 요 령	14	10	4				
	조 사 기 법	8	6	2				
	수 법 공 조 수 사	3	2	1				
	장 부 수 사 요 령	20	15	5				
	어음수표법위반사범조사	12	8	4				
	부 동 산 범 죄 조 사	7	4	2				
	컴 퓨 터 범 죄 조 사	8	5	2				
마 약 사 범 조 사	4	3	1					

③ 搜查專門化 課程

구분	교 과 목	시 간					비고	
		계	강의	실습	시험	분임 연구		기타
총 계		152	94	42			16%	100%
소 양 과 목	소 계	7	7					5%
	수 사 와 인 권	3	3					
	수 사 요 원 의 식 개 혁	2	2					
	경 찰 윤 리	2	2					
교 양 과 목	소 계	30	30					20%
	형 사 증 거 법	10	10					
	형 사 관 례	10	10					
	민 형 사 관 련 사 건	10	10					
실 무 과 목	소 계	99	57	42				65%
	수 사 지 휘 요 령	3	3					
	수 사 서 류 검 토 요 령	7	4	3				
	수 범 공 조 수 사	6	3	3				
	컴 퓨 터 범 죄 수 사	6	4	2				
	선 거 사 범 수 사	3	3					
	지 적 재 산 권 침 해 사 범 수 사	4	3	1				
	마 약 사 범 수 사	5	3	2				
	환 경 범 죄 수 사	3	3					
	수 사 사 례 연 구	6	4	2				
	현 장 감 식	6	1	5				
	화 재 원 인 수 사	6	4	2				
	지 문 감 식	11	7	4				
	족 흔 적 감 식	4	2	2				
	거 것 말 탐 지 기	2	1	1				
	법 의 학	9	5	4				
	혈 청 학	3	2	1				
	문 서 감 식	3	2	1				
	성 문 감 정	2	1	1				
	총 기 감 정	3	2	1				
과 수 소 실 습	7		7					
기 타	소 계	16					16	10%
	입 소 및 수 료	5					5	
	과 정 소 개	1					1	
	평 정	1					1	
	설 문 조 사	1					1	
	체 력 단 련	8					8	

④ 搜查實務 過程

구분	교 과 목	시 간						비고
		계	강의	실습	시범	분임 연구	기타	
총 계		152	95	42			15%	100%
소 양 과 목	소 계	7	7					5%
	수 사 와 인 권	3	3					
	수 사 요 원 의 식 개 혁	2	2					
교 양 과 목	경 찰 윤 리	2	2					
	소 계	31	31					20%
	형 사 증 거 법	14	14					
실 무 과 목	형 사 판 례	10	10					
	민 형 사 관 련 사 건	7	7					
	소 계	99	57	42				65%
실 무 과 목	수 사 지 휘 요 령	7	5	2				
	수 사 서 류 검 토 요 령	7	6	3				
	수 범 공 조 수 사	5	3	2				
	컴 퓨 터 범 죄 수 사	5	3	2				
	선 거 사 범 수 사	5	4	1				
	지 적 재 산 권 침 해 사 범 수 사	4	3	1				
	마 약 사 범 수 사	3	2	1				
	환 경 범 죄 수 사	5	3	2				
	수 사 사 례 연 구	3	3					
	현 장 감 식	3	2	1				
	화 재 원 인 수 사	5	1	4				
	지 문 감 식	5	3	2				
	족 혼 적 감 식	12	7	5				
	거 짓 말 탐 지 기	4	2	2				
	법 의 학	2	1	1				
	혈 청 학	8	5	3				
	문 서 감 식	3	2	1				
	성 문 감 정	3	2	1				
	총 기 감 정	3	2	1				
	과 수 소 실 습	7		7				
기 타	소 계	15					15	10%
	입 소 및 수 료	5					5	
	과 정 소 개	1					1	
	평 정	1					1	
	설 문 조 사 체 력 단 련	1 7					1 7	

⑤ 警大生 搜查委託 課程

구 분	교 과 목	시 간						비 고
		계	강의	실습	시범	분임 연구	기타	
총 계		228	69	135			24	100%
실 무 과 목	소 계	204	69	135				89%
	범 죄 수 사 규 칙	8	5	3				
	조 사 및 신 문 기 법	10	6	4				
	거 짓 말 탐 지 기 검 사	2	1	1				
	형 사 판 례	5	5					
	현 장 감 식	6	1	5				
	장 부 수 사	10	7	3				
	특 가 범 위 반 사 범 수 사	5	4	1				
	부 동 산 범 죄 수 사	5	5					
	환 경 범 죄 수 사	5	3	2				
	금 용 범 죄 수 사	5	5					
	지 적 재 산 권 침해 사 범 수 사	4	4					
	수 사 서 류 작 성 기 본	12	6	6				
	의 견 서 작 성 요 령	12	6	6				
	수 사 서 류 작 성 실 습	100	—	100				
	의 료 사 범 수 사	5	5					
	마 약 사 범 수 사	5	3	2				
	화 재 원 인 수 사	5	3	2				
기 타	소 계	24						11%
	평 가	3					3	
	휴 일	7					7	
	체 력 단 련	12					12	
	예 비	2					2	

8) 各 課程別 平價方法

① 搜查指揮課程

구 분	형 식	출 제 문 항	배 점		비 고
계			1000점		
1 차 평 가	객 관 식	50문항	150	200점	교육 8주차
	사 격	20발	50		
2 차 평 가	객 관 식	50문항	200	250점	교육 16주차
	주 관 식 (형 법)	1-2문제	50		
3 차 평 가	객 관 식	50문항	200	250점	교육 22주차
	주 관 식 (형소법)	1-2문제	50		
분 임 토 의			200점		
근 태			100점		

② 調查專門化課程

구 분	형 식	출 제 문 항	배 점		비 고
계			1000		
1 차 평 가	객 관 식	50문항	200	250점	교육 9주차
	주 관 식 (형 법)	1-2문제	50		
2 차 평 가	객 관 식	50문항	200	250점	교육 15주차
	주 관 식 (형소법)	1-2문제	50		
실 습 평 가	타 자 실 습	워드조작능력, 문서작성요령	50점		각 과목 마지막 강의시간
	수사서류작성	각 죄명별 수사서류 작성 요령(9개과목)	300점		
관 서 실 습	실 무 요 령 실 습 태 도		50점		
근 태			100점		

③ 搜查專門化課程

구 분	형 식	출 제 문 항	배 점	비 고
계			1000점	
학과시험	객 관 식	50	800	4주차
실 습	지 문 분 류	20	100	과목 마지막 강의시간
근 태			100	

④ 搜查實務課程

구 분	형 식	출 제 문 항	배 점	비 고
계			1000점	
학과시험	객 관 식	50	700	4주차
실 습	지 문 분 류	25	100	과목 마지막 강의시간
	수사서류작성	1	100	
근 태			100	

⑤ 警大生 搜查委託課程

구 분	형 식	출 제 문 항	배 점	비 고
계			1000점	
학과시험	객 관 식	50	450	6주차
실 습	각 죄명별 수사 서류 작성요령 (8개과목)	20	450	과목 마지막 강의시간
근 태			100	

9) 勤怠管理

(1) 生活評價

- 연수생 생활수칙 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평가
- 評價 점수는 연수성적에 반영

○ 연수생 기본 생활점수 100점(1,000/100)에서 감점을 공제한 점수가 생활점수

(2) 退所

○ 당연퇴소 : 법령에 의한 구속, 징계에 의한 파면, 직위해제 및 사직

○ 직권퇴소 : 시험중 부정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소 3회이상 이탈하거나 결강, 중대한 지시사항 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연수질서를 문란행위, 警察公務員으로 위신을 크게 손상, 신병·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을 때, 근태평점에 의한 감점이 근태평가 배점 총점에 달할 때.

○ 퇴소자 조치

• 당연퇴소 - 警察大學長에게 보고, 소속지방청장에게 통보

• 직권퇴소 - 警察大學長에게 보고, 소속지방청장에게 통보, 징계위원회 징계요구, 차기 재교육 실시

(3) 減點事由 및 基準

감 점 사 유	기 준	감 점	감 점 사 유	기 준	감 점
입 교 시 간 지 연	시간당	3	무 단 결 강	시간당	10
허 가 받 은 불 량	시간당	1	수 업 시 간 무 단 지 참	10분이내 10분이상	1 2
수 업 태 도 불 량		1-3	시 험 부 정 행 위		30점이상
청 원 휴 가	1일	3(직계존 비속사망 시제외)	음 주 및 도 박		30
시설물훼손 또는 망실		10	청 소 정 리 정 돈 불 량		2
특 별 외 출	1회	1(지휘과 정제외)	무 단 외 출	1회	5 10
특 별 외 박		2(지휘과 정제외)	무 단 외 박		
허 가 없 이 외 부 인 생 활 실 인 도		5	허 위 신 고 및 보 고		20
지 시 된 집 합 불 량		2	지 시 위 반 및 지 시 명 령 위 반		1-20
기타과실점사유에명시 되지아니한규정위반		1-10			

10) 修了 및 學籍管理

(1) 修了 및 落第

구 분	요 건 및 조 치	비 고
수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업시간의 90%이상 수강하고 연수성적이 600점이상인 자 • 수료자에게는 경찰대학장 명의 수료증 수여 	단, 조사전문화과정은 연수 성적이 700점이상임 조사요원 간부화추진계획 '94. 1.8)
낙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 성적이 600점 미만인 자에게는 수료증 수여하지 않고 1회 한하여 차기 재교육 실시 • 재교육 받은 자가 재차 수료 점수에 미달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타 시도 전배 요구 • 타 시도 전배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연수소장에게 통보 	

(2) 學籍簿 管理

- 研修實施 結果는 학적부에 기재하여 영구 보존 관리
- 수료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료증명서 발급

(3) 同點者 處理

1. 객관식 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2. 주관식 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3. 사격 성적이 우수한 자
4. 분임토의 연구보고서의 성적이 우수한 자
5. 연장자
6. 상위 계급자

11) 外部委託教育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기관 委託教育내용을 보면, 환경범죄搜查는 환경공무원교육원, 勞動犯罪搜查는 노동연수원, 金融犯罪搜查는 한국증권연수원, 保險犯罪搜查는 보험연수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警察搜查研修所에서는 이런 委託教育을 시행하지 않고 관계전문가의 講義나 實習만으로 교육하고 있다.

라. 問題點

(1) 수사부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피교육자를 위주로 교육하면 높은 수준의 교육자는 불만이 생기고 따라서 교육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비록 과정별로 나누어 모집하고 있으나 각 과정 내에서 피교육자의 水準 均等化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2) 國際犯罪搜查를 위한 어학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의 國際化時代에 있어서 외국인의 국내범죄나 내국인의 국외범죄가 증가하고 國際搜查共助의 기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國際犯罪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搜查指揮官이 國際的 感覺과 유창한 어학 실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외사과에서 외국인 범죄를 처리한다 해도 보통 일선 警察署에서 외국인 일반형사범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外國語 能力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 大衆媒體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教育이 미흡하다. 실제 범죄사건 搜查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오보 등으로 인해서 搜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大衆媒體에 대한 대응력의 향상이 필요하나 이런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다.

(4) 警察搜查教育에 있어서 다른 刑事司法機關과 協助體制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호주의 경우 警察, 矯正 등 刑事司法機關의 공무원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본의 경우 동경지검에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피교육생들을 4주간 委託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刑事司法機關간의 협

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누범자수사 등에 있어서 그 效率性を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5) 하위계급의 搜查警察官들의 搜查教育 기피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의 고참搜查要員들이 警察教育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補職管理 教育을 받고자 하는 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날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와 각종 新種犯罪, 새로운 기법 등에 대처하기 위한 教育訓練을 이수치 못하고 있다.

(6) 警察教育機關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警察官들의 자발적으로 교육받고 싶어하는 의욕을 저하시킨다.

(7) 教育機關의 교관요원에 대한 警察首腦部의 관심저조로 우수한 교관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搜查警察教育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8) 搜查實務課程의 경우 교양과목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고 단기간(4주)의 교육이어서 전문직업적인 교육을 받기에 과목당 배정시간이 적어 날로 知能化, 巧妙化되어 가는 범죄에 대해 질적으로 부응치 못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한 예로서 컴퓨터犯罪搜查를 보면 강의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形式的인 教科課程으로 보인다.

2. 外國의 事例 檢討

가. 美國³⁶⁾

1) 概要

미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 흑인폭동, 월남전 반대 등이 범죄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법집행의 1차적 기관인 警察官에 대한 교육을

36) 김보환, 미국과 일본의 경찰수사교육실태, 수사연구, 1993년 7월호, 10면

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누범자수사 등에 있어서 그 效率性を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5) 하위계급의 搜查警察官들의 搜查教育 기피현상이 나타난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선 경찰서의 고참搜查要員들이 警察教育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補職管理 教育을 받고자 하는 의욕 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날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와 각종 新種犯罪, 새로운 기법 등에 대처하기 위한 教育訓練을 이수치 못하고 있다.

(6) 警察教育機關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警察官들의 자발적으로 교육받고 싶어하는 의욕을 저하시킨다.

(7) 教育機關의 교관요원에 대한 警察首腦部의 관심저조로 우수한 교관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搜查警察教育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8) 搜查實務課程의 경우 교양과목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고 단기간(4주)의 교육이어서 전문직업적인 교육을 받기에 과목당 배정시간이 적어 날로 知能化, 巧妙化되어 가는 범죄에 대해 질적으로 부응치 못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한 예로서 컴퓨터犯罪搜查를 보면 강의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形式的인 教科課程으로 보인다.

2. 外國의 事例 檢討

가. 美國³⁶⁾

1) 概要

미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 흑인폭동, 월남전 반대 등이 범죄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법집행의 1차적 기관인 警察官에 대한 교육을

36) 김보환, 미국과 일본의 경찰수사교육실태, 수사연구, 1993년 7월호, 10면

“법집행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도 1970년 이후 1979년까지 10년동안 6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은 自體 警察學校(Police Academy)를 설치하여 新任警察教育, 재직자교육, 일반대학에 警察關聯學科 設置 등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多樣化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FBI 아카데미 搜查官 教育制度이다.

2) FBI Academy

1935년에 설립되었고 FBI 자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FBI 新任搜查官 프로그램은 16주에 걸쳐 실시되며 범죄학, 법학, 무기사용법, 搜查技術, 판리론 등을 교육한다. 현직자 搜查教育 프로그램은 1~4주간 실시된다.

3) FBI National Academy

이 기관은 미국 전역의 搜查警察과 外國警察要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 또는 自治制 地方警察官의 11주 교육프로그램과 미국의 搜查警察官 委託教育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전역의 搜查警察官 중에서 地方警察官으로서 5년의 실무경험이 있고, 연령은 25~51세 이하일 것, 地方警察幹部에 상응하는 소질을 가지고 있고 所屬警察長의 推薦이 있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졸업후 최저 3년간은 警察官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11주간의 중간 간부의 재직자 교육으로서 搜查警察의 專門知識과 警察管理者로서의 리더쉽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 대체로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행된다. 즉, 이론중심의 학문적 소양교육, 법집행의 핵심과제 논의, 체력단련 프로그램, 專門化 지정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警察搜查 理論分野³⁷⁾

① 刑事證據科學分野

관리자 형사증거 및 기술론, 지문분류, 사진감식, 잠재지문, 현장조사연구

37) 이상안, 경찰수사교육의 세계적 경향과 새로운 기법, 수사연구, 1993년 3월호, 10~11면

② 教育和 意思傳達分野

훈련과정관리, 효과적인 의사전달, 大衆媒體와 警察, 인터뷰와 질문, 교관교육, 법집행지시상의 문제와 프로그램 행정, 조직의사전달, 현장조사연구, 개별조사연구

③ 管理科學分野

법집행관리, 관리자 마이크로컴퓨터, 리더쉽, 윤리와 의사결정, 기획예산 관리, 警察 勞使關係와 집단협상, 불평불만자 관리, 조직과 인간형태, 관리자리더쉽, 현장조사연구, 개별조사연구

④ 行態科學分野

공동체 형태의 사회심리, 지역사회 방법순찰전략과 프로그램, 응용적 범죄심리, 법집행과 스트레스, 개인간의 폭력, 변사자 조사, 테러의 이론과 정치, 법집행과 응용조사방법, 미국의 폭력, 현장조사연구, 개별적 조사연구

⑤ 法律分野

헌법상의 형사절차, 警察行政官의 법상 문제, 미국정부의 비교론적 고찰

(2) 體力鍛鍊分野

이는 법집행상의 身體的 適合性에 관한 것으로서 체중훈련, 다이어트와 영양, 에어로빅, 콜레스테롤, 심장병 위기, 스트레스 관리, 적극적 생활방식 훈련, 체력 측정 등으로 되어 있다.

(3) 法執行上の 核心議題 論議

여기에는 주로 사격훈련, 법집행자의 자질, 법집행절차, 위기관리, 미국내의 마약문제, 리더쉽과 윤리, 犯罪搜查에 있어서 法醫學的 證據論의 적용, 그리고 법집행절차 행태과학에 대한 교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받아야 한다. 특히 이 교육과정에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대응훈련인 警察官의 기자회견훈련, 그리고 假想的 演技式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4) 專門化 指定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주로 비학점으로 교과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선 법집행상 射擊術의 실제 사용과 화약류 취급, 위기관리(위기관리이론, 위기대응계획의 개발, 인질상황 관리를 위한 원리와 과정, 危機協商, 命令·統制·意思傳達, 事例分析, 특수무기와 계략 등), 효과적 메시지 작성, 조직범죄 세미나, 인간관계에서의 비

언어적 의사전달, 갱과 폭력, 범집행상의 마이크로 컴퓨터 개론, 범죄기록의 전산화, 정보전달 체계, 전략적 예산관리 세미나, 범죄장면의 사진화, 윤리훈련, 警察勞組, 지문분류, 문서의 증거능력과 감식 등으로 特殊專門技術이 전제된 搜查警察研修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日本³⁸⁾

1) 特別搜查幹部 研修所の 設立背景

(1) 搜查警察強化對策要綱의 策定

1963년 3월 吉展씨 유괴사건, 5월의 狹山市 여고생 유괴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警察搜查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警察廳에서는 이런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1963년 5월 25일 국가공안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上級搜查幹部의 搜查能力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搜查警察강화대책요강을 발표하였다. 이 요강은 각급 警察學校 搜查教育의 過程, 內容, 方法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던 것이며 이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실시되었다.

① 각 도도부현 警察에서 搜查經驗이 풍부한 우수한 人材를 선발하고 警察大學校에서 搜查教科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며 관구경찰학교의 搜查專門過程의 교육내용 및 교육기법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搜查知識과 技術을 집대성한다.

② 警察大學校에 搜查專門過程을 설치하고 그 교육내용의 선정작업을 병행하여 각급 警察학교간의 단계별 교육내용을 평가하며 도도부현 警察學校, 관구경찰학교 그리고 警察大學校를 통하여 搜查警察의 전문교육체계를 확립한다.

(2) 搜查官制度和 搜查幹部學校의 設立 構想

그 후 1966년 4월 警察廳 각국은 장기적 전망을 수립한 제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搜查局은 都市化의 진전과 교통·통신수단의 급속한 보급과 발달에 의하여 도시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갈수록 廣域化, 스피드화하는 범죄성향에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1963년의 搜查警察強化對策要綱에 따른 새로운

38) 김보환, 전계서

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그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搜查警察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搜查警察의 임용과 새로운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搜查警察의 專門化와 搜查警察官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搜查警察制度의 근본적인 개혁안이 검토되었다. 그것은 搜查官制度를 창설한다는 획기적인 개혁안이었다. 이 搜查官制度가 搜查幹部, 장래 도도부현 警察의 搜查부서 課長要員에 대하여 전문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搜查幹部 학교의 구상으로 이어져 결국 特別搜查幹部研修所가 설립되었다.

(3) 警察廳 自體에 의한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設立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설치구상은 搜查局이 주도되어 진전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검토된 1960년대 초에는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시기였고 극좌파인 全學連이 재편되고 이러한 와중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수반한 반기지, 반안보투쟁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1955년 후반부터 계속된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大衆投資家를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나 주택분양에 편승한 악질적인 부동산범죄 등 각종의 경제사범이 계속 발생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犯罪搜查의 重要性이 부각된 시기였다. 警察廳에서는 上級 搜查幹部의 養成의 필요성은 搜查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경비국, 보안국 등 搜查에 관계 있는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警察廳 자체 문제로서 검토가 진행되었다. 特別搜查幹部研修所 설치검토과정에서 논의된 것은 교육체계에 관한 것이었다. 警察大學校에서의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特別搜查幹部研修所에 입소한 자는 그런 과정을 수료한 자이기 때문에 연수소에서의 교육은 警察大學校에서의 본과교육과 같은 警察業務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搜查에 종사하는 搜查幹部가 비교적 장기간 시간적 여유와 정선된 자료에 의하여 현행의 수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사업무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탐구하는 場이라고 할 수 있다.

(4) 發足

特別搜查幹部研修所는 警察職員에 대하여 上級の 搜查幹部로서 필요한 搜查의 指揮 및 監督, 기타 高度의 專門的 搜查技術에 관한 教育을 행하는 搜查警察最高의 教育機關으로서, 1967년 6월 1일 警察大學校 附設로 設置되었다.

2) 特別搜查幹部研修所の 教育內容

일본 特別搜查幹部研修所の 교육내용은 搜查概論, 搜查節次, 搜查運用, 搜查指揮, 教養科目, 實務研修, 課題研究, 기타 見學으로 되어 있다. 복잡다양화된 범죄의 搜查指揮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교육을 행하는 것은 시간상의 제약상 불가능하고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이에 중점을 두고 實際의 事例를 소재로 한 교육을 행하고 거기에서 수사지휘 전반에 걸쳐 이론과 기술을 歸納的으로 습득하는 기법을 취하고 있다. 이론 교육에 있어서도 1인의 교수나 강사에 의한 1회의 수업에 의존하지 않고 학문적 입장이 다른 복수의 강사에 의한 수업을 하고, 수업의 형식도 강의만이 아니라 세미나 형식을 취하여 有機的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搜查지휘관 또는 搜查部署 과장으로서 진가가 시험되는 금전목적의 유괴사건수사에 있어서는 警察廳이나 警視廳의 擔當者에 의한 강의 외에 特別搜查幹部研修所 교수 등에 의한 圖上訓練이나 CAI (Computer Aided Instruction) 혹은 비디오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입체적 교육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搜查指揮官, 특히 上級搜查幹部에게는 불가피한 언론보도대책에 있어서도 경시청 등의 실무담당자에 의한 강의와 피교육자들이 토론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회부 기자단 등을 초빙하여 “기자가 본 사건별 수사”의 조언을 듣는 등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습득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搜查節次에 있어서도 탄핵적 搜查官의 입장에 있는 학자,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도록 하여 피교육자에게 搜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이해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경지검에 의뢰하여 4주간의 檢察實務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特別搜查幹部의 피교육자는 搜查分野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비, 보안, 방법, 교통 각 분야의 搜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래 搜查指揮에 종사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搜查指揮各論에 있어서도 警察搜查 全般의 問題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搜查警察 이외 분야의 피교육자에게 搜查警察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장기간 搜查警察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비, 방법, 교통사고 搜查를 교육시켜 수사기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70년대 후반의 급속한 컴퓨터의 발달은 컴퓨터 범죄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범죄搜查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범죄변화, 사회변화에 警察幹部로서 대응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다른 警察教育機關에 비하여 선구적으로 컴퓨터교육이 도입되었다. 최근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함에 따라 犯罪搜查 分野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의 국외범 등 國際犯罪의 증가, 재일 외국인의 범죄증가에 따라 國際共助搜查의 機會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國際犯罪에 대처하기 위해서 指揮官이 풍부한 국제적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였다. 현재 特別搜查幹部研修所에 입소하는 피교육자의 대부분이 해외여행의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86년부터는 동남아의 해외시찰을 실시하여 현지의 犯罪政勢나 警察制度를 익히는데 노력하고 있다.

3) 被教育者

(1) 資格 및 選拔

피교육자는 警察廳 및 도도부현 警察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警察廳에서 선별하고 있지만 피교육자의 피추천 자격 및 선발은 다음과 같이 변천되어 왔다.

① 設立當時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피교육자는 警察大學校 본과를 수료하고 경부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으며 45세 이하의 경부 또는 경시 및 國家公務員 上級 採用試驗에 의하여 채용되고,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부 또는 경시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사법수습생 이론교육은 8개월 정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0세를 초과하는 정도의 경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하고 1년 정도의 교육이 좋다고 하는 안도 있었지만 搜查教育의 목적이나 내용 때문에 상당한 實務經驗이 있어야 선발되었다.

② 特別搜查幹部研修所 細則規定 以後

1973. 2. 10. 警察大學校 特別搜查幹部研修所 세칙이 제정되고 피교육자의 입소는 소속장의 추천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소장이 허가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선발절차가 名文化되었으므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 a. 警察大學校 본과 또는 전공과 졸업 후 경부로서 5년 이상의 勤務經歷을 가진 자.
- b. 警察官으로서 통산 5년 이상의 犯罪搜查 實務經驗을 가진 자.
- c. 45세 미만인 자.
- d. 上級 搜查幹部로서 적격성이 있는 자.

(2) 教育人員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교육인원은 기수마다 30~35명의 피교육자가 입소하고 있으며 1992년 제50기까지 1,574명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각급 警察機關에서 근무하고 있다.

(3) 被教育者の 經歷

50기까지의 피교육자 1,574명 중에서 그 주요 경력을 보면 搜查警察이 주 경력이었던 자가 787명, 警備警察이 주 경력이었던 자가 416명, 防犯, 保安, 交通警察이 주경력이었던 자가 37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4) 特別搜查幹部研修所 教育에 대한 評價

(1) 教育內容

범죄의 國際化, 情報化, 廣域化로 인한 搜查환경의 변화는 예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 강한 警察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質的 變化에 정확히 대응하는 搜查指揮를 할 수 있고, 전략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상급 搜查幹部가 필요하게 되었다.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교육도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그 역할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特別搜查幹部研修所가 설립된지 25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중복된 과목이나 비체계적인 과목 등은 과감히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2) 被教育者

特別搜查幹部研修所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 교육의 피교육자 수준은 높은 단계로 평준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낮은 수준의 피교육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기법이므로 搜查實務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피교육자

가 증가한다면,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교육수준도 낮아지게 되고 수준이 높은 피교육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설립 당시에는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교육목적이 잘 이해되었고 피교육자는 도도부현 警察에서 搜查에 관계하고 있는 자가 선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搜查간부보다도 장래 도도부현 警察의 搜查部署에서 근무할 간부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피교육자를 선발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영국³⁹⁾

영국 런던 경시청의 刑事警察의 경우 우선 소속상관의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자로 인정받았을 때 補助刑事로 임명되어 12개월 동안 선임형사와 같이 근무하면서 실무습득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 중 상관으로부터 다시 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警察學校에 입교하여 전문교육을 받고 警察學校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경시청 본부에서 실시하는 適格性 有無를 판정하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비로소 견습형사가 되고 정식형사는 또 다시 12개월의 견습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임명된다. 즉 아주 엄격한 教育訓練科程을 거친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搜查教育 대표기관은 國立搜查幹部學校로서 이 학교에서는 외부에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고졸자를 50%, 현직에서 35미만자를 50% 선발하여 11개월간의 교육을 시킨 후 경위로 任官시킨다.

3. 專門化 方案

가. 教育訓練 需要調査의 體系化 科學化

39)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법무자료 제 98집), 1988, 559~565면

가 증가한다면,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교육수준도 낮아지게 되고 수준이 높은 피교육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설립 당시에는 特別搜查幹部研修所의 교육목적이 잘 이해되었고 피교육자는 도도부현 警察에서 搜查에 관계하고 있는 자가 선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搜查간부보다도 장래 도도부현 警察의 搜查部署에서 근무할 간부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피교육자를 선발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영국³⁹⁾

영국 런던 경시청의 刑事警察의 경우 우선 소속상관의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적격자로 인정받았을 때 補助刑事로 임명되어 12개월 동안 선임형사와 같이 근무하면서 실무습득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 중 상관으로부터 다시 적격판정을 받았을 경우 警察學校에 입교하여 전문교육을 받고 警察學校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거쳐 경시청 본부에서 실시하는 適格性 有無를 판정하는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비로소 견습형사가 되고 정식형사는 또 다시 12개월의 견습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임명된다. 즉 아주 엄격한 教育訓練課程을 거친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搜查教育 대표기관은 國立搜查幹部學校로서 이 학교에서는 외부에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고졸자를 50%, 현직에서 35미만자를 50% 선발하여 11개월간의 교육을 시킨 후 경위로 任官시킨다.

3. 專門化 方案

가. 教育訓練 需要調查의 體系化 科學化

39)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법무자료 제 98집), 1988, 559~565면

教育訓練의 수요와 공급을 잘 부합시켜 教育訓練의 실질적 효용을 높이도록 훈련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⁴⁰⁾ 지금의 訓練需要調査는 훈련차출인원의 수를 서무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훈련수요조사가 科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훈련수요를 발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근무성적 평정자료, 搜查要員들의 훈련에 대한 자기평정자료, 그리고 여러 훈련과정의 과목열람표를 배포하여 搜查要員들에게 수강하기를 원하는 과목에 표시하도록 하는 메뉴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訓練需要決定에서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야 피교육자와 그 감독자들이 훈련수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나. 搜查教育의 環境改善

搜查警察官들이 안락하고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教育機關의 環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실 문제, 자료실, 실습실, 분임토의실, 강의실 문제, 식사 문제가 현실에 맞게끔 改善되어야 한다. 또한 搜查要員의 교육도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 교육수당이나 출장비도 부담이 없는 적정수준에서 지급되어 교육에 관한 의욕을 저하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로운 출퇴근도 보장하여야 한다.

다. 在職者 教育의 活性化

搜查警察을 사회적으로 더욱 자각하게 하고, 변화를 위한 요구에 대응하기 함으로써 職務修行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변화된 역할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職務修行의 감각을 갖도록 하는 在職者 教育이다. 모든 搜查警察官들이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한 교육이 이수되도록 해야 한다.

또 搜查教育 이수자에게 搜查要員으로서, 搜查官으로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40) 이상원, 경찰수사교육의 실태, 수사연구, 1993년 9월호, 11~12면

있게 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專門搜查官’ 자격증을 발행해서 승진은 아니더라도 응분의 자격수당을 주게 함으로써 職務滿足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성과의 양에 대해 스스로 지각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搜查官으로서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被教育者를 동남아시아에 시찰케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교육은 피교육자들에게 국제 시야를 넓혀주고 搜查教育 못지 않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이를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라. 優秀 教官 確保

교육기관의 물적자원도 중요하지만 교육시키는 人的資源의 確保도 중요하다. 유능한 교관요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겠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關聯學問을 專攻하고 해당분야에서 학위를 가진 理論과 實務를 겸비한 자격 있는 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은 남을 가르치는데 적합한 人品과 意慾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며, 이들을 교육기관에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

警察專門機關으로서 專門人力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하고 전체를 외래강사로 충당하고 있는 搜查研修所같은 기관도 장기적으로 자체 교관이나 教授要員을 養成, 確保하거나 전문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搜查要員중 碩士學位 이상자를 교관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理論과 實務를 겸비한 퇴직간부중 招聘教官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교관요원에게는 적정한 강의시간 단축, 연구비의 지원, 人事優待와 專門化, 연구교관제 등의 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타 警察教育機關(警察綜合學校나 中央警察學校)에서는 다른 공무원 교육기관 수준에 맞는 교관수당을 현실화시키고, 주, 월당 적정책임시간을 책정하여 자료개발이나 관리, 논문준비, 발표 등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주고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超過手當 支給 등으로 교관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教育機關 教官要員에 대해서는 일정 근무시간이 지나면 승진이 보장되는 승진 보장제를 채택하여 교관요원의 사기와 질을 향상시켜야겠고 우수교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또는 대학기관에 委託教育이나 해외 전문기관에 연수를 보내 최신 搜查技法이나 搜查理論을 도입케 하여 警察搜查의 發展을 도모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警察은 교육기관으로 서로 지원하려고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교육기관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教育機關의 교수진임을 명예롭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마. 語學教育 擴大 實施

외국어 교육 및 國際犯罪 搜查教育을 실시해서 교육과정에 ‘國際犯罪搜查課程’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85년에 警察大學校 國際搜查研修所를 설치하여 범죄의 國際化時代에 대응하고자 외국어 교육 및 國際犯罪 搜查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바. 매스컴 對應教育

매스컴과 관계해서 교육시에 역할연기의 기법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단을 초빙하여 事件搜查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대언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 他部處와 協力教育 體系 樹立

일선 법집행 기관인 警察이 犯罪者를 검거, 체포하더라도 다른 刑事司法機關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재범률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⁴¹⁾

41) 형사사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관련하여, 미국 시애틀의 킹 카운티(King County)에서는 지방정부의 법집행기관 및 재무부서등 핵심전산망을 총괄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 킹(Sea King)이라는 메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인데, 법원, 검찰, 경찰, 구치소등 법집행 기관을 모두 연결하는 종합 정보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일보, 1995. 9. 21., 15면.

따라서 刑事司法機關과의 搜查教育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특히 검찰이 警察搜查教育을 협조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 持續的인 意識教育 強化

급변하는 주위환경과 警察業務의 專門化, 기술화의 경향은 搜查警察은 물론 모든 警察官들의 적응능력 배양을 요구하나. 이것은 국민의 바램이며 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警察에 요구하는 것이다.

警察教育은 警察이라고 하는 조직체의 運轉유인 동시에 보다 훌륭한 警察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밑바탕 위에서 專門職業人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警察官이 법집행자이기 전에 도덕 집행자임을 자각하는 全人教育이 필요한데 이는 警察官 개인의 행위가 정부의 행위로서 국민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때, 警察教育機關에서는 搜查警察官을 포함한 전교육대상자들로 하여금 심도 깊은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민주경찰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教育訓練 프로그램의 內實化

教育訓練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教育訓練 프로그램은 직무와 연계되어야 하고 각 과정별 단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教育訓練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에서는 사회환경과 科學技術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도록 해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중복이 심하고 교과목 또한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나 각 과정마다 선택과목을 훈련의 개인화라는 요청에 보다 接近시켜야 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법인 현장실습, 분임토의 등의 확대되어야 하며 모의연습(simulation training), 역할연기(role playing) 등의 현대적 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도 요구되는데 이를테면, 전과자 출

신의 강사를 초빙하여 증거은닉 수범이라던지 警察官 공격시의 심리상태 등을 전수하는 것도 의미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⁴²⁾

따라서 현재 계급별로 되어 있는 4개의 교육과정을 교육수준단계별로 初級, 中級, 高級 또는 搜查一般課程 갑반, 을반, 搜查專門課程 등으로 체계화하고 특히 搜查專門課程을 현대사회의 범죄경향에 비추어 조직범죄, 마약범죄, 외사사범, 환경범죄 등으로 세분하여 교과메뉴를 교육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이수하는 대학식 교과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리고 단계별로 최종 搜查專門課程을 이수한 搜查要員을 專門搜查官 자격을 부여하여 승진 및 배치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搜查要員의 최고 엘리트화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동시에 사건·사고에 강한 搜查警察像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科學搜查 및 現場鑑識 教育은 필수적으로 초급과정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차. 委託教育의 範圍擴大

국내외 委託教育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졸자에게는 방송통신대 또는 개방대학에, 대졸자에게는 碩士學位, 博士學位, FBI 등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피교육자를 선발하고 이에 적합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특수전문기능인 회계, 공해, 마약, 컴퓨터 등에 대한 교육은 관련 교육기관 및 단체의 委託教育을 통해 철저히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카. 搜查教育院(센터)設置 運營

搜查要員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도적으로 보강하여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科學搜查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搜查幹部研

42) 전과자 출신의 강사초빙 프로그램은 이미 영국에서 실시한 바 있고,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4년간 1천여건의 범행을 한 절도범을 체포하여 「나의 도둑질은 예술」이라고 의기양양해 하는 46살 범인의 「비결」을 경찰공보에 실어 경찰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修過程, 專門化過程, 職務過程 등의 재교육과정은 물론 신규모집에 따른 신입순경과정과 신입간부과정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위 搜查教育院(센터)의 설립을 촉진시켜야 한다.

타. Infra Structure 構築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專門化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하부구조(Infra Structure)가 구축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첫째, 이러한 교육의 專門化, 內實化를 전반적으로 기획, 평가, 통제하는 교육국이 警察廳內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청에는 교육과, 경찰서에는 교육계가 동반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警察搜查研究所는 우리 搜查警察教育訓練의 전당이 되어야 하는 만큼 연수과장의 재임기간을 최소 1년 이상을 보장하고 教官兼職者에게는 수당과 정당한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警察大學의 부설기관으로서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승진, 배치에 우선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지휘관의 확고한 教育專門化에의 의지와 관심있는 배려가 절실하다. 넷째, 警察大學의 기존 법학과, 행정학과 이외에 학과 세분, 부전공제도입, 대학원과정 신설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地方化 時代의 개발에 따라 각 지역별 경찰 人力自體需給計劃은 長期的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의 특체범위확대 및 採用試驗시 加點制度등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VIII. 共通基盤 強化方案

1. 搜查人力開發院 設置 運營

搜查要員의 능력, 인성, 적성개발, 경력관리, 특기발굴,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進路設定, 後繼者 事前 育成, 하의상달의 배려, 상하부의 만남의 계기 부여 등을 위하여 搜查인력개발원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정의 경력기술서 양식에 의하여 위에 언급한 항목들을 사전파악하고 지속 관리함으로써 搜查警察의 사기진작 및 專門化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인력개발원에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확보하기 위해, 인력은행도 함께 운영하여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지속관리,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搜查警察 戰略 및 行動規範 樹立

1991년 警察廳이 출범하면서 제정한 警察憲章을 최상위규범으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搜查警察의 전략 및 장기 Vision, 그리고 이의 하위개념으로서 행동규범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搜查警察行動規範 戰略과 Vision 警察憲章의 實現이라는 일관된 행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搜查警察의 專門化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搜查關聯業務의 機能間 業務 調整

搜查力량의 分散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특별법 형사입건대상행위에 대한 搜查業務는 원인행위가 야기되고 조사되는 교통과로 이관함이 타당하다.

4. 地方廳 中心 搜查機能 集中 強化

지방청의 결집력 있는 搜查機能 발휘를 위해 특수수사계와 현장감식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특수수사계는 搜查教育의 專門化 방향에 맞추어 知能犯罪, 組織暴力, 麻藥犯罪, 외사사범 등 현대범죄의 總括 搜查를 전담하고, 특히 初動搜查의 원초적 해결영역인 現場鑑識 機能을 별도로 조직하여 갑반, 을반, 반장의 11명으로 구성하여 2교대 상시 가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50명씩 8주간의 현장감식 교육을 실습위주로 搜查研修所에서 교육한다.

5. 組織 Skill 競進大會

개인 Skill 뿐 아니라 조직 Skill 단계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각 지방청 단위로 조직 Skill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제도로 搜查警察 전문화를 위하여 큰 의미가 있다. 매년말 본청에서는 이를 엄정, 심사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포상하고, 입상자들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여행 등의 부상을 과감히 베풀어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고, 우수작품을 모으면 훌륭한 搜查規範으로서의 役割도 하게 된다.⁴³⁾

43) 이와 유사하게 올해 환경부에서는 「19개 전문분야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한달에 한 번씩 전문가를 초빙해 연구, 토론하며 3개월마다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일보, 12995. 8. 3., 12면.

IX. 發展模型 및 結論

전술한 바와 같은 搜查要員채용제도 개선방안 및 수사교육 전문화 방안을 각각 단기, 중기, 장기의 기간별로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발전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1. 搜查要員採用 改善 發展模型

개 선 방 안	단 기		중 기		장 기	Vision
	도 입 기		발 전 기		정착기	달 성
	'95	'96	'97	'98	'99	2000
· 수사전문인력의 합리적 인력계획	V					☆
· 선발방법을 개방체제로 전환 - 연간 2회 분할모집 - 적극적 홍보 전개 - 사후평가 실시 - 학력요건 강화	V		V		V	
· 선발방법의 다양화			V			
·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보임용제도의 철저 활용		V				
· 전문가 특채로 중도 채용		V				
· 충원시 수사전문이수자로 필히 충원	V					
· Uniform Police 체제 제고					V	
· 법률서비스 센터 설치 운영		V				
· 수사체계 Network 化			V			
· 수사경과제 도입					V	

2. 搜查教育訓練의 專門化 發展模型

개 선 방 안	단 기		중 기		장 기	Vision
	도 입 기		발 전 기		정 착 기	달 성
	'95	'96	'97	'98	'99	2000
· 수사교육훈련 수요조사	V					☆
·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V				
· 재직자 교육의 활성화 - 전문수사관 자격부여 - 해외연수의 활성화		V	V			
· 우수교관 확보 - 연구비지원, 인사우대, 연구교관제 도입 - 교관의 승진보장제 채택		V	V			
· 어학교육 확대 실시		V				
· 매스컴 대응교육 강화		V				
· 타부처와 협력 교육체제 정비			V			
· 지속적 의식교육 실시	V					
·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혁신 - 현대적 기법의 채택 - 전과자 출신의 강사 초빙등		V	V			
· 위탁교육의 범위 확대		V				
· 수사교육원(센터) 설치 운용					V	
· 교육수준 단계별 체계화 - 교과메뉴의 선택식 - 초급, 중급, 고급과정 단계화			V V			
· 교육담당 부서 신설 및 체제확립		V				
· 경찰대학의 학과세분, 부전공제, 대학원과정 검토		V				

3. 共通基盤 強化 發展模型

개 선 방 안	단 기		중 기		장 기	Vision
	도 입 기		발 전 기		정 착 기	달 성
	'95	'96	'97	'98	'99	2000
· 수사인력 개발원 설치운영 - 육성위원회 - 인력은행		V				☆
· 수사경찰 전략 및 행동규범 수립	V					
· 수사관련 업무의 기능간 업무조정 - 교통관련 특별법 형사입건대상 행위 수사 → 교통과로 이관		V				
· 지방청 중심 수사기능 강화 - 특수수사계 - 현장감식계		V				
· 조직 Skill 경진대회 개최		V				

4. 結論

우리나라 搜查警察의 專門化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이의 심각성이 대단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미룰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할 주도적 위치는 고사하고 이에 제대로 적응조차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搜查의 專門化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搜查官의 인식전환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사현실의 개선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인사

3. 共通基盤 強化 發展模型

개 선 방 안	단 기		중 기		장 기	Vision
	도 입 기		발 전 기		정착기	달 성
	'95	'96	'97	'98	'99	2000
· 수사인력 개발원 설치운영 - 육성위원회 - 인력은행		V				☆
· 수사경찰 전략 및 행동규범 수립	V					
· 수사관련 업무의 기능간 업무조정 - 교통관련 특별법 형사입건대상 행위 수사 → 교통과로 이관		V				
· 지방청 중심 수사기능 강화 - 특수수사계 - 현장감식계		V				
· 조직 Skill 경진대회 개최		V				

4. 結論

우리나라 搜查警察의 專門化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이의 심각성이 대단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미룰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할 주도적 위치는 고사하고 이에 제대로 적응조차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搜查의 專門化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搜查官의 인식전환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사현실의 개선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인사

에 있어서의 혜택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인사제도의 개선이 있어 젊고 유능한 인재가 搜查分野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모든 조직은 그 특수성에 따라 조직법규를 달리한다. 더군다나 警察組織은 관료제 논리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법규나 규칙에 의하여 모든 업무가 처리된다. 우리나라의 警察組織은 조직의 기능 그리고 정원에 뿐만 아니라 제반 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警察예산과 조직의 근거법인 警察法으로서 미흡한 바 있고 이러한 점에서 타법규 및 정부조직법, 심지어 타정부부처의 행정편의식인 복잡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기능과 책임관계가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직능률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경찰인사관리의 기반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搜查警察의 效率化 方案은 搜查權 獨立과 함께, 현행 警察公務員法상의 제반규정에 대한 탄력적이고 시대적인 보정작용을 통해 전술한 내용들의 제시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搜查警察의 인사관리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수사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搜查警察의 질적인 향상책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搜查警察의 생활 안정책, 기구 및 장비의 현대화, 상대적인 승진관리 등을 통해 搜查警察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여건마련도 중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사정바람과 함께 최근 형법과 형소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위법사항에 대한 警察의 搜查가 가능하게⁴⁴⁾된 시점에서 이러한 警察의 위신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는 이에 합당한 警察의 전문적 搜查能力의 向上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搜查警察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의 필요성은 배가되고 있다. 이는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人事가 萬事”라는 슬로건과도 합치된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남북통일을 앞두고 1인당 GNP가 1만달러 시대로 들어서는 상황에 발맞추어 警察組

44) 1958년 제정된 「법무부 관계직원 사건처리 예규」가 37년만에 폐지되었다. 조선일보, 1995. 3. 11자.

織 역시 거시적 차원에서 警察官의 교육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서는 警察의 世界化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미제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警察業務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인 搜查警察은 범죄의 검거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신뢰획득 및 앞으로의 搜查權 獨立課題와 관련시켜 보더라도 搜查警察 教育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警察組織 上層部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보환, 수사교육의 실태와 쇄신대책, 수사연구, 1993.8.
- 김연수, 경찰수사교육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수사연구, 1993.12, 1994.1.
- 김용화, 경찰의 수사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碩士學位, 1992.
- 金忠男 譯, 警察과 地域社會(Earle Howard H.), 여명출판사, 1991
- 박동서, 인사행정론(제 2 전정판), 법문사, 1992
- 박상녕, 경찰인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碩士學位, 1988.6.
- 백형구, 형소법개정안 연구, 고시계, 1994.11.
- 송락현, 범죄수사의 효율화를 위한 搜查警察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碩士學位, 1983.
- 송해준, 수사능률 제고방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발전정책 과정 제 27기 이연수 편, 범죄수사규칙해설, 동민출판사, 1993
- 오석홍, 인사행정론(신정판), 박영사, 1993
- 이기호,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이기호,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제 9편, 1990.
- 이기호,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사법행정, 1990.1.
- 이상안, 경찰 수사력 강화의 정당성 논리, 수사연구, 1993.1.
- 이상안, 수사연수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구성, 이상안, 수사연구, 1993.2.
- 이상안, 경찰수사교육의 세계적 경향과 새로운 기법, 수사연구, 1993.3.
- 이상원, 경찰수사교육의 실태, 수사연구, 1993.9.
- 이상원, 경찰수사교육의 문제점과 쇄신방안, 수사연구, 1993.10.
- 이황우, 수사경찰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형사정책연구원.

- 이황우, 민생치안과 수사경찰력의 향상, 치안논총 제 8편, 1991.
- 최상규, 과학수사의 현장, 수사연구사, 199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주택의 범죄방어공간도입에 관한 연구, 1992
- _____, 범죄발생의 추세분석 : 1964 - 1991, 1994
- _____, 사회구조와 범죄 - 경제발전과 인구성장을 중심으로 - 1993
- _____,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 _____,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 _____,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1994
- _____,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1994
- _____,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1호, 1994, pp.31~5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이 세계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2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3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3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1993
- 치안본부, 일본경찰, 1987.
- _____, 서구경찰, 1989.
- 수사연구 1993-1994. 총판
-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부자료 제 98편, 1988.
- 경찰청, 범죄와의 전쟁 2주년 추진성과 및 향후대책, 1992.
- 김영삼 정부 2년의 평가, 민주당, 1994.12
- 문민정부 하의 행정쇄신방안, 행정쇄신위원회, 1994.
- Brownlie, Alistain R.(eds.), Crime Investigation Art or Science ?, Scottish Academic Press, 1984
- Cohn, Alvin W. and Emilio C. Viano (eds.), Police Community Relations : Images, Roles, Realities, J. B. Lippincott Company, 1976
- Cox, Steven M., Police in Community Relations : Critical Issues, William C. Brown Publishers, 1992
- Crowe, Timothy 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National

- Crime Prevention Institute, 1991
- Cunliffe, Frederic and Peter B. Piazza, *Criminalistics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Prentice-Hall, Inc., 1980
- Dintino, Justin J. and Frederick T. Martens, *Police Intelligence Systems in Crime Contro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3
- Felkenes, George T., *Effective Police Supervision*, Justice Systems Development, Inc., 1977
- Franklin, Clyde W., *Theoretical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Little, Brown and Company, 1982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1989
- Kalmanoff, Alan, *Criminal Justice :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 Konecni, Vladimir J. and Ebbe B. Ebbese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W. H. Freeman and Company, 1982
- Leonard, V. A., *The New Police Technology : Impact of the Computer and Automation on Police Staff and Line Performance*, Illinois :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0
- McDowell, Charles P., *Criminal Justice : A Community Relations Approach*, Pilgrimage A Division of Anderson Publishing Co., 1984
- Morgan, J. Brian, *The Police Function on The Investigation of Crime*, Great Britain : Athenaeum Press Limited, 1990
- Mulhearn, Henry J., *Crime Investigation*, N. Y. : Gould Publications, 1980
- Myren, Richard A. and Carol Henderson Garcia, *Investigation for Determination of Fact*,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1989
- National Statement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1990
- O'Hara, Charles E. and Gregory C. O'Hara, *Fundamentals of Criminal Investigation*,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8

- Sellin, Thorsten (eds.), *The Police and The Crime Problem*, N. Y. : Arno Press and The New York Times, 1971
- Shane, Paul G., *Police and People :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The C. V. Mosby Company, 1980
- Swanson, Charles R., Neil C. Chamelin and Leonard Territo, *Criminal Investigation*, McGraw - Hill, Inc., 1992
- Swanson, Charls R. and Leonard Territo, *Police Administration : Structures, Processes, and Behavior*, McMillan Publishing Co., Inc., 1983
-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ask Force Report (The Police)*, N. Y. : Arno Press and The New York Times, 1971
- Torres, Donald A., *Handbook of Federal Poli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Greenwood Press, 1985
- Wilson, James Q., *Crime and Public Policy*, ICS Press, 1983
- 檜山西郎, 成熟した社會の犯罪と豫防, 酒井書店, 1994
- 藤田弘人 編, 變動と社會的逸脱の社會學, 文化書房博文社, 1993
- 宮澤節生, 犯罪捜査をめく“る第一線刑事の意識と行動”, 成文堂, 1984
- 安富潔, 捜査手續法, 立花書房, 1994
- 神一行, 警察官僚, 勁文社, 1994
- 下村幸雄, 刑事司法を考える, 勁草書房, 1992
- 特別捜査幹部研修所,
 _____, 捜査情報の管理, 昭和 45年
 _____, 捜査における國民協力の確保, 昭和 46年
 _____, 現場捜査(鑑識活動を中心として), 昭和 47年
 _____, 公開捜査, 昭和 48年
 _____, 突發重大事故における初動措置, 昭和 49年
 _____, 捜査と報道, 昭和 50年
 _____, 科學捜査, 昭和 54年

警察廳，警察白書，平成元年～平成6年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犯罪白書，平成元年～平成6年

立花書房，警察學論集，1994. 1～1995.10

APPENDIX

I. 設問調査 分析表

II. 捜査幹部 自己記述書 分析 要約

I. 設問調査 分析表

(표 1) 과학수사에 대한 문제질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BASE: 전체 응답자

전체	세						연 령						학 령			근무부서			근무처							
	경상		경위		경감		경정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고졸	초급	대졸	대학	원준	수사	형사	감식	지방	경찰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고졸	초급	대졸	대학	원준	수사	형사	감식	지방	경찰						
253	11	82	75	72	6	7	7	65	96	85	191	24	34	4	117	120	16	137	115							
14		5	4	5			4	6	4	12	1	1			6	6	2	8	6							
12%		15%	13%	13%			12%	15%	10%	14%	7%	6%			12%	11%	15%	11%	13%							
26	3	5	7	8	1	2	9	5	10	17	4	5			9	14	3	18	8							
22%	43%	15%	23%	21%	33%	50%	27%	13%	25%	20%	29%	29%			18%	26%	23%	26%	17%							
21	2	8	2	5	2	2	1	6	7	7	16	2	3		8	8	5	15	6							
18%	29%	24%	7%	13%	67%	50%	25%	18%	18%	19%	14%	18%			16%	15%	38%	21%	13%							
5		1	1	2		1	2	3		3	1				1	3	1	3	2							
4%		3%	3%	5%		25%	6%	8%		4%	7%				2%	6%	8%	4%	4%							
8		2	2	3		1			6	2	6	1			1	3	4	1	4							
7%		6%	7%	8%		25%		15%	5%	7%	7%				6%	7%	8%	6%	9%							
12		2	5	5			4	4	4	7	4	1			6	5	1	8	4							
10%		6%	17%	13%			12%	10%	10%	8%	29%	6%			12%	9%	8%	11%	9%							
7		2	2	3			1	2	4	5		1			1	5		2	2							
6%		6%	7%	8%			3%	5%	10%	6%	6%	6%			10%	10%	15%	7%	4%							
2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3%		3%				3%	3%	1%	7%				2%	2%		3%								
10	1	2	3	4			7	1	2	5		5			3	5	2	3	7							
9%	14%	6%	10%	10%			21%	3%	5%	6%		29%			6%	9%	15%	4%	15%							
5	2	1		2			2	2	1	3	2				3	2		2	3							
4%	29%	3%	5%	5%			6%	5%	3%	4%	14%				6%	4%		3%	7%							

	신체	계급					연령					학력			근무부서			근무처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고졸	초급 대졸	대졸 원준	수사	형사	감식	지방 청	경관 서
(과하) 수사 전문교육 강화	10 9%	1 14%	2 6%	2 7%	5 13%		29세	4 12%	2 5%	4 10%	6 7%	2 14%	2 12%	4 8%	6 11%			3 4%	7 15%
검식교육강화	5 4%	2 6%	2 7%	1 3%					3 8%	2 5%	4 5%	4 5%	1 6%		4 7%	1 8%		3 4%	2 4%
BASEFOR%	253	11	82	75	72	6	7	65	96	85	191	24	34	4	117	120	16	137	115
집중적 실무교육	1 1%	1 3%							1 3%	1 1%	1 1%			1 2%				1 1%	
현장 감식반 철저운영	1 1%	1 3%							1 3%	1 1%	1 1%				1 2%	1 2%		1 1%	
의견교환, 공조체계	2 2%	1 14%					1 25%		1 3%	2 2%	2 2%			1 2%	1 2%			2 3%	
의식개혁/ 과학수사필요성 교육	4 3%		2 6%	2 7%				2 5%	2 5%	3 4%	3 4%	1 6%		4 8%				4 6%	4 6%
유전자 감식법	3 3%		1 3%	2 7%				2 5%	1 3%	3 4%	3 4%			3 6%				2 3%	1 2%
수사권 독립	2 2%			1 3%				2 6%		2 2%	2 2%			2 4%				2 3%	
컴퓨터 교육	1 1%		1 3%					1 3%		1 1%	1 1%				1 2%				1 2%
타업무 동원 자제	1 1%								1 3%					1 6%	1 2%				1 2%
모르겠다	17 15%	1 14%	2 6%	4 13%	8 21%	1 33%	1 25%	2 50%	3 9%	5 13%	7 18%	12 14%	1 7%	4 24%	6 12%	11 20%		10 14%	7 15%

	근 무 지 역											정 활 강 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30 7%	27 31%	29 7%	29 7%	20 13%	19 13%	10 50%	20 29%	19 36%	20 43%	19 9%	20 10%	21 44%	18 8%	22 8%	58 7%	55 8%	96 2%
BASE FOR %																		
과학수사연구소 증설/ 상식기구 증설	1 7%		4 31%	1 7%			4 57%					2 22%		1 8%	4 15%	3 13%	6 14%	10 23%
과학수사연구소 수준외 장비 확보/최신 장비 확보	2 14%	4 31%	4 29%	1 29%	3 50%	1 13%	2 29%	4 43%	3 36%	1 9%	2 22%	2 22%	5 56%	2 17%	6 22%	3 13%	10 23%	
과학수사연구소 수준외 인원 확보/전문요원 확보	2 14%	2 15%	1 8%	1 7%	1 13%	2 25%	3 43%		1 9%	1 10%	2 22%	2 22%	4 44%	1 8%	2 7%	7 29%	7 16%	
과학수사연구소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신속 장비 확보		1 8%		1 7%	2 25%					1 10%				1 8%	1 4%	2 8%	1 2%	
장비사용 교육 강화	2 14%	2 15%	1 8%	2 14%		1 13%									2 7%	4 17%	2 5%	
수사요원 전문배치	3 21%	1 8%	1 7%	1 13%	1 13%				2 18%	1 10%	2 67%	1 11%	2 22%	1 8%	2 7%	2 8%	5 11%	
수사요원 사기전작	1 7%	4 31%	1 7%								1 33%				2 7%	1 4%	4 9%	
수당 현실화											1 33%				1 4%		2 2%	
조회 전산망 충실		3 23%	2 14%	3 38%	2 25%							2 22%	2 17%	3 11%	1 4%	2 5%	1 2%	
		1 8%	1 8%	1 13%					1 9%			1 11%	1 11%	1 8%		2 8%	2 2%	

	구 분 지 역										경 관 경 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과학)수사 전문교육 강화	2 14%	1 8%		3 21%	1 13%	1 13%					1 11%	1 11%	2 22%	2 17%	2 7%	1 4%	3 7%
간석교육 강화	1 7%		1 8%			1 13%			1 9%		1 11%				2 7%	1 4%	2 5%
BASE FOR%	30	27	29	29	20	19	10	20	19	20	9	21	18	22	58	55	96
집중적 실무교육	1 7%															1 4%	
현장 감식반 철저운영			1 8%													1 4%	
의견교환, 공조체계			1 8%	1 7%								1 11%					1 2%
의식개혁/ 과학수사필요성 교육	1 7%				1 13%				2 20%						2 7%	2 7%	5 5%
유전자 감식법					1 13%		1 14%				1 11%				2 7%		1 2%
수사권 독립							1 17%				1 11%				2 7%		
컴퓨터 교육	1 7%													1 8%			
타업무 동원 자제		1 8%															1 2%
모르겠다	2 14%	3 23%	1 8%	4 29%	1 13%				5 45%	1 10%			2 17%	3 11%	4 17%	4 17%	8 18%

II. 搜查幹部 自己記述書 分析 要約

1. 制度的 裝置

가. 發生事件, 認知事件의 초동수사권의 하향 조정

(1) 現行 發生事件을 관할파출소에서 초동 조치한 경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보고서만으로 형사계에 신병만 인계하고 있어 人的, 時間的 浪費를 초래하고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2) 형사계 인원이 1급지인 서울의 경우 60 ~ 90명의 인원중 절반이상이 발생사건의 搜查書類作成에 인력을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고, 당직 익일에는 전일에 밤세워 작성한 수사서류 등의 잔무도 있고, 피로에 겨워 전후 2-4일간은 전혀 타수사에 전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3) 사건상의 문제점 : 사건 현장에서 1차로 나가 조사한 경찰관은 동행보고서 1장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므로, 현장에서 證據收集이나, 目擊者確保 등에 게을러지게 되어 公訴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형사계에서 인수받아 사건에 2차로 개입하는 것은 굴곡된 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짐.

(4) 발생사건, 신고사건의 경우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등이 확실하게 口證이 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에서 피의자 심문조서작성, 피해자진술조서작성 등의 일괄 搜查書類를 작성하도록 하고, 본서에서는 조사형사가 2차조사자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송치토록 制度的 變化 모색 필요가 절실함.

(5) 期待效果 : 잉여 인력을 절도, 강도 등의 강력사건에 2명 1개조로 公訴時效완성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실제 같은 인력으로 이웃 일본에서는 강력사건의 경우 담당 형사가 공소시효 완성까지 전담 수사하고 事件 進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임.

나. 全種 要員으로 형사 특기 부여

(1) 형사요원이 조서작성 등도 기술이겠으나, 실제적으로는 所在搜查, 미행, 潛伏搜查, 정보원 운영, 取調技術 등 모든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독자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됨.

(2) 刑事業務도 특기로 인정하여, 뇌물수수 등 파렴치범이 아님이상 장기간 형사업무에 전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3) 이러한 시각은 하급관리자보다는 상급관리자가 인간관리 기법상 性惡說 내지는 X이론에 집착한 인사관리가 아닌 性善說, Y이론에 접근한 인간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임.

(4) 搜查要員의 專門化는 이러한 기틀위에 개인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 현대사회의 기능 세분화에 맞춰 이를 관장하는 警察 搜查要員도 세분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 같은 강력반 형사일지라도 보석감정, 장물의 흐름, 사체검시, 총기전문가, 화약전문가, 마약수사 등 자신의 專門 特技를 부여 받아 그곳에 집중투자하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임. 현재는 자신의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테마를 갖고 專門的으로 研究하고, 집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전무한 형태이고, 설사 감식전문, 보석감정교육을 받은 사람도 他部署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6) 이러한 인사의 制度的 保障은 형사, 수사 간부를 거의 매년 교체함으로써, 일관된 人士配置를 할 수 없고, 후임자도 恒常性있는 指針을 부하 형사에게 주지 못하고 있음. 地方自治制가 되면 형사간부 등을 한 지역에 장기간 배치함으로써 책임있는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임.

(8)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시키는 이유는 非理警察官의 發生을 줄이려는 교육책이겠지만, 비리경찰관은 자리를 옮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님.

다. 專門 鑑識官制度 도입

(1) 형사들에게 초보적인 醫學, 物理, 化學的 知識을 갖춘다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

(2)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제도는 國立科學搜查研究所가 있어 부검, 감정 등을 해주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고 기관간 거리감이 있어 궁급증을 풀기에는 너무 어렵고,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난망한 형편임.

(3) 국과수는 개별 鑑識官이 요구하는 鑑定에 대한 最終 鑑定役에 만족하고, 개별 경찰서 또는 몇개의 경찰서로 묶어 분야별 전문 감식관을 두고 범죄로 인한 감정사항을 항상 자문하여 주고, 事件 現場에도 나와 鑑識하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임.

라. 事件報告등 節次的 緩和

(1) 重要事件이 발생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느라 초동수사등이 지연되고, 심지어는 사건의 내용이 屈曲되거나, 偏見을 형성할 우려도 있음.

(2) 기자 등에 대한 브리핑은 담당형사나 담당반장이 실시하여야 일반인이 알아야 할 내용과 사건 수사상 알려서는 안되는 것 등을 분리하기가 용이하나, 현재는 매스컴을 의식하여 계장, 과장이 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실정임.

(3) 사건에 대한 對外 發表의 負擔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임.

마. 事件에 대한 반장 등 搜查指揮者의 權限 強化

(1) 현재 事件에 대한 반장의 역할은 事件 配當 등에 국한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수사비 등을 반장등의 싸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할 것임.

(2) 搜查費 支出을 카드 전산화하여 수사비 배정에 까다로운 절차를 없애야 하며,

(3) 현재와 같이 한정된 搜查費를 정하여 지급하면 나눠먹기식 사용이 될 수 밖에 없음.

2. 搜查組織의 事務分掌의 體系化

가. 地方廳, 本廳單位의 개별사건 수사지양

(1) 본청, 지방청의 수사담당 부서에서는 직수사건이외에는 개별 중요사건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으나, 個別的 搜查要員을 파견하여 중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上部 기관원으로서 행세하거나, 사건중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선 형사들의 사기를 꺾는 사례는 없애야 할 것임.

(2) 地方廳單位에서 해야 할 일은 개발사건이 아닌 事件의 綜合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일선 수사기관의 자문역할과 지원체제에 있음을 인식해야 함.

즉, 중요 조직폭력배들의 人的 事項, 사진, 犯罪事實, 최근의 동향, 교도소에 면회온 사람들의 면접부관리, 출소후의 동향, 중요 장물의 처분처 흐름, 밀수물건의 유통경로, 중요 문화재의 해외반출 등 일선서에서 하지 못하는 全國單位, 國家安全側面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 개별 살인사건, 강도사건 등에 개입하여 重複搜查로 인력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3) 중요 범죄 등에 대한 記錄 管理 維持 : 중요 범죄에 대하여 기록조회를 하면 현재는 C조회로 犯罪團體構成員밖에는 알아볼 수가 없는 형편임. 언제든지 拘束起訴된 사람에 대해서는 칼라인물사진, 인물평, 가족관계, 범죄사실, 공범자 등을 알 수 있도록 별도 파일로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함.

나. 수사권의 균점

(1) 책임있는 곳에 權限을

(2) 일이 있는 곳에 權限을

(3) 국민의 권익 보장은 단지 고문, 가혹행위의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事件解決, 理解 關係者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인바, 수사권의 독립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4) 警察 資質의 向上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은 기득권의 我執이요, 고립된 사고방식의 산물임.

3. 搜查人力의 資質 向上

가. 定期的인 보수교육

(1) 搜查一般, 刑事一般의 業務에 대하여 3년에 1회씩 1개월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2) 미이수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적극적 참여유도해야 함.

나. 專門化 教育 實施

(1) 분야별 개발 교육 실시

(2) 強力, 暴力, 麻藥, 知能, 經濟, 環境등 특별법 분야 등을 개발하여, 특기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 外部委託教育의 積極的 實施

(1) 전문 컴퓨터 교육, 금고교육, 금융교육, 보석감정교육, 노조원교육 등 외부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관심분야자 선발 위탁 교육 실시

(2) 외부위탁 교육자 등에 인사상 優待保障

4. 刑事 人力 開發院 設置

가. 定期的인 보수교육

나. 테마별 분야별 教育 프로그램 개발

다. 外部教育기관과의 委託教育관장

라. 刑事, 搜查 技法 등의 개발

마. 옥상옥으로 교육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POOL제로 통폐합하여 統一性 維持

예)교관을 수사, 정보, 경무, 방범, 보안등으로 묶어 일정한 수의 敎官을 확보 (예, 수사파트에 교관 30명 확보)하여 일정한 研究 主題附與, 공동연구 등 실시, 일정수의 교관은 경찰대학, 종합학교, 중앙학교, 수사연수소 등에 출강하고, 여타 교관은 분임 별로 共同主題 選定研究活動 보장.

5. 刑事 개개인의 自矜心 鼓吹

가. 저하된 士氣 振作策 導入

(1) 소위 3D 부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형사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人的 資質이 높은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

(2) 수사에 대한 否定的 이미지 刷新 搜查, 刑事 部署에 근무하는 사람을 백안시하고, 비리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내부, 외부적 시선의 근절도모, 특히 指揮官들이 일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열심히 근무하는 職員들의 士氣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임.

나. 搜查要員의 激務에 대한 질적 보상

(1) 搜查 專門人制 認定

搜查經歷 10년 이상이 된 경우, 搜查專門人 또는 수사 베테랑제를 도입하여 계속하여 수사업무에 종사할때 까지는 현계급의 상위 계급으로 인정 대우 해주는

것과 월급안정시 호봉을 昇級시켜주어, 타부서와는 구별되는 業務的 特性을 인정하여 주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勤務時間의 調整

형사요원은 특히 야간 근무가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個別的 特性에 따라 그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급지휘관, 일선지휘관인 반장, 계장에 의해 개별적 근무지정이 되어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관리권 부여할 필요 있음.

다. 搜查費使用의 現實化

(1) 턱없이 부족한 수사비로 각 반간 나눠먹기식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2) 충분한 搜查費 確保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3) 수사비 청구도 반장 내지는 계장의 싸인으로 바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制度的 緩和가 있어야 하며,

(4) 사후 감독은 감찰 등에서 할 수도 있으므로 事前的 統制로 필요한 경비가 염출되지 못하는 사례는 제고해야 함.

6. 搜查情報 管理機能의 強化

가. 현재는 犯罪情報라는 것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나. 犯罪情報를 獲得하는 수단 등의 과감한 개선이 요구

(1) 범죄자 사이에 망을 부식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犯罪者의 聯關事件을 수사중 취득하든지, 아니면 바타제로 범죄정보를 취득하는 원시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음.

(2) 범죄자 사이에서 같이 생활하는 요원도 확보해야 하고,

(3) 심지어는 警察內部的 搜查記錄이 외부로 새 나가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

야 하는 기능의 보완도 있어야 할 것임.

7. 時間管理의 기본틀 변화

가. 상관이 부하를 믿지 못하는 풍토하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나. 모든 제도는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個別 인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다. 상관이 부하를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감찰을 동원해서 감시해야하고, 勤務日誌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監督巡視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상현상은 조직관리 체제상 극히 否定的인 국면임.

라. 업무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피곤한 組織管理體制를 순간점검, SPOT CHECK SYSTEM 으로 전환할 필요가 절실함.

연구보고서 96-10

수사요원 전문화 방안

1996年 07月 日 印刷
1996年 07月 日 發行

發 行 金 本 植
編 輯 治 安 研 究 所
印 刷 大 韓 文 化 社
